

CONTENTS

권두칼럼

고령사회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 김원식 02

현안분석

경기불황이 보건 지출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
 -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 이은경 08

의료급여 진료비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한 소고 · 최성은 21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해외자산 자진신고제 등에 대한 지침 개정 외 35

정책흐름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천억원 줄였다 70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72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관련 국세예규 변경 75

'14년도 1~9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77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결과 83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94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발표 97

이슈&포커스

누리 예산 논란과 지방교육재정 외 100



고령사회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으로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개혁공청회도 무산될 정도로 공무원 사회의 저항이 거세다. 개혁안 자체가 워낙 ‘개혁적’이기도 하지만 정부만 믿고 그동안 경고해 온 고령화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이다. 더 객관적으로 보자면 노후 준비를 해오지 않은 개인, 노후 준비를 철저히 시키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고령화라는 시한폭탄은 ‘짜깁깁’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폭발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은 시작에 불과하며 멀리는 국민연금도 똑같은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연금만 보장받으면 노후 준비가 끝났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고령화의 현황을 인식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노인계층과 계속 갈등을 빚을 것이고 정치권은 이들을 달래느라 끊임없는 공약으로 경제 위기에 빠질 것이다.

고령화 현황의 인식과 미래에 대한 대비

고령화 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1970년에 58세였던 평균수명이 지금은 80세가 넘었다. 주요 선진국과 평균수명이 10세 이상 차이 나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높아졌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노인부문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거의 하지 못했다. 둘째, 국민 건강보험의 확대 등으로 개인들의 건강수명은 71세에 이르고 최빈 사망연령은 90세가 넘었다. 건강수명은 1970년의 평균수명인 58세보다도 높다. 셋째, 개인들의 건강이 71세까지 유지될 정도로 좋은데 이들은 53세에 자신들의 오래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은퇴자’로 67세까지 노동시장을 배회하고 있다. 넷째, 노인빈곤율은 45%로 국민 평균 빈곤율보다 3배 높고,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노후 준비의 척도가 되는 국민저축률은 2.7%로 역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다. 이는 상당수의 가계가 적자이거나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후빈곤율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노인들은 사실상 신빈곤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후

생계가 없는 적자인생이 많아지게 되면 다음 세대는 모두 노인들의 '빚수발'을 들어야 하고, 이에 자포자기식으로 근로유인이 사라져서 경제는 쇠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없어진다고 베이비붐 세대의 현상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와 함께 1인 가구가 늘고 있으며 가족 간 유대가 약해진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고독사나 노인 자살률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기업들은 젊은층의 고용을 통하여 활력을 얻고 자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있어 평생직장의 개념도 없고, 사회복지제도가 기업 복지를 대체하면서 근로자 관리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둘째, 노인들의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행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우선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이 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들은 학력이 높고, IT기기의 발달로 개인들의 노력 여하로 얼마든지 젊은층과 경쟁할 수도 있다. 인터넷에 갇혀 있는 젊은층과 달리 근로기간 동안 쌓아 온 사회적 네트워크로 정보교환이나 사회적 교류의 폭이 넓다.

셋째, 근로기간은 짧아지고 은퇴기간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젊은층들의 사회진출연령이 30세가 넘었고, 퇴직연령은 점점 더 짧아져 노후소득을 마련할 기회가 없다.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 35세, 여성 32세이다. 만혼으로 자녀를 출산해야 기껏 2~3명 수준이다. 늦게 결혼해서 맨손으로 아이를 기르니 소득은 모두 아이들에게 들어간다. 1950년대,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5~6명의 자녀를 낳을 때와 전혀 상황이 다르다.

고령사회를 개혁해야 하는 시점

연금도 개혁해야겠지만 이제는 고령사회를 개혁해야 하는 시점이다. 먼저, 정부는 노인정책의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 현재 노인에 대한 정책적 정의는 '65세 이상 인구'이다.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사용한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는 37.4%, 50세에서 64세 인구는 20.6%가 된다. 단순 계산해 보면 53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50%가 넘는다. 주된 근로자 연령인 25세에서 53세의 인구가 약 35%이니 지하철 승객의 반은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OECD 국가들의 남성 연금수급연령이 아직 63세 수준이라고 소극적일 수 있으나 이들은 고령사회의 준비가 끝난 나라들이다. 우리가 고령사회에 대한

.....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없어진다고 베이비붐 세대의 현상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개인들은 젊어서부터 자신의 생애계획에 따라 다양한 노후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일할 수 있고 건강한 65세의 노인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낭비이다. 현재와 같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생산력이 떨어져서 국가 경쟁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둘째, 고용시장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어야 한다. 늘어나는 퇴직기간의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 동안 소득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대안은 근로기간을 늘려야 한다. 이들이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인들이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감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해 이들의 노동이 국민소득의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고령화 시대에는 청년 정책도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진학에 집착하지 말고 조기에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과 학업 양립의 수준이 아니라 '선 취업, 후 일·학업 양립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선 취업'을 통하여 일찍 자립하고 일찍 결혼하고 저축해서 노후소득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도 낳을 것이다.


넷째, 국민연금은 노후생계를 위한 소득을 확보하는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개인들의 노후생계 수단은 개인의 저축이다. 여기에는 민간연금, 은행저축, 주식, 보험, 부동산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일찍이 젊어서부터 자신의 생애계획에 따라 다양한 노후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축복된 고령사회로 가는 길

다섯째, 노인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투자를 해야 한다. 노인산업에는 최첨단의 IT, 로봇, 헬스케어 등이 핵심이다. 이들은 고령자들의 이동성과 활동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노인들을 위한 작업장 조명 개선, 노인들의 운전을 도울 도로 직선화, 무인 자동차, 사물인터넷, 걷기도우미 로봇 등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투자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곧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투자도 강화해야 한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타운도 형성해서 사회적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인산업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미래산업이면서 먹거리 산업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 자녀 정책으로 중국의 고령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들의 고령화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인산업과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가 개발한 노인산업과 서비스는 바로 중국으로 이전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고령사회는 노인들이 스스로 일하는 사회,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사회이다.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행복은 감소하다가 50세 전후부터 나이가 들수록 행복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 즐거움과 행복은 중년이 가장 낮고, 스트레스는 20대 초반이 가장 높으며, 두려움과 슬픔은 중년에 가장 높다고 한다. 노년은 이러한 감정적 요인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¹⁾ 따라서 청년의 조기 취업과 노인 취업의 확대로 근로기간이 연장되어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경제환경만 조성될 수 있다면 고령사회는 축복사회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정부가 나서서 시작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문제도 고령사회의 잔잔한 파장의 하나일 뿐일 수 있다. 

.....
**청년의 조기 취업과
 노인 취업의 확대로
 근로기간이
 연장되어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경제환경만 조성될 수
 있다면 고령사회는
 축복사회가 될 수 있다.**

1) Arthur A. Stone, et al., "A Snapshot of the Age Distribution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PNAS, Vol. 107-22, June 2010.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losing	Mid	Ch
	6.1293		
	1.2386		
	0.4823		
	8.8393		
	2.6432		
	1.2827		
	618.813		
	7.9738		
	0.0082		
	-0.0029		
	-0.0004		
	-1.3000		
	0.007		
	0.005		
	3.770		
	6.9100		
	2.0663		
	1.0028		
(C5)	483.750		



| 현안분석 |

■ 경기불황이 보건 지출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

—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은경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의료급여 진료비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한 소고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경기불황이 보건 지출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

-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

I. 서론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eklee@kipf.re.kr)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는 유럽 및 전 세계에 경기침체를 초래했으며, 미국에서는 1929년 세계대공황(Great Depression) 이래 가장 큰 경기불황(Great Recession)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기불황과 같은 거시경제적 충격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보건의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기불황이 보건의로 부문에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정적 재원확보의 어려움이다.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이 조세 방식인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의 소득 감소는 정부의 세수입 감소로 이어져 보건의로 부문에 배분될 재원이 감소하게 되고, 보험료 방식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인 근로소득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보건의로 부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의료의 접근성 및 질이 저하되거나 이용량이 감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단기적인 공공의료비 지출 감소로 인해 의료서비스 공급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해쳐 더 큰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보건의로 부문도 타격을 받게 되겠지만, 다른 부문과 달리 의료비 지출의 무조건적인 삭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 삭감에 신중해야 하고 현재의 보건시스템이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상태에서 비효율성을 줄이고 비용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가 공공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기존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잘 재정비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위기의 여파가 컸던 남유럽 국가(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들은 재정지출 전반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보건 부문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건강보험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여 경기불황에도 큰 충격 없이 보건시스템을 운영해 갈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2000년대 말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OECD 국가들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경기침체에 따른 보건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각국이 어떠한 보건정책을 시행하였는지 살펴본다.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의 세수입 감소는 보건재정에도 부담을 주어 긴축적 예산 운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각 국가들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공공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는지 고찰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아래 내용은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보건지출에 미치는 영향 및 보건의료 정책을 통한 대응방안으로 OECD(2014)와 WHO(2013)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II. 거시경제 변화(경기불황) 전후 보건의료비 지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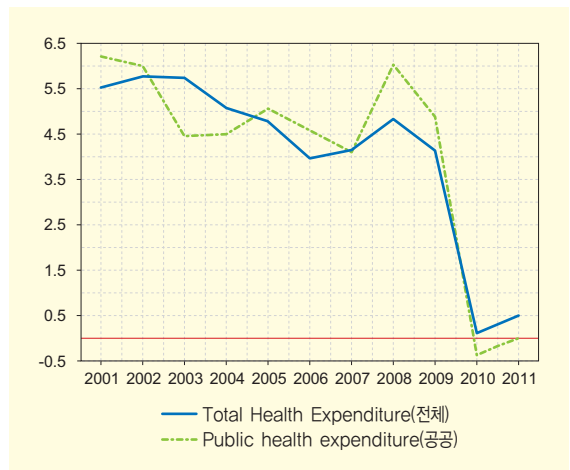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의료비 지출은 경기불황 이후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었다. 특히 OECD 국가 대부분에서 2009년부터 의료비 지출증가율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 OECD 평균 의료비 실질 지출증가율은 0의 값을 기록하였고 향후 몇 년간은 의료비 지출증가율이 매우 낮거나 음(-)의 값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OECD 국가의 2000~2009년 연평균 실질 의료비 지출증가율은 5%를 육박하였으나 2009년에는 4.1%로 감소하였고, 이후 경기침체의 여파로 2010년 0.1%까지 대폭 하락하였다. 실질의료비 지출증가율은 2011년 0.5%로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0의 값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의료비 지출증가율이 낮아진 주된 이유는 보건 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2010년과 2011년 모두 공공의료비 지출증가율이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

“
OECD 국가의 의료비 지출증가율이 낮아진 주된 이유는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2010년과 2011년 모두 공공의료비 지출증가율이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
 ”

[그림 1] 2000~2011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의료비 지출증가율(전체, 공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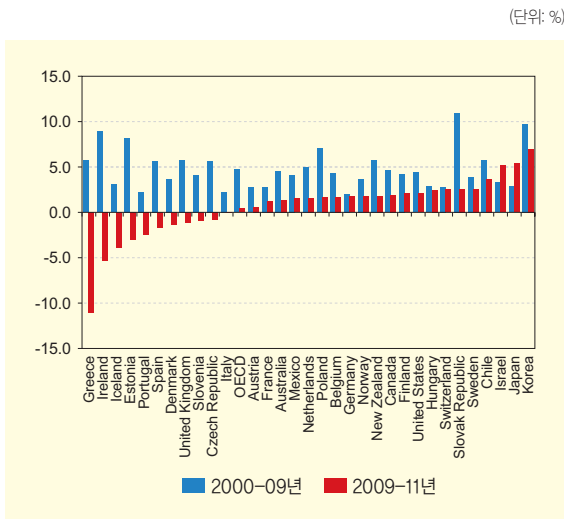


자료: OECD(2014)

[그림 2]는 국가별로 경기침체 이전(2000~2009년)과 이후(2009~2011년)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증가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의료비 지출증가율이 경기침체 이전보다 확연히 감소하였다. 특히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었던 PIGS 국가들(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의료비 지출증가율이 가장 큰 음의 값을 보이며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경기침체 이전에는 의료비 지출증가율이 10%

에 근접하여 슬로바키아와 더불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경기침체 이후 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 2009년 경제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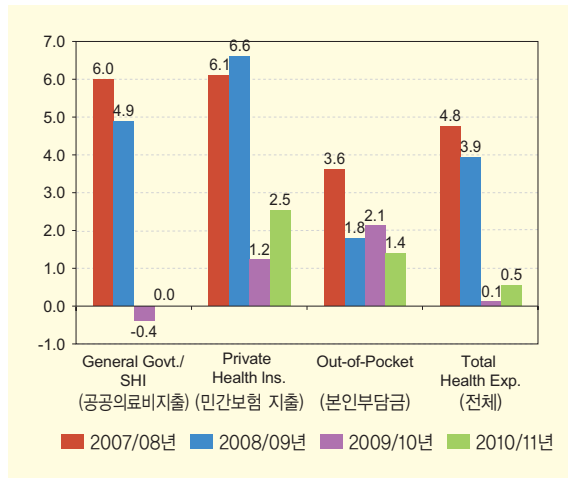


Note: Growth rates refer to 2009~10 rather than 2009~11 for Australia, Japan
 Source: OECD Health Statistics 2013
 자료: OECD(2014)

[그림 3]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의료비 지출, 민간보험 지출, 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한 후, 각 항목별 지출증가율을 살펴보았다. 공공의료비 지출증가율은 2007~08년 6%, 2008~09년 4.9%였으나, 2009~10년 -0.4%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0~11년에 0%를 기록했다. 이렇듯 의료비 지출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공공의료비 지출증가율의 현저한 감소는 전체 의료비 지출증가율 감소를 견인하였을 것이다. 미국 발 경제위기가 2008년 초반부터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경기변동이 보건의료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의료비 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연평균 지출증가율(2008~201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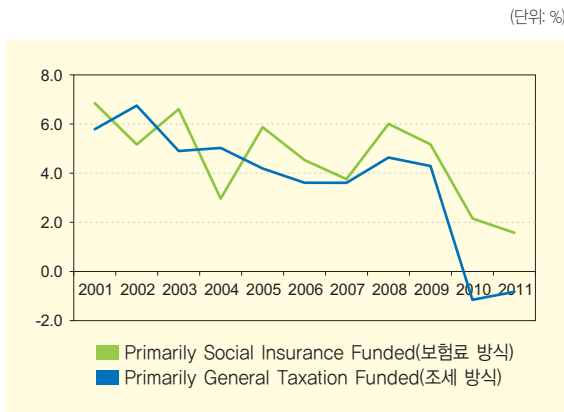
자료: OECD(2014)

경기불황이 보건의료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 충격의 크기와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국가마다 다른 패턴을 보인다. 조세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출의 다른 영역과 경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경기침체 시 재원확보가 보험료 방식에 비해 어려울 수 있다. 사회보험 방식의 경우 강제적으로 걷는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는다. 물론 보험료 부과기반인 근로소득의 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거나 정부의 이전재원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문과 경합하여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크지 않다.

[그림 4]에 따르면 보험료 방식이나 조세 방식 모두 2000~2009년에는 연평균 약 5%의 공공의료비 지출증가율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 경기침체 당시 조세 방식은 -1.2%까지 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반면, 보험료 방식은 2%까지 서서히 하락하고 있다. 그러

나 2011년 시점에서 보험료 방식은 의료비 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세 방식의 경우 저점을 지나 의료비 지출증가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보건 부문 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연평균 공공의료비 지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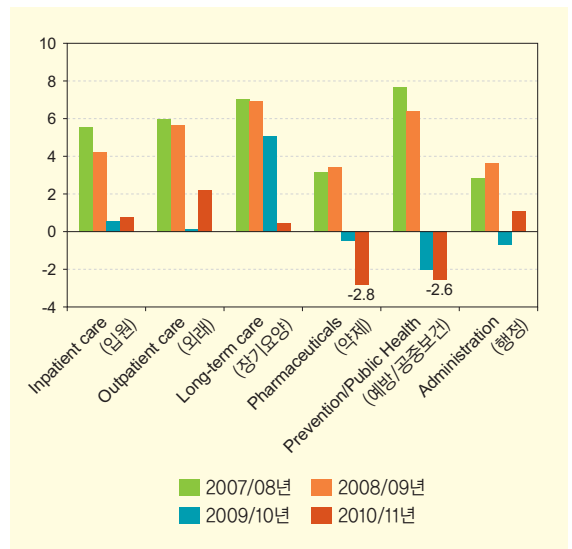


Source: OECD Health Statistics 2013
자료: OECD(2014)

[그림 5]는 경기침체로 인한 공공의료비 지출 감소를 기능별(입원, 외래, 장기요양, 약제, 예방/공중보건, 행정)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경제위기 이후 전 부문에 걸쳐 지출증가율이 감소하였는데, 2009년 위기 직후 예방 및 공중보건 부문의 지출증가율 감소폭이 가장 컸고 장기요양 부문은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총 의료비 지출의 32%를 차지하는 외래 부문의 지출증가율은 경제위기 이전 6%에서 이후 0.4%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치과와 전문의 진료 비용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을 보면 치료를 미루거나 비용부담의 변화 등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 OECD 국가들의 기능별 공공의료비 지출증가율(2008~2011년)

(단위: %)



Source: OECD Health Statistics 2013
자료: OECD(2014)

의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입원비의 경우에도 인건비 삭감, 병원 의료진 및 병상 감축, 환자 부담 증가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지출을 감소시켰다. 약제비 지출 감소 정책은 경제위기 이후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 약제비 지출증가율은 2010년 -0.4%에 이어 2011년 -2.8%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재정위험이 높았던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은 약제비 지출을 각각 20%, 13%, 8%씩 각각 감축하였다. 약제비 감축을 위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늘리고, 약가협상을 강화하였으며, 제너릭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고, 의사의 합리적 처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공(헝가리), 약품의 가격 인하(포르투갈) 정책을 시행하였다.

위기 직후 감소폭이 가장 큰 예방 및 공공보건 지출은 총의료비 지출 중 3~4%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예방서비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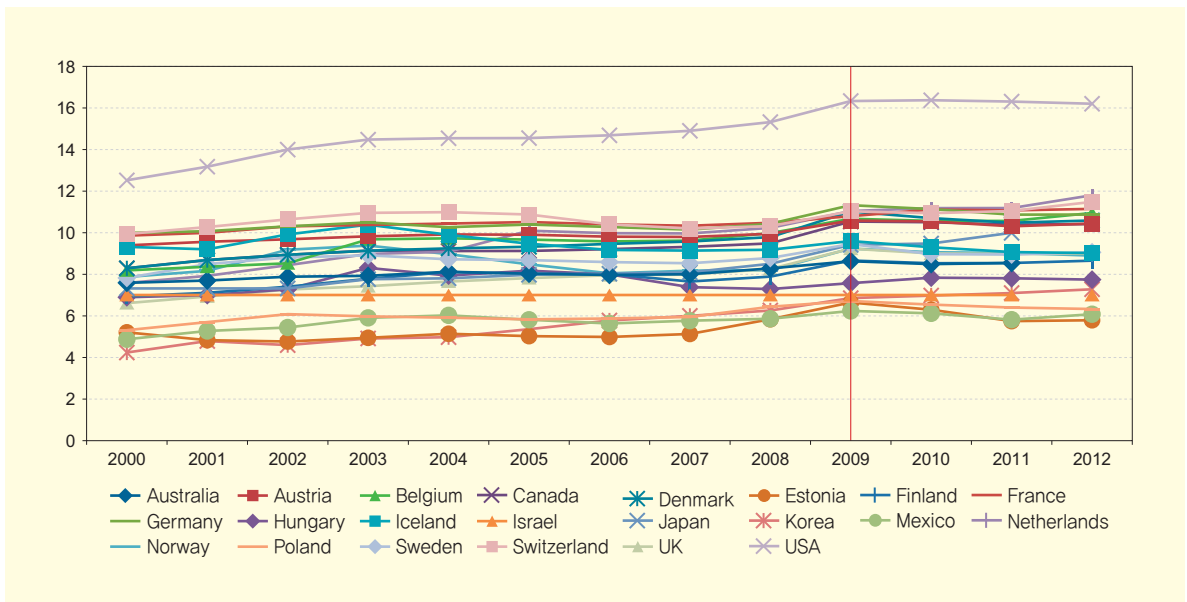
술·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운동, 정기검진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제고하는 공중보건 캠페인으로 장기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공보건 지출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켜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부문에 대한 지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의료비 지출 삭감 시 우선되는 경향이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예방 및 공공의료 부문 지출이 감소한 국가로는 에스토니아(2008년 대비 2009년 24% 감소), 이탈리아(질병예방과 건강증진기금이 2,960만유로에서 2011년 590만유로로 감소), 라트비아(2008년에서 2010년 사이 88.6% 삭감), 우크라이나(예방서비스 지출이 9% 감소)가 있다.

여 2000년대 말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6]에 따르면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증가세가 꺾이거나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림 7]에서 재정위기 충격이 컸던 남유럽 국가들을 따로 살펴보면 2009년을 기점으로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그림 8]에서 보듯이 2000년 이래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만 2009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세가 조금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OECD Health Data(2014)를 이용하

[그림 6] OECD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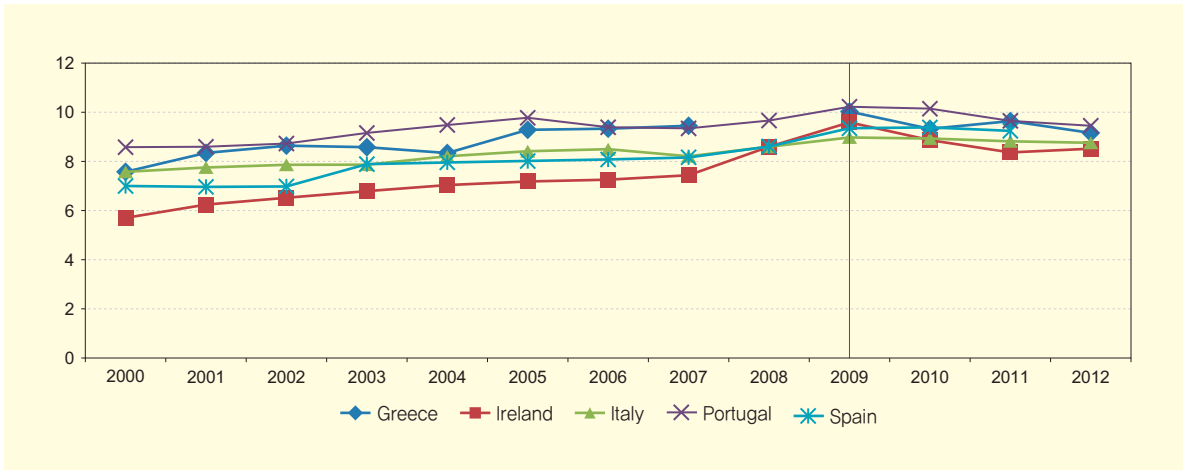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Health Data(2014)

[그림 7] 남유럽 국가(PIIGS)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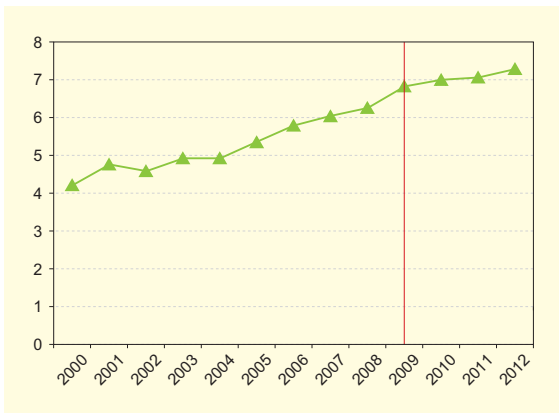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Health Data(2014)

[그림 8]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단위: %)



자료: OECD Health Data(2014)

III. 거시경제 변화(경기불황)가 보건의료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기불황은 보건의료 부문에 배분되는 재원을 감소시키고, 각 국가들은 이러한 외부충격에 대응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보건정책의 변화는 각 국가가 겪는 경제위기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유럽 국가 중 경제위기의 여파가 크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노르웨이에서는 보건정책 역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경제위기의 타격이 컸던 남유럽 국가들에 있어서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EU, ECB, IMF의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부채 재조정(debt restructuring)의 일환으로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 보건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이전에 계획되었던 정책이 시급성이 강화되고 정치적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더 빠른 속도와 강도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계획되었던 개혁의 속도가 늦춰지거나 취

“
**경제위기는 부문별 정부 지출을 위해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긴축 재정정책이 요구된다.**
 ”

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에서는 약제비 증가 억제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던 중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제약회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미리 계획했던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공급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혁이 그러하다. 예를 들면 불가리아는 재정부에서 수가 책정 과정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의료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다. 헝가리는 입원환자 수가에 대한 양적규제를 강화하려 하였으나, 병원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고, 루마니아는 일반의(GP)의 주당 진료시간에 상한을 정하는 정책을 제안하였으나 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치솟는 약가를 통제하기 위해 소매가에 상한을 정하려고 하였으나 약사파업과 제약회사의 강력한 반발로 가격통제의 정도를 약화하였다. 루마니아는 8개의 새로운 병원 건설 계획을 취소하였고, 아일랜드는 계획되었던 4개의 의료시설 건립 중 1개를 취소하였다.

체코,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등은 경제위기 이전에 취한 재정정책(적립금, 반경기적 정책) 덕분에 경제위기의 여파를 잘 넘긴 국가들이다. 에스토니아는 경제위기 시작 당시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요구하는 재정적자 및 부채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시점이어서 보건 부문을 포함한 재정지출 전반을 감축하였다. 이러한 재정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의 보건 부문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

다 충격을 덜 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에스토니아는 경기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유고를 운영하여 적립금을 비축하였고 따라서 경기불황에도 보건지출의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에스토니아는 경제위기 이전에 보건 부문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위기 이후 투자를 지연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의료의 질이나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헝가리는 경제위기 이전에 보건시스템의 효율성이 이미 고갈되었기 때문에, 경제위기 이후 보건 부문이 큰 타격을 받은 케이스이다.

경제위기는 부문별 정부 지출을 위해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긴축 재정정책이 요구된다. 보건의료 부문 재원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원부문에 대한 조정,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조정, 비용에 대한 조정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1. 건강보험 재원의 조정

① 보건예산 조정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건예산 삭감을 경험하였다. 불가리아와 라트비아는 보건예산이 무려 20% 이상 삭감되었고, 영국은 보건예산을 동결하였는데 이는 실질 지표로는 삭감을 의미한다. 특히 재정위기를 크게 겪은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공의료비 지출의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졌다. 포르투갈은 2009년과 2010년 유지했던 공공의료비 지출을 2011년 8% 삭감하였으며,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2010년과 2011년에 2009년 대비 75%, 82% 수준으로 공공의료비 지출을 삭감하였다. 반면 의료비 수입 및 지출이 모두 증가(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하거나, 건강보험 예산이 증가한 경우(프랑스, 덴마크)도 있다. 잉글랜드, 벨기에, 덴마크는 다른 부문 지출

이 감소되어도 보건 부문 지출은 우선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였고, 그 일환으로 덴마크는 교육예산으로 보건예산을 교차지원(cross-subsidize)하였다.

② 재정정책

보건부문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새로운 대상에 과세하거나 기존 대상에 부과하는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있다. 비임금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여 보건 부문에 활용하는 방식을 택한 경우로는 프랑스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와 이탈리아의 보건 부문 적자가 큰 지역에서의 지방세 인상이 있다. 프랑스와 헝가리는 보건 부문 재원 마련을 위해 신규 세금을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2009년부터 사회보장 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특정 소득에 새롭게 2%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동 세율은 2010년 4%, 2011년 6%까지 인상되었다. 헝가리는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과 음료에 공공보건세(public health tax)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에서는 건강보험기금의 부채 탕감을 위해 보조금을 도입하였고, 독일, 스위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는 정부로부터의 이전지출을 유지 혹은 증가시켰다.

③ 보험료 수입 증대

보험료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는 국가들의 경우 소득상한 인상,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정부의 이전지출 인상 등의 방식으로 고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불가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에서는 건강보험 요율을 인상하였고, 네덜란드, 불가리아, 체코(자영업자)는 보험료 상한을 높였다. 비근로소득에까지 부과기반을 확대하는 경우는 배당소득(슬로바키아), 연금소득(크로아티아,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공무원연금, 루마니아는 고소득층 연금), 명예퇴

“
보건부문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새로운 대상에 과세하거나 기존 대상에 부과하는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있다.
 ”

직수당(프랑스) 등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넓혀갔다. 헝가리에서는 보험료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로부터의 기여금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경기불황 시기에 노동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경우도 있었다. 크로아티아, 독일, 몰도바, 몬테네그로에서는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헝가리는 고용주 부담 보험료를 인하해 주었다.

④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출

경기불황 이후 보건재정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노력을 시행하였다. 건강보험료 인하, 약제비 지원,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혹은 철폐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었다. 몬테네그로는 저소득 연금수급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준 반면, 프랑스는 초고소득층 자영업자, 루마니아는 부유한 연금수령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였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부유층 근로자 및 연금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공무원 대상 의료보험에 대한 고용주(정부) 지원금을 고정 혹은 감소시키고, 포르투갈은 고소득 가구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저소득층의 약제비를 지원하고,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몰도바, 슬로바키아에서는 처방약에 있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

“
**이론적으로 건강보험 커버리지에는
 적용 인구, 적용 서비스 범위,
 환자의 비용부담 등 3가지 단면이 존재한다.**
**건강보험의 적용인구나 적용 서비스 감소,
 정부의 비용부담 감소는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민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

이슬란드는 저소득층의 초과치료 본인부담금을 인하여 주고, 프랑스, 벨기에, 라트비아에서는 환자 본인 부담금 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였다. 크로아티아는 1차 진료와 외래 처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하였으며,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스는 공립병원 이용시 진단테스트 비용, 당뇨와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병원비, 빈곤선 이하의 장기실업자와 그 가족들의 본인부담금을 철폐하였다.

2. 의료서비스의 커버리지 조정

이론적으로 건강보험 커버리지에는 적용 인구(breadth), 적용 서비스 범위(scope), 환자의 비용부담(depth) 등 3가지 단면이 존재한다. 건강보험의 적용인구나 적용 서비스 감소, 정부의 비용부담 감소는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민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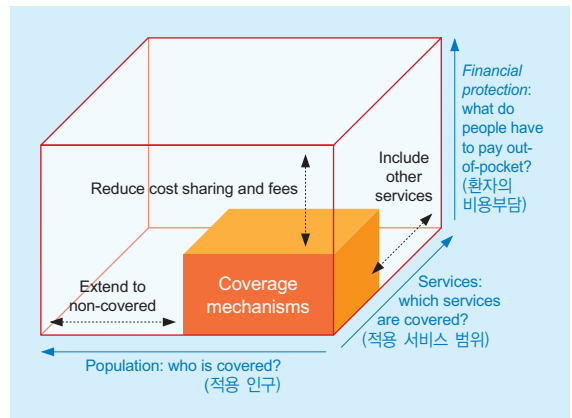
① 건강보험 적용 대상 감소(breadth)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으로 인한 적용대상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경제위기 후 보건 부문 재원감소로 인해 외국인 혹은 특정 그룹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entitlement)을 박탈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대

상 인구에 조정이 발생하였다. 스페인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거주지에서 보험상태로 변경하여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였다. 아일랜드는 2008년 70세 이상의 고소득층이 무료로 1차 진료를 받는 것을 건강보험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2011년 다시 전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회귀되었다.

반면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커버리지 확대가 대표적인데, 에스토니아는 9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등록된 사람에게 응급실 무료 진료를 허용하였고, 그리스는 29~55세 실업자에 한해 공공병원 무료 진료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2014년부터는 빈곤선 이하 장기 실업자와 그 가족 모두에게 공공병원 무료 진료를 허가하였다.

[그림 9] 건강보험의 3가지 단면



자료: WHO(2014)

② 건강보험 적용 서비스 범위 축소(scope)

경제불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특히 비용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축소하지 않았다. 다

만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저효용 서비스를 정리하고 그동안 정치적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개혁을 단행하여 효율성 제고를 꾀하였다. 보장성 축소 방법으로는 병가 급여 축소(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입원서비스 양을 의사와 병원이 스스로 할당(헝가리), 연간 동일 질환으로 인한 의사방문 횟수에 상한 설정(루마니아는 2010년까지 연 5회였던 것을 2011년 3회로 축소), 특정 질환 혹은 특정 그룹에 대한 급여비 보상 축소(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는 성인의 치과 진료, 포르투갈은 성형, 스위스는 안경, 네덜란드는 정신과 치료, EU 밖에서 받는 치료, 불임치료, 물리치료) 등이 있다.

③ 환자부담금 인상(depth)

유럽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16개 국가에서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입원 부문(프랑스,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에스토니아(입원 중 간병) 등), 외래 부문(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등), 약제비 부문(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체코 등), 응급실 부문(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응급 이외의 서비스) 등), 장기요양 부문(에스토니아)에서 환자 비용부담 인상이 있었다. 또한 구급차(프랑스, 슬로베니아), 불임시술(덴마크, 네덜란드), 예방접종(포르투갈, 체코), 의료기기(체코), 의사진단서(포르투갈), 치과 교정 및 안경(슬로베니아), 물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네덜란드), 의사의 가정방문(루마니아) 등에서도 환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였다. 라트비아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연간 상한을 증가시켰고, 영국은 무료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있었으나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은 건강보험 보험자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

“
**보건 부문의 효율성 제고는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우선순위가 됨으로써 좀 더 시급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환자부담 증가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까지 저해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도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가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정책으로 크게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지는 않았다.

④ 민간 의료보험의 역할 확대

공공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장려하였다.

3. 보건시스템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보건 부문의 효율성 제고는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우선순위가 됨으로써 좀 더 시급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은 함께 혹은 따로 추진될 수 있는 방식이다. 제너릭 약품 처방, 입원보다는 외래서비스의 이용 등은 생산성 제고 및 질 향상을 통해, 즉 효율성 향상을 통해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케이스다. 반면 비용절감은 이루어졌으나 효율성이 저하된 케이스도 있다. 예를 들면 병원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져 의료의 접근성이 저해되거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공급자의 보수를 삭감하여 환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웃돈을 주어야 하

“
**유럽 국가들은 보건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차 진료를 강화하여 병원 이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인프라 감소를 통한
 고정지출 감소 정책을 피하였다.**
 ”

는 경우(그리스, 루마니아)가 그러하다. 또한 자본 투자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단기적으로 비용은 절감되나 미래에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음으로 효율성은 제고되었으나 비용은 절감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 e-health에 대한 투자, 케어 공조체제 구축, 보건기술에 투자, 치료 가이드라인 평가 및 개발, 공급자 지불보상체계 개혁 등이 그러한 예이다. 물론 비용절감도, 효율성 제고도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다. 제품, 서비스, 능력, 기술, 인프라 투자에 대해 가치기반적 접근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① 의료공급자에 대한 임금삭감 및 지불제도 개선
 의료공급자에 대한 보수, 즉 인건비가 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종사자의 임금삭감 및 지불보상 축소 정책이 제기되곤 한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임금과 지불보상을 축소(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하거나, 임금과 지불보상 동결(독일, 영국), 또는 인상률 제한(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동시에 영국, 스페인, 에스토니아 등에서는 지불보상제도 개혁이 적시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대기시간 투명성 제도를 도입 혹은 강화하였다.

또한 임금이나 지불보상을 직접 삭감하지는 않더라도 의료공급자에 대한 다른 형태의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영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등에서는 의료종사자의 연금 자격 변동, 근무시간 증가, 초과근무 축소 등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에서는 의사에 대한 지불보상제도를 성과와 연동시키거나,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체코 등에서는 의로서비스(특히 병원부분) 수가 협상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에서는 병원의 예산 제약을 강화 혹은 도입하였으며 경상비(overhead costs)에 상한을 설정하였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에서는 은퇴 의료종사자를 대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료공급자 수를 축소하였다.

② 약가정책 강화

의료비 지출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영국, 그리스,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에서는 정부의 협상력을 늘리고 정부가 조달하는 약제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정부가 구입 또는 지불보상하는 약품들에 있어 협상을 통해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보건시스템의 혁신과 개편

보건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차 진료를 강화하여 병원 이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인프라 감소를 통한 고정지출 감소 정책을 피하였다. 그 방법으로 병원의 폐업, 합병, 중앙집권화 장려(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단기적으로 경상비 지출 감소를 위해 보건 관련 부처와 건보공단의 인원삭감 및 중앙집권화(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르

투갈, 스페인, 영국), 자본투자 축소(영국, 우크라이나 등), 자본투자 연기(스위스, 불가리아 등) 등이 있다. 또한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장려(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스코틀랜드, 루마니아)하고, 입원 위주에서 외래 위주로 전환(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등), 1차 의료에 대한 투자 및 치료 공조체제 강화(영국, 헝가리, 알마니아, 몰도바), 1차 의료에 기반한 네트워크와 간호사 중심 관리(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의 방식이 장려되었다.

④ 비용효과적인 투자 제고

보건 제품, 서비스, 스킬, 기술, 인프라, 질 향상을 통해 보건부문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였는데, ‘퀄리티’ 통제(영국), 치료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 도입 혹은 확대(벨기에, 포르투갈 등), HTA(보건기술 평가) 사용을 도입 혹은 확대, e-health에 대한 투자 확대(체코,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등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⑤ 공공보건 향상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건강증진정책(벨기에, 그리스, 영국 등), 흡연억제 정책(불가리아, 헝가리), 술, 담배, 탄산음료, 건강 유해식품에 대한 과세정책(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시행되었다.

IV. 정책적 시사점

WHO(2014)에 따르면 2008년까지 꾸준히 경제성장세를 보였던 유럽 국가들이 2009년에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며, 정부부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요인이 공공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평균 13%를 기록했던 정부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
**경제 및 금융위기와 관련된
 거시경제적 충격이 어떤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의 정도, 기간, 회복속도 등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에서 최고 1%p 감소하였고, EU 국가 중 절반이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감소를 경험하였다.

경제 및 금융위기와 관련된 거시경제적 충격이 어떤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의 정도, 기간, 회복속도 등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경제위기의 여파가 컸던 남유럽 국가들은 대대적인 재정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보건 부문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던 데 비해, 경제위기 여파가 크지 않았던 국가들은 보건 부문 예산이나 지출 조정이 크지 않았다. 본문에서는 거시경제적 충격이 의료비와 보건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경기불황은 보건의료비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세를 둔화시킴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을 부문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약제비, 공공보건, 예방서비스 등에서의 지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제위기 후 보건 부문에서 국가들의 대응자세는 새로운 보건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이전에 수립했던 정책을 앞당겨 시행하거나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경우, 위기 전에 수립했던 정책을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보건예산 삭감을 흡수하기 위해 병원 합병 및 철폐, 의료진 감축, 진료시간 축소, 환자부담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보장성 감소, 의료공급자 급여 및 보상 감소 등은 의료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경제위기는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줄이고(프랑스, 그리스, 스위스,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알마니

아), 가격이 낮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높이며(벨기에),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리투아니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저소득층, 혹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타격이 큰 인구집단의 의료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보장성을 줄이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비용 효과적이며 필수적인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여 경기불황에도 국민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국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 폭이 OECD 어느 국가들보다 높고, 따라서 의료비 지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고령화, 소득 증가 등 보건의료 재정 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적 조합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 부문의 수입 측면과 지출 측면 양쪽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정책 옵션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수입 측면에서 보험료를 인상은 현재 실행하고 있고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는 실행에 옮기고 있는 단계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보건재정에 투입되지 않으나 새롭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보건 지출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부담금 조정, 지불보상제도 개혁, 입원 위주에서 외래 위주로의 전환, 1차 의료에 대한 투자 및 치료 공조체제 강화, 1차 의료에 기반한 네트워크와 간호사 중심 관리 정책 등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재원을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보다 강화하는 정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경기불황은 유럽과 더불어 한국 경제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 세수입 감소, 근로소득 감소 등에 따른 보건부문 재원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그동안 정치적 반대 등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비용절감을 위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옵션들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기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예를 들면 약가 인하, 환자부담금 인상 등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1차의료 강화, e-health 확대, 건강한 생활습관 제고와 같은 예방적 조치)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금번의 경제위기를 그동안 정치적 반대 등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보건 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KI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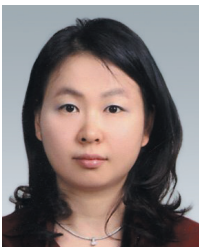
〈참고문헌〉

OECD(Morgan, David and Roberto Astolfi), "Health Spending Continues to Stagnate in Many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68, OECD Publishing, 2014.

WHO, *Health, Health Systems and economic crisis in Europe: Impact and policy implications*, 2013.

의료급여 진료비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한 소고

I. 서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sechoi@kipf.re.kr)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지출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의료급여 지출은 약 4.4조원으로 지출규모만 놓고 보면 국가재정에서 주목할 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2001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격적 도입 이후 의료급여 지출이 급속한 속도로 증가해 왔다는 점과 이후에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인한 지출증가 가능성을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올해 말 예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화는 대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외래와 약국진료에 대해서는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1종 입원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전무하여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요인이 되고 있다. 낮은 본인부담금 수준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제약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과다 의료서비스 수요와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은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와 1인당 의료 이용수준이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의 약 3.6배나 많고, 1인당 입내원 일수도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약 4배에 달하고 있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 91%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65세 이상 노인수급자 비중이 약 30%로 높으며, 이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의 만성질환 유병률도 건강보험 가입자보다는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가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약 23%(유원섭, 2008)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
**의료급여제도는
 외래와 약국진료에 대해서는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1종 입원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전무하여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요인이 되고 있다.**
 ”

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현황과 추이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문제를 확인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II. 의료급여 제도 개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2014년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통합급여로 제공되고 있다. 의료급여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최초로 공포되었을 당시 생활보호법에 의료보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것을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69년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되고서야 비로서 미미하나마 사업의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의 생활보호법하에서는 생활 무능력자에 대하여 보건소나 국공립 의료기관 및 지정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70년대 외국 원조단체들의 무상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일부를 이들의 진료에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기관과 진료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는 의료

보호가 생활보호법하에서 시행되다가, 1977년 의료보호법의 제정과 더불어 의료보호가 생활보호로부터 분리되면서 실질적인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1년 현재의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의료보호 대상자와 급여, 본인부담률이 변화를 거듭하였고, 의료보호 기관과 의료보호 기간 등이 확대되었다. 과거의 생활보호제도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 그 틀을 확립함에 따라, 의료보호법도 2001년에는 현행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의료급여 지급기관도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되며 현재의 의료급여 틀을 갖추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주된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의료급여의 대상에는 수급권자 외에도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와 타법 수급권자가 포함된다.¹⁾ 의료급여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된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자격자와 의사상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새터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및 무연고자를 포함한다. 노숙인은 2012년부터 타법 대상자로 1종 대상에 포함되었다. 기초보장수급자 중 1종 자격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세대,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65세 이상자와 중증장애인, 임산부, 병역의무 이행자, 3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종에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도 근로능력가구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된다. 차상위 계층은 2004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

1)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처가 없는 자,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함되었는데, 2008년부터는 다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었다.

생활보호를 근간으로 의료급여가 발전되었던 까닭에 전통적으로 의료급여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에는 차상위 난치성 및 만성질환자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후 2005년에는 차상위 12세 미만 아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가, 2006년에는 차상위 18세 미만 아동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차상위 계층까지의 의료급여 확대는 의료급여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차상위 의료급여는 2008년 차상위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를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2종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까지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되었다. 2009년 이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타법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좁혀졌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이 전혀 없으며, 외래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1,000원에서 최대 2,500원으로 작고, MRI 나 CT 등 특수장비촬영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총액의 5%로 부담이 작은 편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노인틀니에 대한 의료비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1종 수급자 중 18세 미만, 임신부, 중고등학교 재학자, 노숙인,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외래 이용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이 없다. 2종 의료급여는 입원 시에 비용 총액의 10%가 자기부담금이고,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1종 의료급여보다는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자기 부담액이 크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에는 본인부담보상제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일부나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1종 대상자의 경우 한 달 동안 2만원이 초과되면 본인부담보상제에 의해 초

“
**금번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편과 더불어 일어난 큰 변화는
 빈곤층의 정의에 사용되는
 빈곤선이 최저생계비라는 정책적 빈곤선에서
 중위소득을 이용한 상대적 빈곤선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

과금액의 50%를 상환받을 수 있고, 한 달 동안 5만원이 본인부담상한액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상환받는다. 2종 대상자의 경우는 한 달간 2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50%를 보상받고,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원, 보건소, 보건의료원의 1차 의료기관과, 병원 및 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기관, 의료급여 지정 2차 의료기관인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차, 2차, 3차 기관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즉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소등에서 1차 진료를 받고 1차의료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급병원으로 단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 비율도 2005년 약 22.9%에 달하고 있는 등 의료급여 지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여(유원섭, 2005),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나 중복 방문자등에 대해서는 선택 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의료급여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본인부담이 면제되었던 1종 대상자의 외래진료에 대해 2007년부터 일부 본인부담을 적용하게 되었다. 2007년 1종 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본인 일부부담금이 도입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1종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생

“
**의료급여 지출은 2014년
 현재 전체 기초생활보장지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약 1조 6천억원의 규모에서
 2014년 예산기준
 약 4조 4천억원까지 증가하였다.
 2001~2014년도 기간 동안
 의료급여 지출은 연평균
 약 8.2%로 증가하고 있다.**
 ”

활유지비로 월 6,000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할 때는 본인부담금의 50%를 환급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 환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함께 도입됨에 따라 외래 이용 증가에 따른 본인부담은 작아지는 문제가 있고, 또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은 전혀 없는 등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이용 과다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개편될 예정인데, 현재 방안대로 개편 이후에 의료급여가 중위소득 40%를 선정기준으로

개편되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급여 지출도 더욱 증가할 수 있다. 금번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편과 더불어 일어난 큰 변화는 빈곤층의 정의에 사용되는 빈곤선이 최저생계비라는 정책적 빈곤선에서 중위소득을 이용한 상대적 빈곤선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선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논리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곤 하였으나, 절대적 빈곤선이나 정책적 빈곤선과 비교할 때 단점도 상당히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가 다양한 시각에서의 논의를 반영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은 이후 중위소득의 40% 수준으로 변경될 예정에 있다.

Ⅲ. 의료급여 지출과 의료급여 진료비 현황

의료급여 지출은 2014년 현재 전체 기초생활보장 지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약 1조 6천억원의 규모에서 2014년 예산기준 약 4조 4천억원까지 증가하였다. 2001~2014년도 기간 동안 의료급여 지출은 연평균 약 8.2%로 증가하고 있다. 동 기간

〈표 1〉 의료급여 대상자 개편계획

현행			개편 후	
선정기준	급여 수준(내용)		선정기준	급여 수준(내용)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 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계	중위소득 30% 수준	중위소득 30% 수준
	최저생계비의 80% 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주거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 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의료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현물급여)	교육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동안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연평균 약 7.7% 증가한 것에 비해 의료급여 지출은 빠른 속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의 기간 동안에는 단계적으로 차상위 계층까지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의료급여 지출도 2003년 약 1조 8천억원에서 2007년에는 3조 6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듯 차상위 대상자 확대에 의해 의료급여 지출이 급증하자, 결국 2008년부터 차상위 대상자는 다시 건강보험으로 이관되었다. 2008년 4월에는 의료급여 1종 중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고, 2009년 4월에는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급증하던 의료급여 지출은 2008년도와 2010년도에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의료급여 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이는 의료급여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기보다는 차상위 의료급여 지출의 부담이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 지출로 이관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의료급여 국고보조율은 서울이 50%, 지방이 80%, 광역시는 20%를 부담하고 있다. 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외에 기초자치단체도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데, 시는 6%, 군은 4%의 지방비 부담을 지고 있다. 즉 의료급여 지출증가는 지방비에도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의료급여 전체 지출액 중 총 24%가 지방비 부분이었고, 의료급여 지출의 평균 국고보조 비율은 77%로 추정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3).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의료급여 지출을 위하여 의료급여 기금을 조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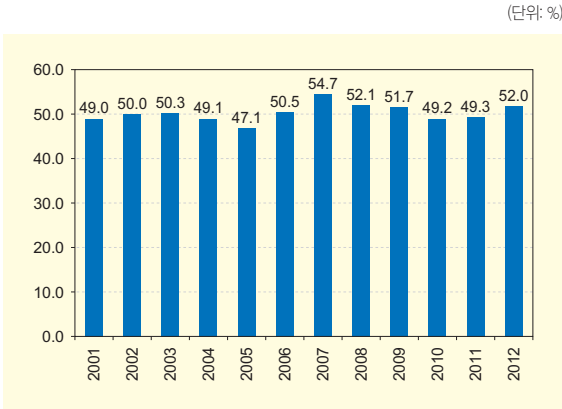
〈표 2〉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기초생활보장 ¹⁾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지원 예산 ⁴⁾
	생활보장 ²⁾				기타	
	생계급여	의료급여 ³⁾				
2001	32,419	31,495	12,835	15,893	2,767	-
2002	33,819	32,340	12,641	16,901	2,798	-
2003	35,045	33,549	13,130	17,612	2,807	-
2004	38,275	36,192	14,449	18,810	2,933	-
2005	45,304	42,970	18,404	21,325	3,241	-
2006	52,691	50,035	20,293	26,623	3,119	-
2007	65,389	62,468	23,086	35,771	3,611	-
2008	67,484	64,551	22,564	35,161	6,826	688
2009	73,323	69,397	25,193	37,908	6,296	1,478
2010	71,119	67,587	24,492	35,002	8,093	1,139
2011	74,519	69,613	21,335	36,718	11,560	1,335
2012	76,533	71,057	23,618	39,812	7,627	1,546
2013	82,472	76,601	25,902	42,478	8,221	2,107
2014 (예산)	84,709	79,215	25,240	44,366	9,609	2,735
연평균 증가율	7.67	7.35	5.34	8.22	10.05	25.9

주: 1) 기초생활보장 예산: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예산으로 구성
 2) 생활보장 예산: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타(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양곡할인 등)으로 구성
 3) 의료급여: '01년 4,500억원, '05년 823억원, '08년 2,747억원, '09년 920억원, '13년 1,456억원 추경 추가
 4)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지원 예산: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편입에 따른 본인부담 차액과 지역가입자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주요업무참고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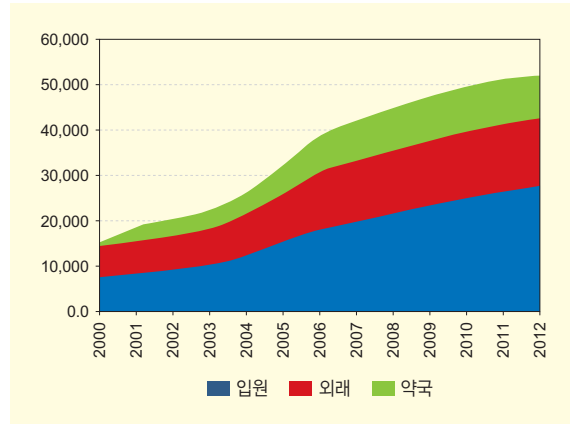
[그림 1] 기초생활보장 예산 대비 의료급여 예산 비중 (중앙정부 지출)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주요업무참고자료』, 각 연도.

[그림 2] 의료급여 진료비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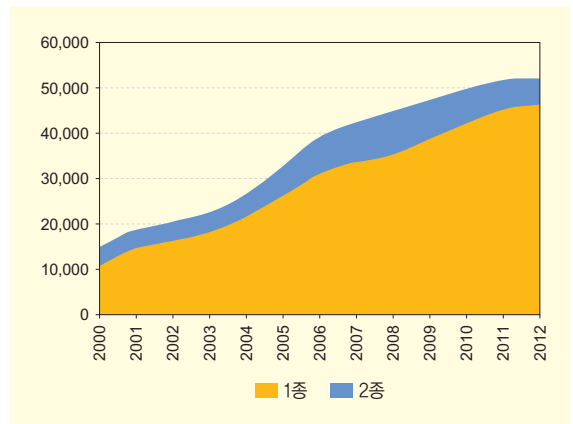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각 연도.

의료급여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2001년 약 1.9조원에서 2012년 5.2조원으로 연평균 9.62%로 증가하고 있다. 종별로는 1종 진료비가 4.6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고, 2종 진료비는 0.5조원 정도이다. 의료급여 1종 진료비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종 진료비는 2008년 차상위 1종 희귀질환자와 2009년 차상위 2종 만성질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9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본인부담금이 전무한 입원 진료비가 2.7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고, 외래진료비는 약 1.5조원, 약제비는 약 0.9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1종 입원비가 2.6조원, 1종 외래비 약 1.3조원, 1종 약제비가 약 0.8조원으로 역시 대부분의 진료비가 1종 진료비인 것을 볼 수 있다. 2종의 입원비, 약제비, 외래비도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의료급여 종별 진료비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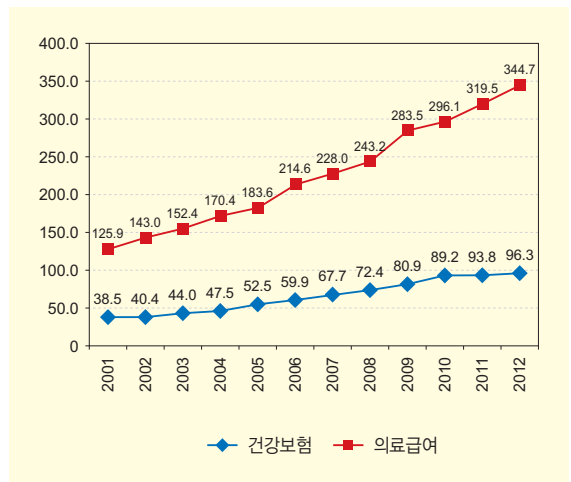
Ⅳ.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진료비 및 의료이용 비교

의료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비와 비교하여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의 과다함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약 151만명(2012, 전체 인구의 약 3%)에 대하여 5.2조원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대상자 약 4,966만명(2012, 전체 인구의 약 99.3%)에 대하여 약 48조원의 진료비를 소요하고 있다. 1인당 진료비로 환산하여 보면, 건강보험의 1인당 진료비는 96만원인 데 비해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의 약 3.6배인 약 348만원에 달하고 있다. 2001~2012년 동안 건강보험의 1인당 진료비는 8.7% 증가하였으나,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는 9.6% 증가하여,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에 비해 상당히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를 살펴보면 2012년 의료급여의 1인당 급여비는 약 339만원임에 비해 건강보험은 약 72만원으로, 건강보험 1인당 급여비에 비해 약 4.7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 것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이용이 건강보험 대상자들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인데, 이는 1인당 내원일수를 비교하여 보면 보다 확연해진다. 건강보험 대상자들의 1인당 내원일수는 19일인데, 의료급여 대상자의 1인당 내원일수는 이의 약 3.9배인 74일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높고 만성질환자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이용이 평균보다 과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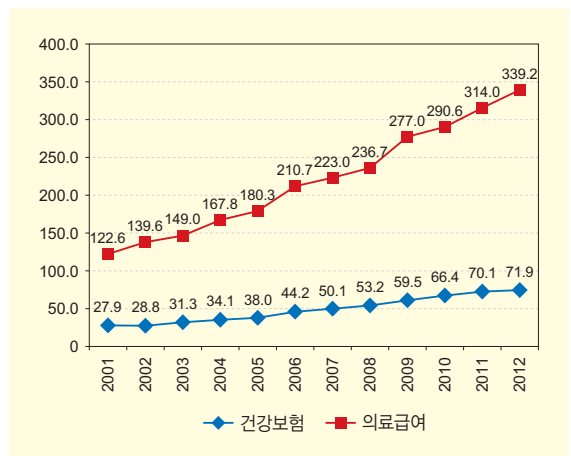
(단위: 만원/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건강보험 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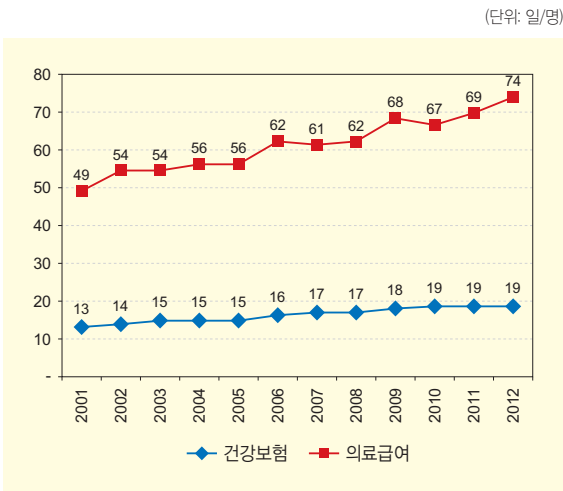
[그림 5]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비교

(단위: 만원/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건강보험 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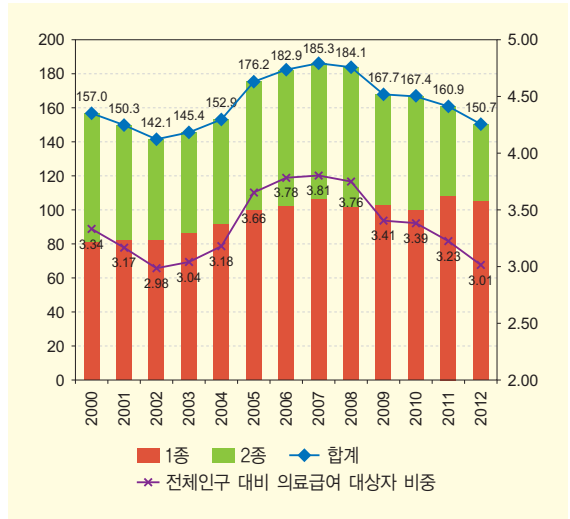
[그림 6]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1인당 연간 내원일수 비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건강보험 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7]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만명,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각 연도.

<표 3>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총계		1종		2종	
	65세 이상	비율	65세 이상	비율	65세 이상	비율
2001	371,664	24.7	329,408	39.6	42,256	6.3
2002	374,365	26.4	340,135	41.0	34,230	5.8
2003	391,848	27.0	361,176	41.6	30,672	5.2
2004	415,346	27.2	381,244	41.5	34,102	5.6
2005	452,480	25.7	404,728	40.6	47,752	6.2
2006	469,374	25.7	413,826	40.2	55,548	6.9
2007	489,056	26.4	429,816	40.5	59,240	7.1
2008	486,633	26.4	426,921	41.7	59,712	7.3
2009	459,941	27.4	436,614	42.1	23,327	3.6
2010	470,227	28.1	449,201	41.9	21,026	3.5
2011	460,371	28.6	443,896	40.8	16,475	3.2
2012	454,116	30.1	440,520	41.6	13,596	3.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각 연도.

V.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요인으로는 대상자 증가, 수가인상, 수진율(대상자 1인당 진료건수) 증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 대상자는 2004~2008년의 기간 동안 차상위 대상자가 포함되었다가 2009년 차상위 대상자가 다시 건강보험으로 이관되면서 2012년에는 150.7만명으로 2000년 157만명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00~2012년 동안 의료급여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는 의료수가 인상, 대상자 1인당 진료건수나 내원일수의 증가로 풀어볼 수 있다. 의료수가는 2008년 1.94%, 2009년 2.22%, 2010년 2.05%, 2011년 1.64% 인상된 바 있으나, 의료급여 진료비의 동 기간 증가율은 4~8% 수준으로 의료수가 인상분을 상회하고 있다. 즉, 의료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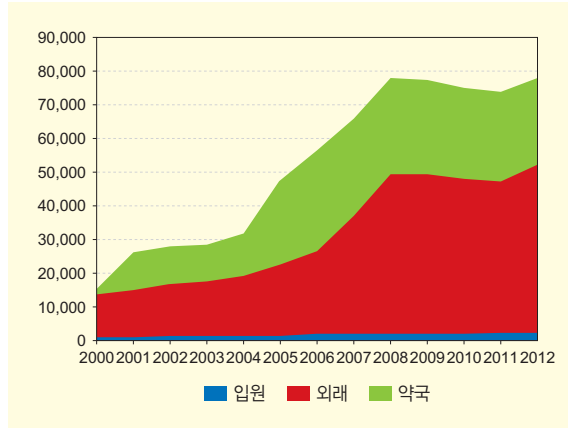
가. 의료급여 진료건수와 수진율

의료급여의 진료건수는 2000~2012년 기간 중 연평균 약 14.1% 증가하여 진료비 증가율보다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의료급여 진료건수는 2000년 약 1,600만건에서 2012년에는 약 7,800만건으로 증가했다. 물론 2004~2009년의 기간 동안은 차상위 대상자가 포함되었으므로 진료건수가 이전에 비해 급증하였을 것이나, 2010년에도 증가한 진료건수는 이전의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고,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의료급여 1인당 진료건수를 보아도 잘 나타나고 있다. 1인당 수진율은 2000년에는 약 10%에서 2012년에는 약 52%로 2000~2012년 기간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이 제외된 2010년 이후에도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진료건수와 1인당 수진율의 증가는 외래와 약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인당 수진율의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4.5%인데, 외래 수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12.4%, 약국 수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22.2%로 약국과 외래의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입원은 외래나 약국에 비하여서는 진료건수나 수진율이 낮은 것이 정상적이나, 진료비의 규모가 크므로 진료건수와 수진율의 증가율을 주목하여 볼 만하다. 입원 진료건수는 동 기간 약 연평균 9.1%로 증가하였고 수진율은 연평균 약 9.5%로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 의료급여 진료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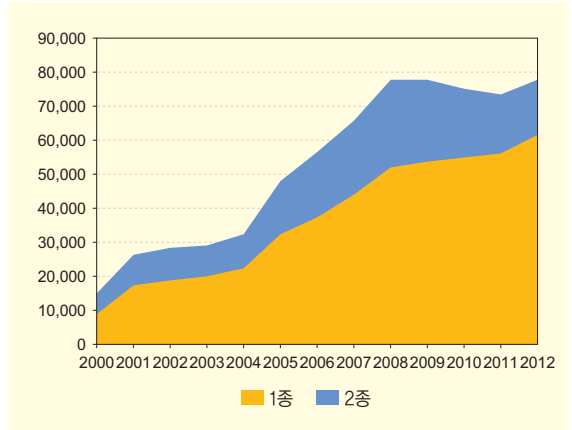
(단위: 천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9] 의료급여 종별 진료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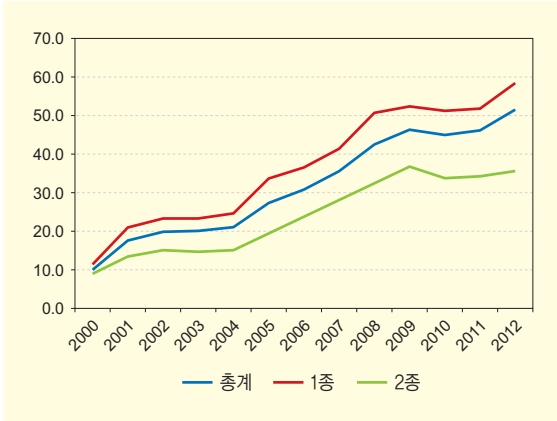
(단위: 천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10] 의료급여 종별 1인당 진료건수(수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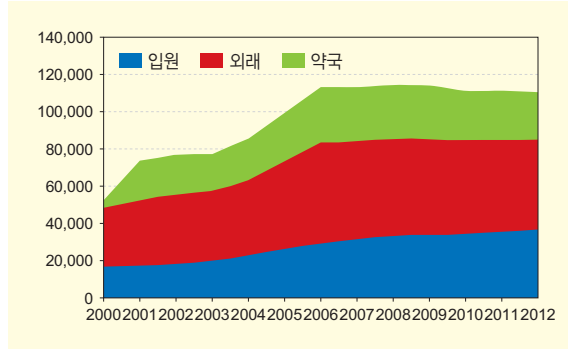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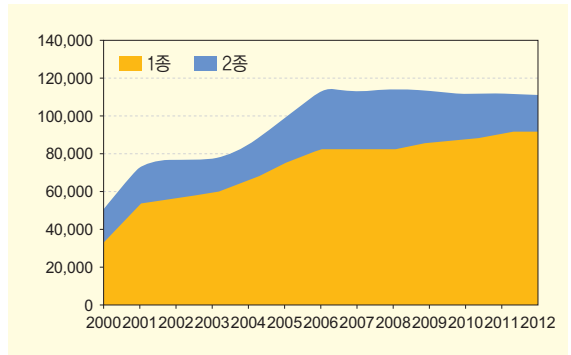
[그림 11]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추이

(단위: 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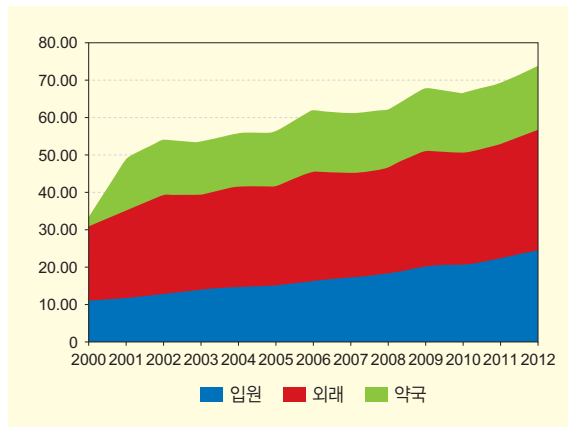
[그림 12] 의료급여 종별 입내원일수 추이

(단위: 천일)



[그림 13] 의료급여 1인당 입내원일수 추이(총계기준)

(단위: 일/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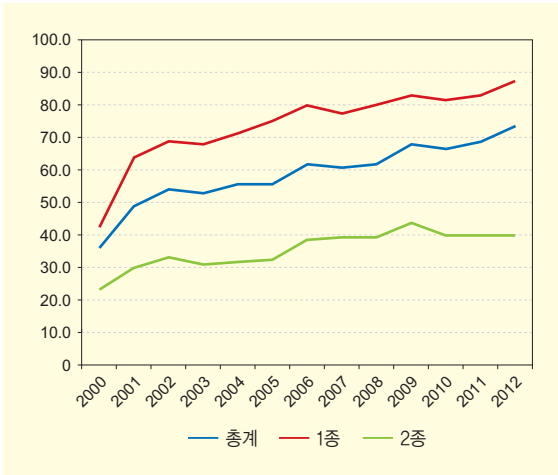


나. 입내원일수와 1인당 입내원일수

진료건수 외에 의료이용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는 의료급여 환자의 입내원일수이다. 입내원일수 또한 진료건수와 유사하게 2000년 이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이 빠진 2009년 이후에도 증가추세에 있다. 입내원일수의 2000~2012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진료건수 증가율 14.5%보다는 완만한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입내원일수는 외래보다는 입원의 경우 증가율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감소추세에 접어든 2000년대 이후도 입내원일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건수와 더불어 입내원일수도 증가하는 등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당 입내원일수는 200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입원의 입내원일수 증가 폭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2000~2012년간 1인당 입내원일수는 연평균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4] 의료급여 종별 1인당 입내원일수 추이

(단위: 일/명)



“
진료실 인원의 최근 증가 추세는
1종 대상자의 입원이 자기부담금의
부재로 인해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적으로 높으며, 2종 입원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1종 입원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진료실 인원의 최근 증가 추세는 1종 대상자의 입원이 자기부담금의 부재로 인해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 진료실 인원

의료급여 진료실 인원은 2012년 약 168만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151만명과 비교하여 약 1.1배 정도이다. 진료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의료급여 진료실 인원은 2004년 차상위 계층이 의료급여에 포함되면서 진료실 인원이 늘어나다가 2008년 다시 차상위 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진료실 인원의 2009년 이후 감소는 대체로 2종 대상자의 진료실 인원 감소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1종 대상자의 진료실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진료실 인원 중 1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약 56%에서 2012년 71%로 급증했다.

2009년 이후 외래나 약국의 진료실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입원 인원은 증가하였다. 즉 입원 진료실 인원의 증가가 전반적인 진료실 인원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동 기간 동안 외래보다는 입원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기부담금이 없는 1종 입원의 증가율이 상대

VI. 진료건수당 의료급여 진료비 현황 및 추이

진료건수당 연간 진료비는 2001년 약 7만원에서 2012년 6.7만원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감소는 입원보다는 외래에서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경증환자의 의료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연간 입내원일당 진료비는 2001년 약 3만원에서 2012년 약 5만원으로 5.62% 증가하여, 의료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내원일당 진료비는 1종이 2종보다, 입원이 외래보다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볼 때, 2012년의 경우 진료건수는 의원이 총진료건수의 38%, 약국 35%로 의원과 약국의 진료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총진료비는 약국이 총진료비의 21%, 종합병원이 총진료비의 20%, 요양병원이 18%, 의원이 15%, 상급 종합병원이 11%, 병원이 10%로 기관 유형별로는 약국의 총진료비와 종합병원의 총진료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당 진료비는 2012년 요양병원이 약 76만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이 17만원, 상급 종합병원이 14만원, 병원이 12만원으로 나

타나고 있다. 진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약국과 의원의 경우, 진료건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건당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의원의 건당 진료비는 2.3만원, 약국의 건당 약제비는 3.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VII. 결론: 의료급여 지출효율화 방안

최근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입원진료비의 증가와 약제비에 있고 특히 1종의 입원진료비 증가폭이 큰 것을 보면, 1종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전무한 것이 입원진료비의 높은 증가율의 원인

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입내원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의 비중이 상당하다든지 하는 문제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과잉 의료수요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 측 요인과 더불어 공급 측에서도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의 문제는 결국 본인부담금의 문제와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결국 의료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국내 외 선행연구들에서 분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가격탄력성 추정치는 입원, 외래 등 의료이용의 성격이나 본인부담률의 수준, 소득수준,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의 성격, 환자의 중증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고, 방법


〈표 4〉 의료급여 진료건당 연간 진료비

(단위: 만원/건, %)

	전체											
	입원			외래			약국					
	계	1종	2종	계	1종	2종	계	1종	2종	계	1종	2종
2001	7.1	8.4	4.7	97.9	97.9	97.4	5.1	5.6	4.0	2.9	3.3	2.3
2002	7.2	8.4	4.5	96.5	96.9	94.0	4.8	5.4	3.7	3.2	3.5	2.5
2003	7.6	8.9	4.7	97.8	98.3	95.0	4.8	5.3	3.6	3.5	3.8	2.7
2004	8.2	9.5	4.9	101.6	102.3	97.1	4.9	5.4	3.6	3.9	4.3	2.9
2005	6.7	7.8	4.1	105.6	106.2	102.0	5.1	5.8	3.6	2.5	2.7	2.0
2006	6.9	8.3	4.3	110.1	110.8	106.3	5.2	6.1	3.6	2.7	3.0	2.2
2007	6.4	7.6	4.0	110.1	110.6	107.1	3.9	4.4	2.7	3.0	3.4	2.4
2008	5.7	6.7	3.7	109.7	110.5	108.0	2.9	3.3	2.1	3.3	3.7	2.5
2009	6.1	7.1	3.6	121.3	122.4	115.7	3.0	3.3	2.2	3.5	3.9	2.5
2010	6.6	7.7	3.7	126.9	127.8	119.0	3.1	3.5	2.3	3.7	4.1	2.6
2011	6.9	7.9	3.7	127.5	128.6	116.6	3.3	3.6	2.3	3.8	4.2	2.6
2012	6.7	7.5	3.5	120.7	122.3	103.2	3.0	3.3	2.2	3.6	3.9	2.4
연평균 증가율	-0.59	-0.98	-2.79	1.93	2.04	0.53	-4.50	-4.80	-5.25	1.81	1.67	0.1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각 연도.

론과 대상범위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추정치가 제시되고 있어, 우리나라 의료급여 대상자의 현행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분석 결과만을 놓고보면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특히 입원이나 약제비에 대한 가격탄력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본인부담금 강화가 극적인 의료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다 보니 본인부담금의 강화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합리적 본인부담금 강화는 저소득층 의료보조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현행의 1종입원이나 약제비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의 개선으로 의료급여 서비스의 과용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개선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본인부담금의 강화는 수요자 측면의 해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본인부담금 강화와 같은 수요자 측면의 해법과 수가구조 등과 같은 공급자 측면의 개선, 관리운영 체계의 개편이 함께 병행된다면 의료급여의 과다 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의료급여 통계연보』, 각 연도.
 유원섭, 「최근 의료급여제도 변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복지동향』, 2008년 10월호, 2008, pp. 53~63.
 최지숙·조착인·김세라·최용준, 「의료급여 1종 외래 본인부담 대상자의 의료수요의 변화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2010, pp. 91~114.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4-10

요약

- 미국 정부는 2014년 10월 14일 해외자산 자진신고제(OVDP) 등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공표하였으며 이는 해외자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임
 - 개정 대상은 해외자산 자진신고제(OVDP)와 ‘간소화된 해외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임
 -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절차’의 개선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금을 종전보다 크게 감면받거나 면제를 받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됨
- 영국은 2014년 9월 29일 도박에 대한 일부 과세 규정을 개정하여 공표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개정 대상 도박세는 General Betting Duty (GBD), Pool Betting Duty(PBD), Remote Gaming Duty(RGD)임
 - 개정으로 인해 종전의 규정과 과세 대상의 관할이 도박용역의 공급지에서 소비자의 소비지로 변경됨
- 터키 정부는 2014년 9월 11일 미납세금 납부에 대한 분납법안을 도입함
- 동 법안은 미납세금 납부에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법인 납세자를 위한 것임
- 분납기간은 6개월에서 3년 사이로 납세자가 정해서 신청이 가능함
- 중국 과세관청은 2014년 8월 25일 각 지방과세관청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비공개 지침 207을 송부하였으며, 9월 5일 금융기관의 채권매매에 대한 영업세 과세방법을 명확히하는 공고 제50호를 공개함
 - 지침에서 과세관청은 각 지방과세관청에 매월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9일 이전에 연간조사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음
 - 공고에서 금융기관은 채권매매 시 매각가액에서 매입금액과 보유기간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영업세대상 수입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인도 과세관청은 2014년 9월 2일 세무조사 표본 선정에 대한 수정된 지침을 공개함
 - 이 지침은 2014-15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하며, 이전 지침을 대체함
 - 지침에서는 이전가격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이전과세 연도에 법의 해석문제나 사실관계로 인한 이전가격 조정금액이 1억INR 이상인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싱가포르 과세관청은 2014년 9월 12일 적격 법 적비용 또는 규제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지침을 공개함
 - 지침에서는 건전한 지배구조와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위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격 법적비용 또는 규제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허용함

-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10월 13일자로 EU 회원국의 조세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회원국들이 최근에 추진한 조세개혁 관련 주요 정책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구축 및 세원 확대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있음

1. 미국-해외자산 자진신고제(OVDP) 등에 대한 지침 개정¹⁾

- 미국 정부는 2014년 6월에 해외자산 자진신고제(OVDP),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10월 14일에 개정된 지침을 확정 공표함
 - 미국 정부는 해외자산 자진신고제(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를 2009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이번 지침 개정은 2012년의 지침을 개정한 것
- OVDP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에 따르는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신고와 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범죄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거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있는 납세자를 위해서 고안된 것임

-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미준수 시 민사적으로는 단순 실수와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하며 형사적으로는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음
 - 고의성 있는 미신고는 매년 잔액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미신고 시 예금잔액의 전부를 넘는 150%(=50%×3년)가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도 있음

〈표 1〉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미준수 시 민사상 벌금

민사상 벌금 부과유형	벌금액
과실, 주의태만에 의한 미신고	최고 500달러
상습적인 주의태만에 의한 미신고	최고 5만달러
2004.10.23. 이전의 고의성 있는 미신고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 (최고 10만달러까지만)과 2만 5000달러 중 큰 금액
2004.10.23. 이후의 고의성 있는 미신고	10만달러와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의 50% 중 큰 금액

- OVDP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을 고의적으로 미준수했던 사람들에게 해외자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범죄자로서 형사상 소추를 면제해주는 제도임
 - 벌금은 해외금융자산의 잔액이 가장 많은 과세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당시의 잔액은 벌금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님
- 그러나 OVDP는 납세자가 자신이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은 해외금융자산액의 27.5%로 납부해야 함
 - 해외금융자산액의 27.5%로 납부하는 벌금의 수

1)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4-10-16_us_1.html&WT.z_nav=Pagination&colid=4913

준은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미준수 시 사후 적발로 인한 벌금보다는 경감된 것임

- 그리고 OVDP의 문제점일 수 있는 고의성이 없는 미신고 납세자들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마련해 운영해 왔음
 -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이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하였음
- 금번 개정은 해외자산 자진신고제(OVDP)와 함께 행정절차인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개정하여 해외자산 및 금융계좌에 대한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개정 전보다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지님
- 해외자산 자진신고제(OVDP)의 개정사항은 기존 제도보다 납세자에게 벌금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 형사상 소추 면제의 기능은 유지하되 정보 제공 수준 향상 및 벌금 인상을 통해 고의적인 해외자산 미신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높인 것임
 -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절차’의 적용 범위 확대로 미신고에 고의성이 없는 선량한 납세자들은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벌금을 기존보다 감면받고, 그렇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기타 절차가 강화하여 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임
- 해외자산 자진신고제(OVDP)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가 해외자산 자진신고제(OVDP)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으려면 종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하게 함

-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절차’의 적용대상에 고의성이 없는 납세자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개정으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된 고의성이 없는 납세자들을 위한 벌금 경감조항 삭제
 - 해당 조항은 OVDP 적용 대상 중 고의성이 없는 납세자 중 제도에서 정해 놓은 자격을 충족 시 벌금을 해외자산잔액의 5%로 경감시켜주는 제도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
- 납세자들에게 모든 해외계좌 현황과 벌과금 납부를 OVDP 적용 시에 요구
- 납세자들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서면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가능
- 다음의 경우, 역외노익에 대한 벌금을 미신고 해외자산의 과세연도 중 최고잔액의 27.5%에서 50%로 인상
 - 납세자의 OVDP 사전신고요청이 제출되기 전에 납세자가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 또는 납세자의 해외재산 분산배치를 주도하거나 도움을 준 기관이 IRS 또는 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한편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절차’는 신고자의 신고를 더욱 간편하게 하고 벌금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OVDP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각각의 제도가 실효성이 있게 개정됨
- 개정된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는 벌과금을 대폭 완화시켜 주거나 면제하는 혜택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제도보다 자진신고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2년에 발표된 기존의 '간소화된 신고절차'는 해외계좌 등을 신고하지 않은 비거주자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이용할 수 있었음
 - 2009년 이후 해외에 거주해야 함
 -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야 함
 - 과거 3년간 매년 세액이 1,500달러 미만이어야 함
- 위와 같은 조건 등을 충족해야만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매우 적었음
- 2014년에 확장 적용되는 '간소화된 신고절차'는 미국 밖에 살고 있는 더 많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납세자들에게 대해서도 적용될 것임

■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의 적용 자격 완화 및 제도 간소화에 관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²⁾

- 납세자의 미납세금이 1,500달러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 삭제
 - 미신고에 관련한 '위험성'에 대한 질문지 요청 조항 삭제
-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의 적용을 위한 요구 사항 및 벌금 완화에 관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에게 이미 지나간 신고 대상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못했던 것이 고의가 아닌 것이었다는 것을 증

명하는 것을 요구

-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최근 3년 중 해외 거주 일수가 330일 이상 된 해가 1년 이상이라면 벌금이 면제됨
 -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탈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과거에 IRS에 세금 보고를 했는지, 해외자산을 보고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됨
- 미국 내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탈세 의도가 없다면 벌금이 미보고자산의 5%로 제한됨
 -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탈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과거에 세금신고를 했던 기록이 있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2. 영국-도박산업에 대한 일부 과세규정 개정안 공표³⁾

- 영국 정부는 2014년 9월 29일에 General Betting Duty(GBD), Pool Betting Duty(PBD), Remote Gaming Duty(RGD)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표하였으며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정사항은 일반 도박장이나 원격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과세 대상의 관할이 도박용역의 공급지에서 소비자의 소비지로 변경된 것임
 - 과세 대상은 영국 밖에서 영국인에게 도박을 제공하는 원격 도박업자와 영국 내에서 도박장을 개설하

2) <http://www.irs.gov/uac/Newsroom/IRS-Makes-Changes-to-Offshore-Programs-Revisions-Ease-Burden-and-Help-More-Taxpayers-Come-into-Compliance>
 3) <https://www.gov.uk/gambling-tax-reform-new-rules-from-1-december-2014>

여 사업을 하는 도박업자들이 대상임
 - 단, 사업장을 가지고 도박업을 하는 카지노나 빙고장은 새로운 원격 도박을 신설하지 않는 한 새로 바뀌는 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님

- 금번 개정으로 인해 도박용역의 공급지 과세가 아니라 소비자 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해외 어느 곳에서 원격으로 도박용역을 공급할지라도, 영국 내의 소비자가 그 용역을 소비하면 그 이익에 대해서 도박세가 과세 가능함
 - 또한 영국 내에서 원격 도박을 공급할지라도 그 소비자가 영국 밖에 있고 영국인이 아니면 도박세를 과세하지 않음

- 영국 국세청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3일에 원격 도박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설할 것임⁴⁾
 - 단, 11월 3일 이전에도 등록에 필요한 절차는 시작할 수 있음
 - 미등록 시 SCHEDULE 41 to the Finance Act 2008 (Penalties: failure to notify and certain VAT and excise wrongdoing)에 의해서 벌금이 부과됨

- 각 도박에 대한 과세기준은 아래의 표들에 정리되어 있음⁵⁾

〈표 2〉 General Betting Duty(GBD) 과세 개요

General Betting Duty(GBD)	
과세 대상	마권업자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함
과세 조건	- 경마 또는 경견에 대한 일반적인 베팅 또는 도박 베팅, 그 내기가 도박장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고객의 주거지는 상관없음 - 스프레드 베팅(Spread betting), 어떤 지수의 움직임의 결과에 내기를 거는 방식으로 도박업자가 영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영국인이 하는 경마 또는 경견에 대한 GBD 또는 PBD (이 경우 도박장이 영국에 있지 않아도 되고 마권업자의 위치도 상관없음)
세율	도박의 형태에 따라 3~15%로 과세함

〈표 3〉 Remote Gaming Duty(RGD) 과세 개요

Pool Betting Duty(PBD)	
과세 대상	고정 승률이 아니고 경마 또는 경견이 아닌 도박을 업으로 하는 도박업자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됨
과세 조건	- 고객은 영국에 소재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해야 하며, 고객의 주거지는 상관없음 - 고객이 영국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부과됨 - 도박은 고정 승률이 아니어야 하며 경마나 경견은 GBD에서 과세되므로 제외함
세율	순수 PBD의 금액에 15%의 세율로 과세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3. 터키-미납세금 납부에 대한 분납법안을 도입⁶⁾

- 터키 정부는 2014년 9월 11일 재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납중인 개인과 법인 납세자를 위하여 6개월에서 3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법 Law 6552 (the omnibus law)를 관보에 공포함

4)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58740/gtr-info-note2.pdf

5) <https://www.gov.uk/business-tax/gambling-duties>

6)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1750929.pdf/\\$file/T1750929.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1750929.pdf/$file/T1750929.pdf)



- 동 법은 내국세, 관세, 사회보장료를 대상으로 하며 2014년 4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것들을 대상으로 함
 - 분납 대상인 내국세, 관세, 사회보장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납 가산세와 세무신고 절차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50%의 감면혜택을 부가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 미납세액에 대한 분납 청구는 관할 관청에 11월 30까지 청구해야 하며 첫 번째 분할 납부는 사면 수단이 발효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분할 납부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 계수를 적용하는데, 본세에 계수를 곱한 금액이 분납해서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이 됨
 - 6개월 분할: 1.05, 9개월 분할: 10.7, 12개월 분할: 1.118개월 분할: 1.15
- 조세소송을 하고 있는 납세자는 현재 소송하고 있는 사건을 모두 철회하고 쟁점 대상인 과세에 대하여 정부의 과세에 대해서 인정할 때까지는 당해 사면 대상자가 아님
 - 또한 납세자는 재조정된 세금 분납이 성립된 기간 동안 새로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도 이행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4. 중국

가. 전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무조사 지침 전달⁷⁾

- 중국 과세관청(국가세무총국)은 2014년 8월 25일 각 지방과세관청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비공개지침 207을 송부함
 - 지침에서는 각 지방과세관청에게 매월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2014년 1월 9일 이전에 연간 조사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음
 - 이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무조사를 선언한 2014년 7월 8일의 비공개 지침 317에 따른 후속조치임
 - 지침 317에서는 선언되었으나 지급되지 않는 배당,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배당, 이자형태로 지급된 배당, 과세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된 잉여금 등을 주요 세무조사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음

나. 채권매매에 대한 과세지침 공개⁸⁾

- 중국 과세관청은 2014년 9월 5일⁹⁾ 금융기관의 채권 매매에 대한 영업세 과세방법을 명확히하는 공고 제 50호를 공개함
 - 지침에서는 금융기관은 채권매매 시 매각가액에서 매입금액과 보유기간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수입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이전에는 채권매각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

7) "China(People's Rep.)—Tax examination of dividends paid to non-residents(15 Sep. 2014)," News IBFD.

8) 国家税务总局, 「关于债券买卖业务营业税问题的公告」, 2014年 8月 28日.

9) 실제 공고일자는 9월 5일이나 공고 내용상의 일자 8월 28일

였음¹⁰⁾

-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이라도 확정되지 않은 세무상 문제가 존재할 경우에도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훈 회계사)

5. 인도-세무조사 표본선정에 대한 지침 공개¹¹⁾

- 인도 과세관청(Central Board of Direct Taxes)은 2014년 9월 2일 세무조사 표본선정(manual selection)에 대한 수정된 지침을 공개함
 - 이 지침은 2014-15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이전 지침(No. 10/2013)을 대체함
 - 필요할 경우 후속적으로 보충지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침에서는 이전가격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보다 완화하였음
 - 이전과세기간에 법의 해석문제나 사실관계로 인한 이전가격 경정금액이 1억INR이상인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이전 지침에서는 국제거래가 15천만INR 이상인 경우 또는 이전과세연도에 이전가격 경정금액이 1억INR 이상이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전자의 기준을 삭제하고 후자의 기준을 수정함
- 일반적인 내국세 등의 세무조사 표본선정에 대해서는 이전과세연도에 법의 해석문제나 사실관계로 인한 경

정금액이 1백만INR인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지침과 유의적인 변경이 없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훈 회계사)

6. 싱가포르 - 법적비용 또는 규제비용의 공제 지침 공개¹²⁾

- 싱가포르 과세관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은 2014년 9월 12일 적격 법적비용 또는 규제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공개하였으며 2014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 기존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법 또는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법적비용 또는 규제비용은 소득세법상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전적이고 배타적인(wholly and exclusively) 비용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공제받지 못함
 - 다만 감사나 세무신고 비용 등은 과세관청의 재량에 따라 공제받고 있었음
 - 따라서 지침에서는 건전한 지배구조와 자발적인 납세협력력을 위해 적격 법적비용 또는 규제비용의 공제를 명문상으로 도입함
- 적격 법적비용 또는 규제비용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싱가포르 또는 여타 국가에서 성문법 준수를 위한 지출
 - 싱가포르 또는 여타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관청 등

10) Tax Notes Int'l, Sep 15, 2014, p. 910.

11)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Instruction No. 6/2014-Compulsory Manual selection of cases for scrutiny during the financial Year 2014 · 15-regd, 2nd day of September, 2014.

12)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e-Tax Guide: Deduction for Statutory and Regulatory Expenses," 12 Sep 2014.



에서 공고된 규정, 규칙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지출

- 제정될 법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지출
- 성문법 또는 규정 등에 대한 불이행을 방지 또는 적발하기 위한 지출
- 성문법 또는 규정 등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지출

- 반면 자본화되는 성격의 지출, 위반에 따른 벌금, 과태료, 기소되어 지출하는 변호 비용, 법원 또는 전심 절차 제소 시에 지출하는 비용은 적격 비용으로 보지 않아 공제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7. EU 집행위원회의 조세제도 개혁 관련 보고서 발표¹³⁾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4년 10월 13일자로 EU 회원국들의 조세개혁에 대한 보고서(Tax reforms in EU Member States 2014)¹⁴⁾를 발표함
 - EU 회원국들이 조세제도의 유효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세개혁은 재정 안정성, 경제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보고서는 회원 국가들이 최근에 추진한 조세개혁의 중요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 사항들을 설명함

- 본 보고서는 주로 조세제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각

국가들의 조세정책적 문제 및 특정 조세정책에 대한 세부 논의 등을 다루고 있음

- 최근에 EU 회원국들이 수행한 주요 조세 개혁 방안들에 대한 개관
- 각 국가들이 직면한 주요 조세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
 - 공공재정 확충 및 통합과 관련하여 조세제도의 역할에 대한 검토
 - 조세 구조를 경제성장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근로자 등에 대한 조세 부담 경감 방안 논의
 - 근로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덜한 다른 세목(부가가치세, 부동산세, 환경세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 제시
- 주요 세원(tax base)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
 - 주택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및 세원확충, 부채 사용으로 인한 법인세 영향, 직접세의 공제·감면 범위, 부가가치세 세원 확대 가능성 등
- 환경세 등 특정 조세정책적 사안에 대한 논의
 - 화석연료 부담금에 대한 과세구조 조정, 운송수단에 대한 조세구조 개편 및 환경보호에 어긋나는 보조금 정책 감축 등
 - 기타 납세순응(tax compliance) 강화 및 소득불평등 등의 사안에 대한 검토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¹³⁾ www.ibfd.org 및 http://ec.europa.eu 참조

¹⁴⁾ "Tax reforms in EU Member States 2014—Tax policy challenges for economic growth and fiscal sustainability," EUROPEAN ECONOMY 6|2014, EUROPEAN COMMITTEE, October, 2014.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통계청, ESA 2010에 따른 GDP 변동 발표(2014. 10.17.)¹⁾
 - (EU 및 유로존) ESA 2010 및 통계 개선을 반영한 EU 국가의 1997~2013년 GDP 수준은 기존(ESA 95) 통계 대비 평균 3.4% 증가
 - (성장률) 다만 이러한 변화가 EU 및 유로지역의 1997~2013년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0.1%p)
 - (변화 요인) 2010년 기준, 방법론 변경*²⁾으로 인해 유로지역 +2.2%, EU 28개국 +2.3%, 통계 개선³⁾으로 인해 유로지역 +1.3%, EU 28개국 +1.4% GDP 수준이 변화함
 - * 기존 방법론 대비 2010년 EU의 GDP는 R&D 지출의 투자 계상으로 1.9% 증가, 무기 시스템 지출의 투자 계상으로 0.2% 증가함
 - (국가별 영향) ESA 2010 및 통계 개선으로 인한 GDP 변화가 큰 국가는 키프로스(+9.5%), 네덜란드(7.6%)이며 룩셈부르크(+0.2%), 라트비아(-0.1%)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거나 마이너스로 나타남(2010년 기준)
 - (방법론 변경) 방법론 변경으로 인한 영향이 큰 국가는 스웨덴(+4.4%), 핀란드(+4.2%)이며, 작은 국가는 불가리아(+0.4%), 크로아티아 · 몰타

(+0.5%) 등임(2010년 기준)
 - (통계 개선) 통계 개선의 영향은 키프로스(+8.4%), 네덜란드(5.9%)는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룩셈부르크(-1.4%), 라트비아(-1.2%), 오스트리아(-0.6%), 덴마크 · 에스토니아(-0.2%)는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을 보임(2010년 기준)

〈표 1〉 방법론 변화 및 통계 개선이
2010년 GDP 수준에 미친 영향

(단위: GDP 대비 %)

	GDP 수준 변동에 영향	Methodological changes (ESA 2010)		Statistical improvements
	Total	Total	of which R&D	Total
EA18	3.5	2.2	1.9	1.3
EU28	3.7	2.3	1.9	1.4
벨 기 예	2.8	2.5	2.4	0.3
불 가 리 아	2.0	0.4	0.3	1.6
체 코	4.3	3.1	1.2	1.2
덴 마 크	2.5	2.7	2.6	-0.2
독 일	3.3	2.7	2.3	0.6
에스토니아	1.2	1.4	0.9	-0.2
아 일 랜 드	4.2	3.6	3.5	0.6
그 리 스	1.8	1.3	0.6	0.6
스 페 인	3.3	1.6	1.2	1.7
프 랑 스	3.2	2.4	2.2	0.8
크로아티아	1.3	0.5	0.4	0.8
이 탈 리 아	3.4	1.5	1.3	1.9
키 프 로 스	9.5	1.1	0.2	8.4
라 트 비 아	-0.1	1.1	0.5	-1.2

1)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2-17102014-BP/EN/2-17102014-BP-EN.PDF

2) ESA(European System of Accounts) 2010은 생산 과정에서의 ICT 역할 확대, 무형자산, 지적재산 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중요성, 경제 시스템의 글로벌화 등 기존 방법론(ESA 1995) 도입 이후의 변화를 반영함. 예를 들어 R&D 지출과 무기 시스템 관련 지출 등이 투자로 계상됨

3) 많은 국가들에서 ESA 2010 도입시 자료 원천 업데이트 등 추가적인 통계 개선을 반영함



〈표 1〉의 계속

(단위: GDP 대비 %)

	GDP 수준 변동에 영향	Methodological changes (ESA 2010)		Statistical improvements
	Total	Total	of which R&D	Total
리투아니아	1.1	0.8	0.4	0.2
룩셈부르크	0.2	1.6	0.5	-1.4
헝가리	1.6	1.6	1.2	0.0
몰타	2.2	0.5	0.5	1.7
네덜란드	7.6	1.7	1.8	5.9
오스트리아	3.2	3.7	2.3	-0.6
폴란드	1.5	1.2	0.5	0.2
포르투갈	4.1	2.1	1.3	2.0
루마니아	1.9	0.6	0.5	1.3
슬로베니아	2.1	2.0	1.9	0.1
슬로바키아	1.9	1.8	0.6	0.1
핀란드	4.7	4.2	4.0	0.5
스웨덴	5.5	1.1	4.0	1.1
영국	4.9	2.3	1.6	2.6

주: 1. Statistical improvements include the integration of new or updated sources in the national accounts data (for instance the results of the last population census), but also better measurement aiming at reaching exhaustiveness of GNI in line with expressed reservations on the methodologies used so far.

2. The euro area (EA18) includes Belgium, Germany, Estonia, Ireland, Greece, Spain, France, Italy, Cyprus, Latvia, Luxembourg, Malta, the Netherlands, Austria, Portugal, Slovenia, Slovakia and Finland.

The European Union (EU28) includes Belgium, Bulgaria, the Czech Republic, Denmark, Germany, Estonia, Ireland, Greece, Spain, France, Croatia, Italy, Cyprus, Latvia, Lithuania, Luxembourg, Hungary, Malta, the Netherlands, Austria, Poland, Portugal, Romania, Slovenia, Slovakia, Finland,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3. Denmark: 2008 data, United States: 2012 data.

자료: EU 통계청 보도자료(2014.10.17)

■ EU 통계청, ESA 2010 및 기타 통계적 조정을 반영해 수정한 2013년 재정수지 및 정부채무 통계 발표 (2014.10.21.)⁴⁾

〈표 2〉 유로존(EA18) 및 EU 28개국의 2013년 재정수지 및 정부채무(ESA 2010 기준)

(단위: 백만유로)

	2010	2011	2012	2013
EA18				
재정적자(-)/흑자(+)	-583,136	-402,045	-355,183	-284,728
(% of GDP)	-6.1	-4.1	-3.6	-2.9
정부지출(% of GDP)	50.4	49.0	49.5	49.4
정부수입(% of GDP)	44.3	44.9	45.9	46.5
정부채무	7,963,305	8,382,213	8,745,689	9,007,692
(% of GDP)	83.7	85.8	89.0	90.9
EU28				
재정적자(-)/흑자(+)	-817,808	-591,471	-569,139	-436,721
(% of GDP)	-6.4	-4.5	-4.2	-3.2
정부지출(% of GDP)	49.9	48.5	48.9	48.5
정부수입(% of GDP)	43.5	44.0	44.6	45.3
정부채무	10,004,287	10,645,618	11,218,600	11,550,457
(% of GDP)	78.2	80.8	83.5	85.4

자료: EU 통계청 보도자료(2014.10.21)

- (재정수지) 2013년 유로존 및 EU 28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각각 2.9%, 3.2%로 전년 대비 감소⁵⁾ - 2013년 룩셈부르크(+0.6%), 독일(+0.1%)은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10개 국가*에서 GDP 대비 3% 수준을 초과하는 재정적자를 기록
* 슬로베니아(-14.6%), 그리스(-12.2%), 스페인(-6.8%), 영

4)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2-21102014-AP/EN/2-21102014-AP-EN.PDF

5) 기존 통계 기준으로 발표(2014년 4월)된 2013년 유로존 및 EU 28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각각 3.0%, 3.3%임(자세한 내용은 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 1호 참고)

- 국(-5.8%), 아일랜드(-5.7%), 크로아티아(-5.2%), 키프로스·포르투갈(-4.9%), 프랑스(-4.1%), 폴란드(-4.0%)
- (정부채무) 2013년 말 기준, 유로존 및 EU 28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각각 90.9%, 85.4%로 전년 대비 증가⁶⁾
 - 에스토니아(10.1%), 불가리아(18.3%), 룩셈부르크(23.6%), 루마니아(37.9%), 라트비아(38.2%), 스웨덴(38.6%) 등은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낮은 편이나 16개 국가*는 정부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함
 - * 그리스(174.9%), 포르투갈(128.0%), 이탈리아(127.9%), 아일랜드(123.3%), 벨기에(104.5%), 키프로스(102.2%) 등
- (변동 요인) 방법론(ESA 2010 도입)⁷⁾ 변경 및 기타

통계적 조정으로 인해 2013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와 GDP 수준이 변화되어 기존(2014.4) 발표된 수치 대비 아래와 같은 변동이 발생

- EU 통계청, 2014년 2분기 정부채무 발표(2014.10.23.)^{8) 9)}
 - 2014년 2분기 말, 유로존(EA18)과 EU 28개국의 GDP 대비 정부채무는 각각 92.7%와 87.0%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0.8%p, 1.0%p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0%p, 1.9%p 증가
 - 전분기와 비교해 19개 국가는 GDP 대비 채무비율이 증가했으며, 6개 국가는 감소, 1개 국가는

〈표 3〉 2014년 4월 발표(ESA 95) 대비 재정수지 및 정부채무 비율 변동

(단위: % of GDP)

	재정수지 ¹⁾				정부채무 ²⁾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EU28								
재정수지·채무 비율 변동분	0.1	-0.1	-0.3	0.1	-1.7	-1.6	-1.8	-1.8
- 재정수지·채무 변화로 인한 변동	-0.1	-0.2	-0.4	0.0	1.1	1.3	1.3	1.2
- GDP 변화로 인한 변동	0.2	0.2	0.1	0.1	-2.8	-2.9	-3.0	-3.0
EA18								
변동분	0.1	0.0	0.1	0.2	-1.8	-1.6	-1.7	-1.6
- 재정수지·채무 변화로 인한 변동	-0.1	-0.1	0.0	0.1	1.1	1.3	1.3	1.2
- GDP 변화로 인한 변동	0.2	0.1	0.1	0.1	-2.9	-2.9	-2.9	-2.8

주: 1) Revisions to deficit/surplus ratios: a positive sign means an improved government balance relative to GDP, and a negative sign a worsening.

2) Revisions to debt ratios: a positive sign means a higher government debt relative to GDP, and a negative sign a lower debt.

자료: EU 통계청 보도자료(2014.10.21)

6) 기존 통계 기준으로 발표(2014년 4월)된 2013년 유로존 및 EU 28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각각 92.6%, 87.1%(자세한 내용은 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 1호 참고)

7) 특히 ESA 2010 도입시, 일반정부 범위 기준 변화, 연금 기금 이전 관련 정부에 대한 일시금 기록 변화, 스왑 및 선도금리계약(forward rate agreement) 관련 손익에 대한 조정 철폐 등이 재정수지 및 채무 수준에 영향을 미침

8)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2-23102014-AP/EN/2-23102014-AP-EN.PDF

9) ESA 2010을 적용한 분기별 정부채무 통계로는 첫 발표임



- 변동이 없음
- 2014년 1분기 대비, GDP 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33.8%), 포르투갈(129.4%), 아일랜드(116.7%)이며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0.5%), 룩셈부르크(23.1%)임
- 전년 동기 대비, GDP 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많

이 증가한 국가는 슬로베니아(+16.9%p), 크로아티아(+8.5%p), 이탈리아(+5.5%p)이며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아일랜드(-8.5%p), 독일(-2.7%p), 포르투갈(-2.1%p)임

〈표 4〉 유로존(EA18) 및 EU 28개국의 2014년 2분기 정기채무

(단위: 백만유로, % of GDP)

		2013 Q2	2014 Q1	2014 Q2
EA18				
Government debt		9,026,128	9,150,197	9,261,285
	(% of GDP)	91.7	91.9	92.7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258,528	265,204	262,230
	(% of GDP)	2.9	2.9	2.8
Debt securities		7,085,520	7,223,779	7,344,833
	(% of GDP)	78.5	78.9	79.3
Loans		1,682,080	1,661,212	1,654,224
	(% of GDP)	18.6	18.2	17.9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221,020	230,990	238,540
	(% of GDP)	2.2	2.3	2.4
EU28				
Government debt		11,467,409	11,712,764	11,930,266
	(% of GDP)	85.1	86.0	87.0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420,898	432,006	443,244
	(% of GDP)	3.7	3.7	3.7
Debt securities		9,191,606	9,443,450	9,655,265
	(% of GDP)	80.2	80.6	80.9
Loans		1,854,905	1,837,306	1,831,760
	(% of GDP)	16.2	15.7	15.4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225,434	236,372	244,067
	(% of GDP)	1.7	1.7	1.8

자료: EU 통계청 보도자료(2014.10.23)

〈표 5〉 EU 국가별 2014년 2분기 정부채무

	% of GDP			변동(%p)	
	2013 Q2	2014 Q1	2014 Q2	2013 Q2	2014 Q1
벨기에	-	-	-	-	-
불가리아	-	-	-	-	-
체코	45.9	45.2	44.2	-1.7	-0.9
덴마크	46.3	45.0	45.3	-1.0	0.3
독일	78.1	75.6	75.4	-2.7	-0.2
에스토니아	9.9	10.5	10.5	0.6	0.0
아일랜드	125.2	121.9	116.7	-8.5	-5.2
그리스	-	-	-	-	-
스페인	-	-	-	-	-
프랑스	92.7	94.1	95.2	2.5	1.1
크로아티아	68.5	76.6	77.	8.5	0.4
이탈리아	128.3	130.7	133.8	5.5	3.1
키프로스	-	-	-	-	-
라트비아	39.1	38.7	41.1	2.0	2.4
리투아니아	39.8	-	-	-	-
룩셈부르크	23.1	23.2	23.1	0.0	-0.2
헝가리	-	-	-	-	-
몰타	72.2	72.3	75.0	2.8	2.7
네덜란드	69.0	68.1	69.6	0.5	1.4
오스트리아	82.4	81.3	82.6	0.2	1.3
폴란드	-	-	-	-	-
포르투갈	131.5	131.6	129.4	-2.1	-2.2
루마니아	38.8	39.1	38.5	-0.3	-0.6
슬로베니아	61.3	77.1	78.3	16.9	1.1
슬로바키아	-	-	-	-	-
핀란드	56.5	57.5	58.9	2.4	1.4
스웨덴	38.4	38.2	38.8	0.4	0.6
영국	86.8	87.7	88.4	1.6	0.6

자료: EU 통계청 보도자료(2014.10.23)

■ EU 통계청, 2014년 2분기 계절조정된 재정수지 발표 (2014.10.24.)^{10) 11)}

- 유로존(EA18)과 EU 28개국의 2014년 2분기 GDP 대비 계절조정된 재정수지는 각각 -2.5%와 -3.0%를 기록
 - 전분기 대비 재정수지는 유로존과 EU 28개국 모두 미미한 감소를 보임(-0.1%p 변화)
 - (EA18) 2014년 2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6.6%, 총지출은 49.1%를 기록
 - (EU28) 2014년 2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5.1%, 총지출은 48.2%를 기록

〈표 6〉 유로존(EA18) 및 EU 28개국의 계절조정된 재정수지

(단위: %, GDP 대비 %)

	2013 Q2	2013 Q3	2013 Q4	2014 Q1	2014 Q2
EA18					
재정수지	-3.1	-2.9	-2.5	-2.6	-2.5
총수입	46.5	46.7	45.6	47.6	46.6
총지출	49.6	49.6	48.1	50.1	49.1
EU28					
재정수지	-3.2	-3.4	-3.0	-3.1	-3.0
총수입	45.7	45.4	44.0	46.0	45.1
총지출	48.9	48.7	47.0	49.1	48.2

자료: EU 통계청 보도자료(2014.10.24)

10)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2-24102014-AP/EN/2-24102014-AP-EN.PDF

11) ESA 2010을 적용한 분기별 재정수지 통계로는 첫 발표임



■ EU 정상회의 개최, 2030 기후·에너지정책,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기타 경제 이슈 등에 대해 논의(2014. 10.23~24.)¹²⁾

- 2030 기후 및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 관련 다음 4 가지 목표에 합의
 - (목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수준으로 축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최소 27%까지 확대, 에너지 효율을 27%까지 제고, 상호 연계된 내부 에너지 시장 완성
-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지원을 총 10억유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 성장·고용·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의 신속한 이행 촉구, 은행동맹의 일환인 단일 은행감독기구(2014년 11월 4일 시작할 예정)의 개시를 환영

■ EU 집행위원회, 제출된 국가별로 2015년 예산안 관련 성명 발표(2014.10.28.)¹³⁾

- 카타이넨(Katainen) 부위원장은 각국이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해 일부 국가와의 조율 이후, 심각한 규정의 불이행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힘
 -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제출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예산안이 EU의 재정 목표를 벗어나 해명을 요구했고 양국가는 10월 27일 수정안을 발표
 - 이탈리아는 계획된 감세안에서 33억유로를 축소

하는 등 당초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를 45억유로 추가 감축할 예정

- 프랑스는 이자비용 지출 감축, EU 분담금 전망 대비 감소, 탈세 방지 등을 통해 당초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를 36억유로(GDP 대비 0.2%p) 추가 감축할 예정

■ EU 재무장관회의 개최, 예산 분담금 조정, 탈세 방지 관련 조항, 금융거래세 등에 대해 논의(2014.11.7.)¹⁴⁾

- (예산 수입 조정) GNI 규모 수정에 따라 EU 예산 분담금(contribution) 추가 부담 국가*들의 납부 기한을 연기
 - 이는 회원국의 분담금 조정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액수가 상당하고 납부 기한이 짧은 것을 고려한 결정임
 -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예외적 상황의 경우 이듬해 9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EU 예산 분담금 조정에 대한 규정' 수정안을 건의(2014.11.12.)¹⁵⁾

* 예산 분담금 조정 결과 영국(약 21억유로), 네덜란드(약 6.4억유로), 이탈리아(약 3.4억유로), 그리스(약 0.9억유로) 등 일부 국가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고, 프랑스,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은 분담금이 감소함¹⁶⁾

- (탈세 방지 조항) Parent-Subsidiary Directive¹⁷⁾에 탈세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에 대해 논의

12) European Council: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145397.pdf

13)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4-343_en.htm

Financial Times: <http://www.ft.com/intl/cms/s/0/e8a9eb52-5ec4-11e4-be0b-00144feabdc0.html#axzz3HWNRuS5o>

14) <http://www.consilium.europa.eu/homepage/highlights/preventing-tax-avoidance-in-the-eu-council-discusses-amendment-to-the-parent-subsiidiary-directive?lang=en>

15)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1643_en.htm?locale=en

16) EU 집행위원회는 GNI 추계치로 산정(매년 5월)한 예산 분담금을 매년 가을에 실제 전년도 GNI를 반영해 조정함. 올해는 과거 미해결 이슈들이 정리된 결과 대부분 회원국의 GNI 재산정기간이 2002년(1995년 1개국)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정 규모가 크게 발생함

17)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 이 외에도 금융거래세, EU 통계, 유럽 금융감독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

■ EU 경제 전망¹⁸⁾(2014 가을) 발표(2014.11.4.)¹⁹⁾

- (성장률)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유로존이 0.8%(봄 전망 대비 0.4%p 감소), EU 회원국이 1.3%(봄 전망 대비 0.3%p 감소)로 전망
 - 2015년 GDP 성장률은 유로존 1.1%(봄 전망 대비 0.6%p 감소), EU 회원국 1.5%(봄 전망 대비 0.5%p 감소)로 서서히 상승할 전망
- (물가) 2014년 EU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은 0.6%로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2015년 1.0%, 2016년 1.6%로 예상
- (실업률)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서서히 얻고 있어, 전망 기간 후반부에는 노동시장의 유의미한 개선이

가능할 것

- 2016년 실업률은 유로존 10.8%, EU회원국 9.5%로 전망되나 이는 여전히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임

- (재정수지) 2014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유로존이 -2.6%, EU 회원국이 -3.0%로 재정적자 감소세는 계속될 전망
 - 2014년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유로존이 94.5%, EU 회원국은 88.1%로 전망되며 2015년에 각각 94.8%, 88.3%로 정점을 기록할 전망
 - 2014년과 2015년 재정 기초는 거의 중립(neutral)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 금융 시장의 취약성, 구조 개혁의 불완전한 이행 위험 등으로 인한 성장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우세

〈표 7〉 유로존 및 EU 28개국의 2014년 전망

(단위: %)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¹⁾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벨 기 예	0.3	0.9	0.9	1.1	1.2	0.6	0.9	1.3	8.4	8.5	8.4	8.2	-2.9	-3.0	-2.8	-2.8
독 일	0.1	1.3	1.1	1.8	1.6	0.9	1.2	1.6	5.3	5.1	5.1	4.8	0.1	0.2	0.0	0.2
에 스토니아	1.6	1.9	2.0	2.7	3.2	0.7	1.6	2.2	8.6	7.8	7.1	6.3	-0.5	-0.4	-0.6	-0.5
아 일 랜 드	0.2	4.6	3.6	3.7	0.5	0.4	0.9	1.4	13.1	11.1	9.6	8.5	-5.7	-3.7	-2.9	-3.0
그 리 스	-3.3	0.6	2.9	3.7	-0.9	-1.0	0.3	1.1	27.5	26.8	25.0	22.0	-12.2	-1.6	-0.1	1.3
스 페 인	-1.2	1.2	1.7	2.2	1.5	-0.1	0.5	1.2	26.1	24.8	23.5	22.2	-6.8	-5.6	-4.6	-3.9
프 랑 스	0.3	0.3	0.7	1.5	1.0	0.6	0.7	1.1	10.3	10.4	10.4	10.2	-4.1	-4.4	-4.5	-4.7
이 탈 리 아	-1.9	-0.4	0.6	1.1	1.3	0.2	0.5	2.0	12.2	12.6	12.6	12.4	-2.8	-3.0	-2.7	-2.2
키 프 로 스	-5.4	-2.8	0.4	1.6	0.4	-0.2	0.7	1.2	15.9	16.2	15.8	14.8	-4.9	-3.0	-3.0	-1.4
라 트 비 아	4.2	2.6	2.9	3.6	0.0	0.8	1.8	2.5	11.9	11.0	10.2	9.2	-0.9	-1.1	-1.2	-0.9
리 투 아 니 아	3.3	2.7	3.1	3.4	1.2	0.3	1.3	1.9	11.8	11.2	10.4	9.5	-2.6	-1.2	-1.4	-0.8

18) EU는 매년 3회(2월, 5월, 11월) "Economic Forecasts"를 통해 경제 전망을 발표함

19) EU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eu/forecasts/2014_autumn_forecast_en.htm



〈표 7〉의 계속

(단위: %)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¹⁾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룩셈부르크	2.0	3.0	2.4	2.9	1.7	1.0	2.1	1.9	5.9	6.1	6.2	6.1	0.6	0.2	-0.4	-0.6
몰타	2.5	3.0	2.9	2.7	1.0	0.7	1.5	2.0	6.4	6.1	6.1	6.2	-2.7	-2.5	-2.6	-2.0
네덜란드	-0.7	0.9	1.4	1.7	2.6	0.4	0.8	1.1	6.7	6.9	6.8	6.7	-2.3	-2.5	-2.1	-1.8
오스트리아	0.2	0.7	1.2	1.5	2.1	1.5	1.7	1.8	4.9	5.3	5.4	5.0	-1.5	-2.9	-1.8	-1.1
포르투갈	-1.4	0.9	1.3	1.7	0.4	0.0	0.6	0.9	16.4	14.5	13.6	12.8	-4.9	-4.9	-3.3	-2.8
슬로베니아	-1.0	2.4	1.7	2.5	1.9	0.4	1.0	1.5	10.1	9.8	9.2	8.4	-14.6	-4.4	-2.9	-2.7
슬로바키아	1.4	2.4	2.5	3.3	1.5	-0.1	0.7	1.4	14.2	13.4	12.8	12.1	-2.6	-3.0	-2.6	-2.3
핀란드	-1.2	-0.4	0.6	1.1	2.2	1.2	1.3	1.6	8.2	8.6	8.5	8.3	-2.4	-2.9	-2.6	-2.3
Euro area	-0.5	0.8	1.1	1.7	1.4	0.5	0.8	1.5	11.9	11.6	11.3	10.8	-2.9	-2.6	-2.4	-2.1
불가리아	1.1	1.2	0.6	1.0	0.4	-1.4	0.4	1.0	13.0	12.0	11.4	11.0	-1.2	-3.6	-3.7	-3.8
체코	-0.7	2.5	2.7	2.7	1.4	0.5	1.4	1.8	7.0	6.3	6.2	6.1	-1.3	-1.4	-2.1	-1.7
덴마크	-0.1	0.8	1.7	2.0	0.5	0.4	1.1	1.7	7.0	6.7	6.6	6.4	-0.7	-1.0	-2.3	-2.0
크로아티아	-0.9	-0.7	0.2	1.1	2.3	0.2	0.6	1.1	17.3	17.7	17.7	17.3	-5.2	-5.6	-5.5	-5.6
헝가리	1.5	3.2	2.5	2.0	1.7	0.1	2.5	3.0	10.2	8.0	7.8	7.8	-2.4	-2.9	-2.8	-2.5
폴란드	1.7	3.0	2.8	3.3	0.8	0.2	1.1	1.9	10.3	9.5	9.3	8.8	-4.0	-3.4	-2.9	-2.8
루마니아	3.5	2.0	2.4	2.8	3.2	1.5	2.1	2.7	7.3	7.0	6.9	6.7	-2.2	-2.1	-2.8	-2.5
스웨덴	1.5	2.0	2.4	2.7	0.4	0.2	1.2	1.5	8.0	7.9	7.8	7.6	-1.3	-2.4	-1.8	-1.2
영국	1.7	3.1	2.7	2.5	2.6	1.5	1.6	1.9	7.5	6.2	5.7	5.5	-5.8	-5.4	-4.4	-3.4
EU	0.0	1.3	1.5	2.0	1.5	0.6	1.0	1.6	10.8	10.3	10.0	9.5	-3.2	-3.0	-2.7	-2.3

주: 1)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 %)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4*, 2014

- 유럽중앙은행, 유로존 은행 단일 감독 역할 담당 (2014.11.4.)²⁰⁾
 - 단일 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의 일환으로 11월 4일부터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의 3,600여 개 은행에 대한 감독 업무를 맡게 됨

- 유럽중앙은행은 120여 개 주요 은행그룹에 대한 직접 감독 수행
- 기타 3,500여 개 은행들에 대해서는 감독 기준 설정 및 모니터, 국가별 감독 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해란 연구원)

20) 유럽중앙은행: <https://www.bankingsupervision.europa.eu/press/pr/date/2014/html/sr141104.en.html>

IMF

- IMF 독립평가실, 금융위기 이후 IMF의 활동에 관한 평가보고서 발표 (2014.11.4.)²¹⁾
 - IMF 독립평가실(Independent Evaluation Office)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IMF가 차관제도를 개편하고 비양허성 차관(non-concessional lending)을 증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
 - IMF가 2008~09년 각국에 경기부양책을 권고한 것은 시기적절하고 영향력 있었지만, 2010~11년 주요 선진국이 재정건전화 기조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 것은 시기상조였다고 비판
 - 동시에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권고한 것은 회복을 진작시키는 데에 덜 효과적이었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증가시켰다고 평가
 -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총재는 독립평가실의 평가에 대해 환영하면서, 2008~09년 경기부양책과 확장적 통화정책 권고는 적절했으며 2010~11년 채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에 대해 재정건전화를 요구한 것은 타당했다고 반박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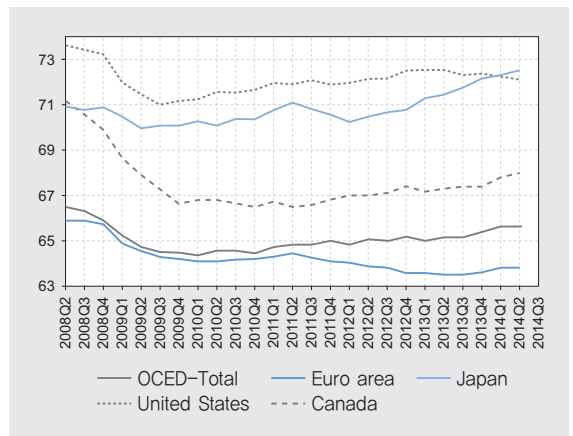
- OECD, 2014년 2분기 고용률 발표(2014.10.14.)²²⁾
 - OECD 전체 국가의 2014년 2분기 고용률(계절조정)은 직전 분기와 동일한 65.6%로 2013년 2분기 대비 0.5%p 높은 수준이지만 2008년 2분기에 비해

0.1%p 낮은 수준

- 국가별 고용률은 미국 68.0%, 일본 72.6%, 영국 72.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로지역의 경우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63.8%를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1분기 국가별 고용률은 미국 66.0%, 일본 70.6%, 영국 68.1%
- 캐나다 72.2%, 멕시코 60.4%, 한국 65.1%로 '14년 1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2014년 2분기 고용률은 직전 분기보다 0.3%p 하락하여 65.1%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0.8%p 높은 수준

[그림 1] OECD 국가의 분기별 고용률

(단위: %)



주: 일본의 2011년 1분기 및 3분기 통계 없음. 계절조정됨
 자료: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연구원)

21) IMF: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4/pr14494.htm> (언론발표문)
<http://www.ieo-imf.org/ieo/pages/EvaluationImages227.aspx> (평가보고서)
 22) <http://www.oecd.org/std/labour-stats/>



호주

1. 기타

■ 연방정부, *Economic Action Strategy Annual Report 2014*를 통해 애봇 정부의 지난 1년을 부문별로 평가(2014.10.)²³⁾

• (배경) 애봇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부문별 Economic Action Strategy를 통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재정회복 등을 강조한 정책을 실시

• 금번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정안정, 재정지속가능성, 경제회복 등에 대해 평가²⁴⁾
- (Budget Stability) 지난 5월 편성된 FY2014-15 긴축예산을 통해 낭비성 지출을 제어,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개인적 책임을 고취함

☞ 지속적인 절감을 통해 FY2024-25까지 GDP 대비 1% 이상의 재정수지 흑자, 미래 세 부담 경감, FY2023-24까지 채무 3,900억호주달러* 전망

* FY2013-14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에서는 6,670억호주달러(GDP 대비 26%)의 채무 전망

• (Budget Sustainability) FY2014-15 예산안에 보건복지 및 교육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반영
- 가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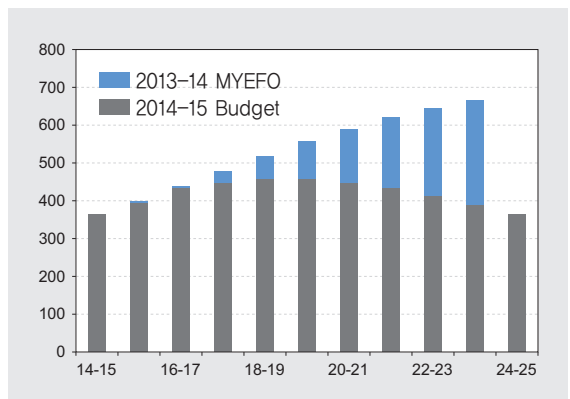
- (A Resilient Economy) 자원분야 중심에서 비자원분야로의 다양한 투자기반을 다지며 2014년 2

분기 경제성장률 3.1%(연율)의 경기회복세 시현(2013년 3분기 2.2%)

☞ 지속적인 실업률 하락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제 및 정책 기반을 견고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계획

[그림 2] 부채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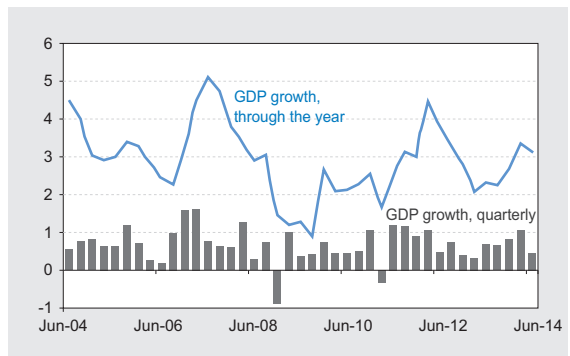
(단위: 10억달러)



자료: 호주연방정부, *Economic Action Strategy Annual Report 2014*.

[그림 3]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호주연방정부, *Economic Action Strategy Annual Report 2014*.

23) 재무부장관 홈페이지 Publications, http://jph.ministers.treasury.gov.au/files/2014/10/Economic_Action_Strategy_Annual_Report_2014_2.pdf

24) Taxation Reform, Helping Small Business, Recycling Assets, Delivering Infrastructure, Trade and Investment, Financial Services, The G20 관련 내용은 링크된 보고서 원문 참고

- 유류세(Fuel Excise) 인상계획 발표(2014.10.28.)^{25) 26)}
 - (배경) 정부는 지난 5월 FY2014-15 예산안에서 유류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하여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본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금번 발표를 통해 우선 관세를 인상하는 방법(Tariff Proposal)을 취하고 12개월 내로 의회 승인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힘
 - 유류세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리터당 38.143호주센트에서 38.6호주센트로 약 0.5호주센트 인상되며, 물가연동은 향후 연 2회 실시할 예정(2015년 2월 첫 시행)
 - 이번 인상으로 추가적인 순수입은 4년간 약 22억호주달러, 10년간 190억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추가 수입분은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로건설에 투자될 예정

〈표 8〉 유류세 인상에 따른 순수입

(단위: 100만호주달러)

	2014-15	2015-16	2016-17	2017-18	합계
수입 (Revenue)	280.0	750.0	1,270.0	1,850.0	4,150
지출 (Expense)	112.5	370.0	590.0	860.0	1,932.5
순수입 (Net Revenue)	167.5	380.0	680	990	2,217.5

주: 지출의 대부분은 세액공제 환급금에 해당
 자료: 호주 재무부, Budget Measures Budget Paper No.2 2014-15.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캐나다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균형재정을 위한 Economic Action Plan 2014 Act No.2 발표(2014.10.23.)
 - 2015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지원, 가족 및 지역사회 지원, 조세시스템의 공정성 개선 등에 대한 계획 발표
 -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지원) 새로운 중소기업에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지원, 농어촌 기업을 위한 공정한 세금제도 신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지급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 연장 등
 - (가족 및 지역사회 지원) 어린이 피트니스 세액공제 두 배 증액, 청정 에너지 장비에 대한 자본비용 수당 자격 확대 등
 - (조세시스템 공정성 개선) 세금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외국 금융기관의 세금 규정에 따른 새로운 규정 조건 추가 등
- FY2014-15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B) 하원상정²⁷⁾(2014.11.5.)
 - 추경안(B)²⁸⁾는 32억캐나다달러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은 약 29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은 약 3억캐나다달러 편성
 - 주요 의결지출로 국방비에 약 8.4억캐나다달러, 정부서비스에 약 1억캐나다달러, 재무위원회 사

25) 재정부장관 홈페이지 Media Release 2014.10.28 (<http://www.financeminister.gov.au/media/2014/1028-implementation.html>)

26) Reintroduction of fuel excise indexation, 연방의회(http://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rp/BudgetReview201415/FuelExcise#_ftnref7)

27) <http://www.tbs-sct.gc.ca/ems-sgd/sups/b/20142015/seb-bsdb01-eng.asp#toc2>

28) 캐나다는 매년 세 차례의 추경(A), (B), (C)을 편성하며, 6월 23일, 12월 10일, 3월 26일을 기준으로 종료



미국비에 약 1.5억캐나다달러 등 편성

〈표 9〉 FY2014-15 추경예산안(B)

(단위: 억캐나다달러)

구분		일반예산 (Budgetary)	투융자예산 (Non-Budgetary)
추경 (B)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29	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3	0
	합계	32	0

자료: 캐나다 재무부, Supplementary Estimates(B), 2014-15

- 재무부,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발표(2014.11.12.)
 - 캐나다 재무부는 민간부문²⁹⁾ 경제전망치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2014년 예산안의 경제 및 재정전망치를 조정한 보고서를 발표
 - (경제전망)
 - (명목 GDP 성장률) FY2014 예산안 전망치와 큰 변화는 없으나, 2014년 1분기 물가상승으로 인해 3.9%에서 4.4%로 상향 조정
 - (실업률) 실업률은 FY2014 예산안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
 -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2014년에 2.0%, 2015년에 1.9%로 FY2014 예산안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표 10〉 민간 경제전문가 대상 경제전망치 서베이 결과 비교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8
실질 GDP 성장률	FY2014 예산안 전망치	2.3	2.5	2.5	2.3	2.2	-	2.4
	전망치 업데이트	2.4	2.6	2.4	2.3	2.2	2.1	2.4
명목 GDP 성장률	FY2014 예산안 전망치	3.9	4.5	4.5	4.4	4.2	-	4.3
	전망치 업데이트	4.4	4.3	4.4	4.4	4.2	4.1	4.4
실업률	FY2014 예산안 전망치	6.8	6.6	6.4	6.3	6.2	-	6.5
	전망치 업데이트	7.0	6.8	6.5	6.4	6.3	6.3	6.6
물가 상승률	FY2014 예산안 전망치	1.5	1.9	2.0	2.0	2.0	-	1.9
	전망치 업데이트	2.0	1.9	2.0	2.0	2.0	2.0	2.0

자료: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4

_____, Department of Finance's December 2013 survey of private sector economists; for the 2014 Fall Update, the September 2014 survey of private sector economists.

- (재정전망)
 - (재정수지) 2014년 예산안 재정수지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되었으며, 당초 목표인 FY2015-16에 균형재정 달성
 - (총수입) FY2013-14 총수입은 2014년 예산안 전망치보다 약 62억캐나다달러 증가 조정
 - (프로그램지출) FY2013-14 프로그램지출은 2014년 예산안 전망치 대비 26억캐나다달러 감소 조정

29) 15개 조사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음. BMO Capital Markets,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IBC World Markets,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sjardins, Deutsche Bank of Canada, IHS Global Insight, Industrial Allianc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c., Laurentian Bank Securities, National Bank Financial Group,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TD Bank Financial Group, and the University of Toronto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Program).

- (공공채무비용) FY2013-14 공공채무 비용도 2014년 예산안 전망치 대비 4억캐나다달러 감소 조정

〈표 11〉 2014년 예산안 재정전망치 대비 조정 내역

(단위: 10억캐나다달러)

		2013 -14	2014 -15	2015 -16	2016 -17	2017 -18	2018 -19	2019 -20
2014년 예산안 재정수지		-16.6	-2.9	6.4	8.1	8.1	10.3	n/a
경제 및 재정적 요인에 의한 조정	Add(+): 총수입	6.2	3.2	1.0	0.6	0.5	0.1	
	Less(-): 프로그램 지출	2.6	-1.2	-1.8	-1.3	-0.9	-0.7	
	Less(-): 공공채무 비용	0.4	1.2	1.2	1.8	2.1	1.9	
Update된 재정수지		-5.2	-2.9	1.9	4.3	5.1	6.8	13.1

자료: 캐나다 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4.11.

2. 기타

- 재무위원회, 부처별 성과보고서(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s) 하원 상정(2014.11.5.)
 -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FY2013-14 부처별 성과보고서를 취합하여 하원에 상정
 - 동 보고서는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수립했던 목표 대비 실제 성과를 기술한 보고서로 예산안(The Estimates) 문서의 Ⅲ장을 구성함
 - 이 중 재무부는 성과지표인 연방 재정수지, 실질 GDP 성장률 등을 통해 FY2013-14 전략결과를 보고

〈표 12〉 FY2013-14 재무부 성과보고서 내용 요약

성과지표	목표	FY2013-14 성과
연방 재정수지	정부 목표와 일치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결과는 2015년 균형예산으로 회복하려는 정부 목표와 일치
실질 GDP 성장률	G7 국가 평균과 일치	G7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2.0%(미국 2.2%), 2013년에는 G7 중 실질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

자료: 캐나다 재무부,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 2013-14*, 2014.11.

〈자료 수집 및 정리: 서주영 연구원〉

프랑스

1. 예산·결산 등

- FY2014 2차 수정예산안(PLFR: Projet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14) 발표(2014.11.12.)³⁰⁾
 - (경제·재정전망) 2014년 경제성장률은 0.4%, 재정적자는 GDP 대비 4.4%로 전망
 - 1차 수정예산안³¹⁾에서의 경제성장률은 1.0%, 재정적자는 GDP 대비 3.8%로, 2차 수정예산안은 1차 전망 대비 성장률 및 재정수지 모두 하향 조정
 - (재정지출·수입) 2014년 2차 수정예산안의 재정지출은 1차 수정예산 대비 9억유로 감소한 3,754억유로로, 재정수입은 63억유로 감소한 2,871억유로로 전망
 - 재정수입의 감소는 법인세 감소 등 정책적 영향과 경제성장률 하락 및 낮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환경 변화를 고려한 수입 감소분 등의 요인에 기인함
 - 재정적자는 1차 수정예산(839억유로) 대비 43억

30)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4/projet-loi-finances-rectificative-2014-0#_VVGREFTSSXIE

31)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4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중 「V. 프랑스」 참고



유로 증가한 882억유로

〈표 13〉 FY2014 2차 수정예산안

(단위: 10억유로)

	2013 (실적)	2014 본예산	2014 1차 수정예산 (A)	2014 2차 수정예산 (B)	B-A
총지출	373.1	379.7	376.3	375.4	-0.9
총수입	297.7	298.2	293.4	287.1	-6.3
조세수입	284.0	284.4	279.0	272.9	-6.1
세외수입	13.7	13.8	14.4	14.2	-0.2
특별회계	0.6	-1.0	-1.0	0.0	1.1
재정수지	-74.9	-82.6	-83.9	-88.2	-4.3

자료: PLFR 2014

- (주요내용)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근로자 구매력 향상, 조세포탈 강력 대응, 조세시스템 효율화 등의 정책 우선순위 내용을 포함함

2. 기타

- 프랑스 재무부 장관, EU 집행위 서신에 대한 답장 공개(2014.10.27.)³²⁾
 - 재무부 장관 미셸 사핀(Michel Sapin)은 지르키 카타이넨(Jyrki Katainen)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이 보낸 서신에 대한 답장에서 재정적자 감축과 탈세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를 강조
 - 유로 지역의 경기 회복 둔화와 낮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기존전망(2014년 1%, 2015년 1.7%)보다 하향 조정되어 2014년 0.4%, 2015년 1.0%가 될 것으로 전망

- 경제 상황 악화로 재정건전화 목표달성이 지연되고 있으나, 프랑스는 2015년 책임·연대협약(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Pact)의 이행과 공공부문 재정지출 감축(210억유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
- 또한 프랑스 정부는 세금개혁을 지속·확대하고 탈세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적자를 추가로 감축할 것을 약속

- 프랑스 정부, 가족수당 축소 내용 발표(2014.10.17.)³³⁾
 - (배경) 프랑스는 경제회복 및 재정 감축을 위해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주는 혜택인 가족수당 관련 비용 삭감을 발표
 - (주요내용) 기존 가족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라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 7월부터 개인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³⁴⁾
 - 부부소득이 매달 6,000유로 이상이면 현재 지급받는 수당의 50%, 8,000유로 이상이면 25%만 지급받게 됨
 - 부부소득이 매달 6,000유로 이하인 경우는 현재 수당을 유지
 - 정부는 가족수당 감축으로 내년에는 4억유로, 2016년부터는 8억유로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

32) 재무부, <http://www.economie.gouv.fr/michel-sapin-a-repondu-au-courrier-jyrki-katainen>

정부포털, http://www.economie.gouv.fr/files/files/PDF/Courrier_de_Michel_Sapin_Jyrki_Katainen_27_octobre_2014.pdf

33) 정부포털, <http://www.gouvernement.fr/les-mots-du-porte-parole>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http://oecd.mofa.go.kr/korean/eu/oecd/main/index.jsp>

34) 1940년대 가족수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수당을 지급받음. 현재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매달 129유로, 자녀가 3명인 경우 295유로, 4명인 경우 461유로를 지급

- FY2014 1~9월 예산집행 결과 발표(2014.11.7.)³⁵⁾
 - 프랑스 정부는 FY2014 1~9월 예산집행 결과를 발표
 - (재정수지) 2014년 3분기까지 재정적자는 805억 유로로 2013년 동 기간(808억유로) 대비 소폭 감소
 - (재정지출·수입) 지출은 2,780억유로로 2013년 동 기간 대비 48억유로(1.7%) 감소했으며, 수입은 2,207억유로로 2013년 동 기간 대비 52억유로(2.3%) 감소
 - 재정지출의 감소는 FY2014 수정예산법에 따른 추가 재정감축 계획에 따른 것이며, 재정수입의 감소는 주로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 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³⁶⁾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기인

〈표 14〉 FY2014 1~9월 집행실적

(단위: 100만유로)

	2012년 (연간)	2013년 (연간)	1~9월		
			2012	2013	2014
일반회계 재정수지	-88,156	-75,429	-61,664	-56,884	-57,239
재정지출	374,171	376,669	273,306	282,812	277,985
재정수입	286,014	301,240	211,642	225,928	220,746
특별회계 재정수지	1,006	561	-23,295	-23,947	-23,259
총재정수지	-87,150	-74,868	-84,959	-80,831	-80,498

자료: 프랑스 통계청,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2014.11.7.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연구원)

35)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4/situation-mensuelle-budget-etat-30-septembre-2014#.VGAzTSsXIe>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sites/performance_publique/files/files/documents/ressources_documentaires/SMB/2014/situation_mensuelle_budget_etat_30092014.pdf

36) CICE는 기업의 연구, 혁신 그리고 신시장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3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중 'IV. 프랑스' 참고

37) 원문: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Monthly_Report/Abstract/2014-10-english-version.html

자료: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Monatsberichte/2014/10/Downloads/monatsbericht_2014_10_english.pdf?__blob=publicationFile&v=3

독일

1. 예산·결산 등

- 독일재무부, FY2014 3분기 예산 집행결과 발표(2014.10.20.)³⁷⁾
 - (재정수지) 2014년 1~3분기의 연방정부 재정수지는 -188억유로로, 전년 동기(-262억유로) 대비 재정적자 폭이 감소
 - (재정지출) 2014년 3분기까지 2,278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유로(0.2%) 감소
 - (재정수입) 2014년 3분기까지 2,090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9억유로(3.4%) 증가
 - (신규차입) 2014년 1~3분기 신규차입액은 (-)값으로 25억유로의 채무상환 달성

〈표 15〉 경제 및 재정 전망

(단위: 10억유로)

	2014(추정)	2013(결산)	2014(1~9월)	2013(1~9월)
재정지출	296.5	307.8	227.8	228.3
재정수입	289.8	285.5	209.0	202.1
조세수입	268.2	259.8	190.1	184.7
재정수지	-6.7	-22.3	-18.8	-26.2
신규차입*	6.5	22.1	-2.5	4.2

주: * (-)는 채무상환, (+)는 차입을 의미
 자료: 독일재무부 보도자료



2. 기타

- 재무부,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³⁸⁾ 작업반 회의 결과 발표(2014.11.6.)³⁹⁾
 - 2014년 연방, 주, 지방정부의 총세수는 6,409억유로이며, 2019년에는 7,602억유로까지 증가할 전망

〈표 16〉 세수추계 결과¹⁾

(단위: 10억유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방정부	259.9	268.9	278.0	290.0	299.3	311.0	322.3
주정부	244.2	252.8	259.7	268.4	278.2	288.6	298.3
지방정부	84.5	87.5	90.2	93.6	97.1	100.7	104.5
EU ²⁾	31.1	31.7	32.3	31.6	33.2	34.3	35.1
합계	619.7	640.9	660.2	683.7	707.8	734.6	760.3

주: 1) 2013년 실적치, 2014~19년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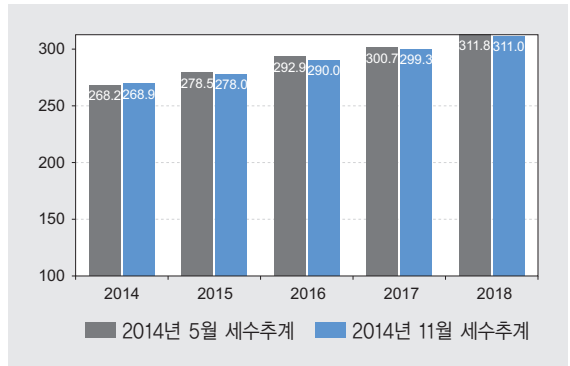
2) EU의 재정을 위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일정분을 이전(참고: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10, pp. 37~40)

자료: 재무부 보도자료

- 2014년 5월 추계⁴⁰⁾ 대비 연방정부 세수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과 높은 내수 수준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나, 독일 경제의 전반적인 부진이 세수전망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
- 2015년 이후 연방정부의 신규차입을 0 이하로 달성한다는 기존의 재정목표는 유지

[그림 4] 독일 연방정부 세수 추이

(단위: 10억유로)



자료: 재무부 보도자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이탈리아

1. 예산·결산 등

- 이탈리아 각료회의, 2015년 예산법안 및 안정법안⁴¹⁾ 확정(2014.10.15.)⁴²⁾
 - (예산법안) 의회와 EU 집행위에 제출되고 EU 집행위의 의견 수렴과 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 (안정법안)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8) 연방재무부, 경제부, 5개 경제연구소,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 재무부들, 기초자치단체 전국연합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연구능력을 갖춘 기관들의 독립적 세수추계 결과를 기초로 합의에 이르는 방식을 취함(참고: 『정책분석 11-06 독일의 재정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p. 110~111)

39) 원문: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Pressemitteilungen/2014/2014-11-06-145th-meeting-working-party-tax-revenue-estimates-wismar.html>자료: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4/11/2014-11-06-PM46-steuerschaetzung-anlage.pdf?__blob=publicationFile&v=4

40) 원문: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4/05/2014-05-08-pm-steuerschaetzung.html>

41) 이탈리아의 예산안은 예산법안과 안정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0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법안은 현행 법률에 의한 모든 지출과 세입을 작성한 것이고 안정법안은 향후 3년간의 예산 계획에 대한 재정적 틀을 제공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당해 연도의 재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목표를 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2) 이탈리아 재무부, http://www.met.gov.it/primo-piano/article_0142.html

- (감세 정책)

☞ 기업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80억유로의 구조적 감세 시행 예정

* 월 2,500유로 이하의 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월 80유로 지원(약 95억유로 규모)

* 고용주의 고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무기계약직(open-ended)을 채용한 기업에 생산 활동에 대한 지방세(IRAP local tax) 10% 공제, 36개월간 사회보장기여금 면제(각각 27억, 16억유로)

☞ 감세는 공공지출의 구조적 감축(정부지출 중 지출삭감 150억유로, 탈루세금 38억유로)으로 보전할 계획

- (투자 지출)

☞ 국가 주요 부문에 대한 투자: 학교(5억유로), 직장(19억유로), 정의(giustizia, 2억 5천만유로)

☞ 연구와 혁신 부문 재원 투자(총 3억유로)

- (재정적자 감축) 약 110억유로 감축 계획
- 정부 · 지방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재원 및 책임 재분배 등

• (경제전망) 이탈리아 경제성장률은 구조적 개혁의 효과로 2014년 -0.3%에서 2015년 0.6%, 2018년 1.4%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구조적 재정수지는 2017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하를 유지할 계획

- (재정수입) 2015년 조세세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GDP 대비 47.7% 수준으로 전망

- (재정지출) 2015년 재정지출은 전년(50.8%) 대비 소폭 하락한 50.6% 수준 전망

- (국가채무) 구조적 개혁 도입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5년 134.3%, 2018년 129.5% 수준 예상

〈표 17〉 주요 경제 및 재정지표 전망(2014~2018년)

(단위: %, GDP 대비 %)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 GDP 성장률	-0.3	0.6	1.0	1.3	1.4
GDP 디플레이터	0.8	0.6	1.6	1.8	1.8
일반정부 재정수지	-3.0	-2.9	-1.8	-0.8	-0.2
구조적 재정수지	-0.9	-0.9	-0.4	0.0	0.0
기초재정수지	1.7	1.6	2.7	3.4	3.9
일반정부 부채 ¹⁾	131.6	133.4	131.9	128.6	124.6

주: 1) As defined in Regulation 479/2009.

자료: DOCUMENTO PROGRAMMATICO DI BILANCIO 2015

〈표 18〉 구조적 개혁의 효과

(단위: GDP 대비 %)

	2014	2015	2016	2017	2018
구조적 개혁 도입 전 국가채무 (unchanged legislation)	131.7	133.7	133.7	132.1	129.9
구조적 개혁 도입 후 국가채무 (counterfactual analysis)	131.7	134.3	133.6	131.7	129.5
채무감축 효과 (difference versus unchanged legislation)	0.0	0.6	0.1	-0.4	-0.3

자료: DOCUMENTO PROGRAMMATICO DI BILANCIO 2015



〈표 19〉 2015년 예산전망 요약

(단위: GDP 대비 %)

	2014	2015
총수입	47.7	47.7
생산 및 수입세	15.2	15.1
소득세 및 부유세 등	14.6	14.8
자본세	0.1	0.1
사회기여세	13.3	13.2
재산세	0.6	0.6
기타	3.8	3.9
총지출	50.8	50.6
인건비	10.0	10.0
중간소비지출	5.2	5.0
사회보장지출(실업급여)	23.1(1.0)	23.6(0.9)
이자지출	4.7	4.5
보조금	1.7	1.5
총고정자본형성	2.2	2.3
자본이전	1.5	1.2
기타	2.3	2.5

자료: DOCUMENTO PROGRAMMATICO DI BILANCIO 2015

-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Pier Carlo Padoan) 재무장관, EU 집행위에 내년도 추가 재정적자 감축 약속(2014. 10. 27.)⁴³⁾
 - 이탈리아는 2015년 예산안⁴⁴⁾에서 약 45억유로 규모의 재정적자 추가 감축 계획을 밝힘
 - 추가적 감축조치로 내년도 재정적자가 예산안 전망치보다 0.3%p 감소(2.9 → -2.6%)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안정기금에 배정된 자원 확대를 통해 33억유로,

유럽결속기금에 배정된 국내자원 감축 및 소매업 분야 매입자 납부방식 확대 등 예산조정으로 약 12억유로를 개선할 계획

- 이탈리아 정부는 조세부담 완화와 공공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성장 친화적인 재정 조정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구조적 개혁이 잠재 성장 및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임
- 한편 이탈리아의 아웃풋 갭은 2014년도에 역사상 최대치(-4.3%)에 달할 것임을 밝히며, 중기재정계획(MTO) 달성을 2017년으로 연기하였음을 밝힘

- 이탈리아 재무부, 2014년 경제·재정 문서 업데이트 보고서 발표(2014.10.28.)⁴⁵⁾
 - 10월 14일에 의회에서 승인된 중기재정계획(DEF) 뿐 아니라 10월 15일에 발표된 2015년 예산안의 정책 목표를 업데이트
 - FY2015-2017 안정법안에 포함된 정책 조치 결과로 중기재정계획의 2015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2.9%, 중기적 균형재정 달성 계획으로 2015년 구조적 재정수지는 2014년 대비 약 0.1%p 향상될 것으로 전망
 - 2015년 예산안에 추가적 조치로 재정적자 약 0.3%p 추가 감축 계획
 - i) 조세부담 인하를 위한 안정성 기금(stability fund)에 배정된 자원 확대 → 약 33억유로
 - ii)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소매업 분야 매입자 납부방식 확대 → 약 7억 3천만유로

43) 이탈리아 재무부, http://www.mef.gov.it/primo-piano/article_0142.html

44) 2015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격주 「재정동향」 11월 1호에 수록

45) 이탈리아 재무부, http://www.mef.gov.it/doc-finanza-pubblica/def/2014/documenti/2014_10_28_Relazione_al_Parlamento_h_17_54.pdf

- iii) 유럽결속기금에 배정된 국내자원 감축 → 약 5억유로
- 그 외 추가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FY2015-2017 안정법안에 기재
- 2014년 중기재정계획(DEF) 및 기존 예산안에 언급되었던 것보다 약 45억유로의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일반재정수지는 약 2.6%p, 구조적 재정수지는 약 0.3%p 개선될 것

-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0.5% 증가하여 GDP 대비 49.3% 수준이며,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1.6% 증가
- 총수입은 GDP 대비 48.2%(전년도 2분기와 동일) 수준이며, 자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2.7% 감소한 점이 두드러짐
- 조세부담은 전년 동기 대비 0.1%p 증가한 43.2% 수준

2. 기타

- 이탈리아 통계청, 2014년 2분기 일반정부 비금융계정 발표(2014.10.15.)⁴⁶⁾
 - 2014년 2분기의 GDP 대비 순차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0.4%p 증가한 -1.1%이며, 기초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0.3%p 감소한 GDP 대비 4.3% 수준

〈표 20〉 공공재정 분기별 지표

(단위: %)

	총수입/GDP	총지출/GDP	총지출(이자 제외)/GDP	차입/GDP	경상수지/GDP	기초재정수지/GDP	조세부담
2012-I	42.5	48.6	43.8	-6.2	-3.1	-1.3	38.6
2012-II	46.2	48.5	42.7	-2.3	1.5	3.5	41.8
2012-III	45.4	47.1	42.5	-1.6	1.7	3.0	41.8
2012-IV	54.9	57.0	51.6	-2.0	2.2	3.4	50.1
2013-I	43.3	49.8	45.3	-6.5	-3.2	-2.0	39.2
2013-II	48.2	48.9	43.6	-0.7	2.3	4.6	43.1
2013-III	44.2	47.4	42.9	-3.3	0.1	1.3	40.3
2013-IV	54.4	55.5	50.6	-1.1	1.1	3.7	50.0
2014-I	42.1	48.7	44.4	-6.7	-4.0	-2.3	38.1
2014-II	48.2	49.3	43.9	-1.1	2.4	4.3	43.2

자료: 이탈리아 통계청, Conto economico trimestrale delle amministrazioni pubbliche

46) 자료: 이탈리아 통계청, <http://www.istat.it/it/archivio/134417>



〈표 21〉 2014년 2분기 일반정부 비 금융계정

(단위: 100만유로, %)

	2013-Ⅱ	2014-Ⅱ	전년동기대비
지출			
경상지출	182,600	183,292	0.4
자본지출	15,413	15,657	1.6
총지출	198,013	198,949	0.5
수익			
경상수입	191,858	193,006	0.6
자본수입	3,250	1,537	-52.7
총수입	195,108	194,543	-0.3
경상수지	9,258	9,714	
순차입	-2,905	-4,406	
기초재정수지	18,739	17,433	

자료: 이탈리아 통계청, Conto economico trimestrale delle amministrazioni pubbliche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 **일본**

1. 예산·결산 등

- 2014년도 예산집행조사 결과 발표(2014.10.31.)⁴⁷⁾
 - 2014년도 예산집행조사는 4월 1일 공표된 총 75건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7월 1일 발표⁴⁸⁾된 58건을 제외한 17건을 발표
 - 조사사안의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 향후 개선점 및 검토의 방향성을 지적하고 이 중 4건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

47) 재무성, 「平成26年度予算執行調査の調査結果の概要(10月公表分)」, 2014.10.31.

48) 「주요국의 재정동향」 8월 1호 일본편 참조

49) 재무성,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14.10.31.

50) 「2014년 주요국 예산안」 일본편 및 과거 동향 내용 참조

- 조사결과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에 정확히 활용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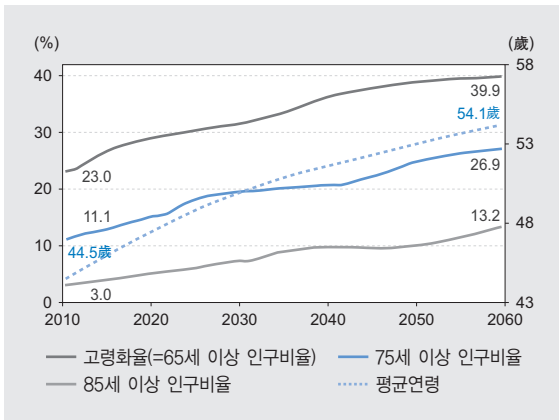
2. 기타

- ‘일본의 재정관계자료’ 발표(2014.10.31.)⁴⁹⁾
 - 일본 재정에 관한 기초 데이터를 정리한 일본의 재정관계자료 발표
 - 2014년 예산안 내용과 재정건전화 목표, 재정상황 등 기준에 발표된 일본 재정 관련 자료⁵⁰⁾들이 포함,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재정상황을 설명
 - 현재 일본의 재정상황에 대해 국채잔고 누증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세출 측면에서는 고령화 진행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 및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재원부족 보전 증가, 세입 측면에서는 경기악화 및 감세에 의한 세수 감소가 주요인으로 제기됨
 - ☞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의 정체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정체되는 가운데 고령자인구 증가에 의해 사회보장비가 계속해서 증가, 특례국채 등의 발행을 통해 미래 세대로 부담을 전가
 - 향후 고령화 전망에 대해서는 2025년에 베이비붐세대(1947~49년생)가 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전환되어 의료·개호 관련 비용이 증가할 전망
 - ☞ 베이비붐 세대 사망 등에 의해 65세 이상 인구는 2042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71~74년생)의 고령화에 의해 2053년에는 75세 이상 인구, 2062년에

는 85세 이상 인구가 피크가 될 것이며, 고령 화율 및 평균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 일본 고령화율은 기타 주요국과 비교해서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률은 비교적 낮으며, 특례국채 발행 등을 통해 미래 세대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

[그림 5] 고령화율의 추이

(단위: %, 세(歲))



주: 재무성, 「일본의 재정관계자료」, 2014.10.31.
 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장래인구추계(출생중위·사망중위)」, 2012.1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스페인

1. 예산·결산 등

- 총리실, 2014년 9월까지 중앙정부⁵¹⁾ 재정적자 발표⁵²⁾ (2014.10.28.)
 - 2014년 1~9월 동안 중앙정부 적자는 330억 5,000 만유로로 GDP 대비 3.11%로 집계되었고, 전년 동 기간에 비해 9.3% 감소
 - 2014년 1~9월 동안 비금융수입은 1,267억유로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4.4% 증가
 - ☞ 증가분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조세 및 국내 보험 개인분담금(1,132억 6천만유로)과 그 외 수입 18.1% 증가(134.5억유로)로 구성
 - 비금융지출은 2014년 9월까지 1,597억 6천만유 로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1.2% 증가
 - ☞ 이자 및 중간재 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 5% 증가, 사회 이전지출 이외의 사회급여 (social benefit) 2.9% 증가, 사회보장기금 이 전 1.1% 증가 등에 기인

2. 기타

- 통계청, 2014년 3사분기 고용률 및 실업률 발표⁵³⁾ (2014.10.23.)
 - 2014년 3사분기 고용률은 지난 분기에 비해 40% 증 가하여 45.44% 기록
 - 전분기에 비해 고용자 수가 15만 1,000명 증가하

51) 중앙정부 기관지출 제외

52) 자료: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lang/en/gobierno/news/Paginas/2014/20141028-deficit.aspx>, 재무부 http://www.minhap.gob.es/en-gb/prensa/en%20portada/2014/Paginas/20141028_DEFICIT.aspx

53) 자료: 통계청 http://www.ine.es/ss/Satellite?L=en_GB&c=Page&cid=1254735589499&p=1254735566700&pagename=INEHome%2FHOMELayout 경제부 <http://www.mineco.gob.es/portal/site/mineco/menuitem.ac30f9268750bd56a0b0240e026041a0/?vgnnextoid=8aa1fcca41c39410VgnVCM1000001d04140aRCD&vgnnextchannel=864e154527515310VgnVCM1000001d04140aRCD>



여 총고용자 수는 1,750만 4,000명

- 부문별 고용자 수는 서비스업(10만 8,800명), 산업(7만 1,800명), 건설업(4만 3,500명) 순으로 증가가 많았고, 농업(7만 3,100명)은 감소

- 2014년 3사분기 실업률은 23.67%로 전분기 24.47%와 전년 동분기 25.65%에 비해 감소
- 실업자 수는 전분기에 비해 19만 5,200명이 감소하여 총실업자 수는 542만 7,7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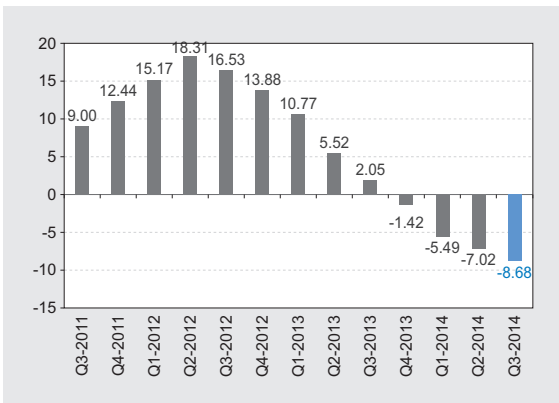
해 180억 7,800만유로를 지원받음

- 카탈루냐 약 67억 5,200만유로, 발렌시아 약 46억 4,400만유로 등

- 카탈루냐의 경우 제약(Pharmacy) 관련 채무 상환을 위한 지원금 90만 8,764유로 포함^{56) 57)}

[그림 6] 스페인 실업자 수 변화율

(단위: %)



자료: 스페인 통계청,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EAPS), 2014 Q.3

<표 22> 자치지역 유동성 자금 지원규모

(단위: 100만유로)

자치지역	2014년 1월~10월 지원규모	2014년 승인규모
카탈루냐	6,752.79	7,258.93
발렌시아	4,644.51	5,150.27
안달루시아	3,400.51	3,858.03
카스티야 라 만차	1,140.17	1,531.59
무르시아 지역	754.05	895.49
발레아레스	664.47	816.83
카나리아 제도	546.21	749.60
칸타 브리아	175.25	264.06
총	18,078.00	20,524.80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영국

- 2014년 10월까지 지역 유동성 기금(Fonde de Liquidez Autonómico: FLA)⁵⁴⁾의 자치지역 지원규모 발표⁵⁵⁾ (2014.11.6.)
- 2014년 1~10월 동안 자치지역은 유동성 기금을 통

1. 기타

- 통계청, 2014년 2~3분기 공공부문 재정 현황 발표 (2014.10.21.)⁵⁸⁾
- 2014년 2~3분기 공공부문 경상재정수지(Public

54)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채상환 지원을 위해 2012년에 설립한 공공기금으로, 자치지역에 2012년 166억 3,813만유로, 2013년에는 229억 2천만유로가 지원되었고, 2014년에는 205억 2,480만유로가 승인됨

55) 자료: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ensa/minhap/paginas/2014/061114facataluna.aspx/>

56) 자료: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ensa/minhap/Paginas/2014/061114financiacionfla.aspx>

57) 카탈루냐 이외에 발레아레스 9만 3,110유로, 카나리아 제도 10만 9,626유로, 무르시아 8만 6,443유로, 발렌시아 67만 7,209유로를 제약(Pharmacy) 관련 지출로 지원받음

58) 통계청,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65294/PSF_September.pdf

Sector Current Budget)는 흑자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억파운드 증가한 457억파운드,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은 전년 동기간 대비 54억파운드 증가한 580억파운드로 집계

- 580억파운드 공공부문 순차입은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순차입 599억파운드, 공기업 순차입 -3억파운드, 영란은행 순차입 -16억파운드로 구성
- 2014년 9월 말 기준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는 1,007억파운드 증가한 1조 4,513억파운드로 GDP 대비 79.9%를 차지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수당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규제 신설

- 반환해야 되는 퇴직수당액은 퇴직 시점과 재취업 시점 사이의 기간에 따라 산정⁶¹⁾
- 이번 규제는 국립박물관, 국립방송국, 영란은행, 국군을 제외한 모든 공공부문에 적용될 예정
- 재무부 재정차관 프리티 파텔(Priti Patel)은 “공공기관 간부가 거액의 퇴직수당을 받은 후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을 철폐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표 23〉 공공부문 재정(Public Sector Finance)

(단위: 10억파운드, %)

	2~3분기(4~9월)			9월		
	2014/15(A)	2013/14(B)	(A-B)	2014(C)	2013(D)	(C-D)
경상재정수지	45.7	44.8	1.0	8.5	8.5	0.0
순투자	12.3	7.8	4.5	3.3	1.8	1.5
순차입	58.0	52.6	5.4	11.8	10.3	1.6
순부채	1,451.3	1,350.6	100.7	1,451.3	1,350.6	100.7
GDP 대비 순부채(%)	79.9	77.9	2.0	79.9	77.9	2.0

자료: 통계청, Public Sector Finances, September 2014

- 공공기관의 퇴직 간부에 대한 재취업 규제 방안 마련 (2014.10.28.)⁵⁹⁾
 - 공공기관의 고소득⁶⁰⁾ 간부급 관리자(highly paid public sector administrators)가 퇴직 시 퇴직수당(redundancy payment)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유관

- 통계청, 2014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4.11.5.)⁶²⁾
 - 2014년 3분기 GDP는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한 0.7%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로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인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
 -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산업 부문은 1, 2분기와 동일하게 서비스업(0.58%p)으로 나타남
 - 2014년 3분기 주요 4대 산업부문별 산출량은 모두 증가하였고, 전분기 대비 건설업 산출량은 0.8%, 서비스업은 0.7%, 제조업은 0.5%, 농업은 0.3% 증가

59)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highly-paid-public-sector-administrators-to-face-redundancy-clawbacks>

60) 소득기준 연간 10만파운드 이상

61) 자세한 산정방식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67610/Recovery_of_public_sector_exit_payment_response.pdf 참조

62) 통계청, http://www.ons.gov.uk/ons/dcp171766_383865.pdf



〈표 24〉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change on previous quarter)

	GDP Index(2011=100)	GDP	Agriculture	Production	Construction	Services
2012 Q3	101.1	0.8	-0.1	0.1	-1.1	1.0
2012 Q4	100.8	-0.3	-0.1	-2.0	0.3	-0.2
2013 Q1	101.3	0.5	-4.4	0.4	-0.7	0.6
2013 Q2	102.0	0.7	0.5	0.8	2.5	0.5
2013 Q3	102.8	0.9	0.7	0.7	3.4	0.7
2013 Q4	103.5	0.6	0.6	0.6	-0.3	0.7
2014 Q1	104.2	0.7	0.3	0.9	1.8	0.8
2014 Q2	105.2	0.9	-0.3	0.2	0.7	1.1
2014 Q3	105.9	0.7	0.3	0.5	0.8	0.7

자료: 영국 통계청, *Economic Review*, 2014, 11

- 골재세⁶³⁾ 공제제도(aggregate levy credit scheme) 부활 예정(2014.11.10.)⁶⁴⁾
 - 골재세 공제제도는 특정 환경기준을 준수한 북아일랜드의 골재 채석장에 대해 8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2004년 4월 1일부터 2010년 11월30일 까지 시행되었다가 이후 중단되었으며 2015년 입법을 통해 재개될 예정
 - 영국골재협회(British Aggregates Association)는 2010년 골재세 공제제도로 북아일랜드의 국고보조(state aid) 부정수급을 주장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도 조사를 요청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골재세 공제 제도는 2010년 12월 1일 이후 잠정 중단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조사결과 북아일랜드가 불법적인 국고보조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영국의 골재세 공제제도가 영국의 국고보조 규정에 부합

한다고 판결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종결됨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터 연구원)



미국

1. 예산·결산 등

- CBO, 월별 예산보고서(Monthly Budget Review)에서 FY2014 결산 발표(2014.11.10.)⁶⁵⁾
 - 미 연방정부의 FY2014 재정적자는 총 4,830억달러로 집계되어 FY2013에 비해 1,970억달러 하락
 - 2010년부터 5년 연속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하락

63) 건설공사에서 쓰이는 모래, 자갈 등 상업적으로 채취된 골재에 부과하는 환경세

64)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s-aggregates-levy-credit-scheme-in-line-with-state-aid-rules>

65) CBO, *Monthly Budget Review: Summary for Fiscal Year 2014*

〈표 25〉 재정수지 추이(FY2009~FY2014)

(단위: 10억달러, %)

FY(회계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입	2,105	2,163	2,303	2,450	2,774	3,021
세출	3,518	3,457	3,603	3,537	3,454	3,504
재정수지	-1,413	-1,294	-1,300	-1,087	-680	-483
GDP 대비 비중	-9.8	-8.7	-8.5	-6.8	-4.1	-2.8

- (세입) FY2013 대비 2,470억달러(9%) 증가하여 총 세입은 3조달러에 이룸
 - 명목가치로 5년 연속 세입 증가
 - 개인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이 2007년 이후 가장 높아 세입 증대에 크게 기여
 - 사회보험은 전년 대비 8% 증가하고 법인세는 전년 대비 17% 증가

〈표 26〉 FY2012 주요 세입 결산

(단위: 10억달러, %)

FY(회계연도)	2012	2013	2014	증가율 ('13~'14년)
개인 소득세 (Individual Income)	1,132	1,316	1,395	5.9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845	948	1,024	8.0
법인세 (Corporate Income)	242	274	321	17.3
기타(Other)	230	236	282	19.2
합계	2,450	2,774	3,021	8.9

- (세출) FY2013 대비 1.4% 증가한 3.5조달러로 집계
 - 사회보장급여,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출이 모두 증가

〈표 27〉 FY2012 주요 세출 결산

(단위: 10억달러, %)

FY(회계연도)	2012	2013	2014	증가율 ('13~'14년)
국방(Defense-Military)	651	608	578	-4.9
사회보장급여 (Social Security Benefits)	762	803	840	4.6
메디케어(Medicare)	469	495	509	2.8
메디케이드(Medicaid)	251	265	301	13.6
실업급여 (Unemployment Benefits)	96	72	48	-33.2
기타(Other Activities)	1,026	1,057	1,034	-2.2
소계(Subtotal)	3,255	3,300	3,311	0.3
공공채무에 대한 순이자지출 (Net Interest on the Public Debt)	258	259	271	4.8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24	-9	-4	n.m.
정부지원기업 순지출 (Net Payment to GSEs)	0	-97	-74	n.m.
합계	3,537	3,454	3,504	1.4
GDP 대비	22.1	20.8	20.3	n.a.

주: n.m.=not meaningful; n.a.=not applicable, GSEs=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Fannie Mae and Freddie Mac.

2. 기타

- 연방준비제도가사회(FRB), 3차 양적완화(QE3) 프로그램 종료 선언(2014.10.29.)⁶⁶⁾
 - 경제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 달부터 국채 및 모기지 채권 매입을 중단
 - 노동시장 상황 개선, 가계 지출의 점진적 증가, 기업 투자 개선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됨
 - (테이퍼링) 2013년 12월 3차 양적완화(QE3) 규모를 월 850억달러에서 100억달러 줄이며 테이퍼링(tapering) 시작

66) FRB, Press release: <http://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monetary/20141029a.htm>



- 이후 2014년 여섯 번의 FOMC 회의를 통해 채권 매입액을 줄여 나갔고, 이번 회의를 통해 양적완화 조치를 마무리함

- (기준금리)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금리 수준(0~0.25%)을 이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재확인

■ 오바마 대통령, 제조업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설명서 발표(2014.10.27.)⁶⁷⁾

- 미국 제조업은 2010년 2월 이후로 7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1990년대 이후로 가장 빠른 고용창출 속도를 보였음
- 제조업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은 혁신을 촉진하고 제조업의 신규 일자리와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
 - 3억달러 이상을 새로운 제조업 기술에 투자
 - 제조업 종사자의 국가 연구소와 같은 최신 기관에의 접근성을 높임
 - 견습 체계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인적 개발
 -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공급망 관리 시스템 지원

■ 통계청, 3/4분기 미국 GDP 성장률 3.5% 발표(2014.10.30.)⁶⁸⁾

-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며 2/4분기(4%)에 이어 2분기 연속 성장세 지속
- 정부지출과 순수출 증가가 경기성장에 기여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67)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Obama Announces New Actions to Further Strengthen U.S. Manufacturing

68) 미국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Quarter 2014 (Advance Estimate)

<http://www.bea.gov/newsreleases/national/gdp/gdpnewsrelease.htm>

정책 흐름



-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천억원 줄였다
-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관련 국세예규 변경
- '14년도 1~9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결과
-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발표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천억원 줄였다

-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 측정 -

* 본 자료는 2014년 11월 19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에서 발표한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천억원 줄였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임
-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55원에서 2016년 47원으로 감축

- 이에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된 결과,

- 약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

②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③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 앞으로도,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음

1 「납세협력비용」이란?

-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으로

•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모든 비용

- 국세청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측정하여 향후 감축과제 발굴에 활용하기 위하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 국세행정에 대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2008년에 최초로 측정하고 2013년에 2차로 측정하였음

* 표준원가모형 :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을 단위행위(등록, 증빙수수, 기장, 신고, 조사, 불복 등)별로 표준화하여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계산

(단위: 조원)

구분	최초 측정 (2007년 기준)	2차 측정 (2011년 기준)	증감
합계	7.63	9.89	2.26
법인사업자	3.95	5.04	1.09
개인사업자	3.07	4.12	1.05
비사업자	0.61*	0.73	0.12

* 2007년 기준 비사업자 납세협력비용은 측정되지 않아, 2011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자연증가율을 역산하여 추정

2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

■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 감축'을 목표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55원에서 2016년 47원으로 감축

- 이에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 이후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 약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만명, 억원)

항목	시행연도	2013년 기준	
		대상인원	감축(추정)액
합계		278	3,19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	2013년	178	1,169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2012년	91	1,297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2012년	9	727

- 앞으로도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축과제 * 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

* (사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분기별'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생략 → 중복제출 불편 해소(2014년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

참고 1 '14년 1~9월 해외직접투자 동향(송금기준)

항목명	내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	•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 납부세액은 소액인 반면, 신고 부담만 큰 자영업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적 예정신고제도 폐지	
	폐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자
	예정고지로 전환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 2012.2.2. 이후 최초로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인터넷 등 전자발급 여건과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2012년: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참고 2 상시종업원 수 규모별 납세협력비용(2차측정, 2011년기준)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총괄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년

(단위: 천개, 억원)

구분	전체	영세납세자		일반기업	
		0명	1~9명	10명~99명	100명 이상
업체 수	5,029	4,199	714	105	11
		97.7%		2.3%	
납세협력비용	90,849*	28,289	36,862	20,508	5,190
		71.7%		28.3%	

* 비사업자 및 규모별 구분이 어려운 공통비용 관련 8,029억원은 제외

2014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결과

* 본 자료는 2014년 11월 14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 정책기획과에서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가계 금융부문〉

(1) 자산 · 부채 규모 및 재무건전성

- **(규모)** 전체 가구 평균 자산은 3억 3,364만원, 평균 부채는 5,994만원
 - 자산 증가율은 2.1%로 '13년(1.1%)에 비해 확대된 반면, 부채 증가율은 2.3%로 '13년(7.5%)에 비해 둔화됨

- **(재무건전성)** 가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06.8%로 '13년(108.9%)보다 감소하였으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0%로 '13년(17.9%)과 유사
 - 가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은 21.5%로 '13년(19.1%)보다 증가

* 만기 일시상환 방식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등에 따라 원금 상환액 포함 추정

- 비중(%): 만기 일시상환 ('13)38.4 → ('14)35.3,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3)17.8 → ('14)20.0

(2) 가구특성별 분포

- **(소득분위별)** 저소득층(1~2분위) 부채 증가세가 둔화 또는 감소된 가운데, 고소득층(4~5분위) 부채 점유율이 소폭 상승(69.5 → 69.7%)

(단위: %)

('13→'14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부채 증가율	26.0 → 2.8	19.8 → △4.7	9.1 → 6.6	15.7 → 4.2	△0.3 → 1.8

- **(종사자지위별)** 자영업자, 임시 · 일용근로자 등의 부채 증가세가 둔화 또는 감소된 반면, 상용근로자 부채 증가세는 확대됨

(단위: %)

('13→'14년)	상용	임시 · 일용	자영업자	기타
*부채 증가율	3.5 → 5.9	14.3 → △4.8	11.3 → 1.5	6.9 → △7.2

- **(연령별)** 30세 미만 부채 증가율이 확대된 반면, 40~50대 부채는 감소, 30대 · 60세 이상 부채 증가율은 둔화됨

(단위: %)

('13→'14년)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부채 증가율	9.2 → 11.2	11.0 → 7.0	2.3 → △0.8	3.7 → △0.6	14.7 → 4.1

〈가계 복지부문〉

(1) 가구 소득 및 지출

- **(소득)** '13년 평균소득은 4,676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
 - **(원천별)** 근로소득이 3,026만원(64.7%)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소득은 1,170만원(25.0%), 재산소득은 196만원(4.2%)
 - **(소득분위별)** 2~3분위 등을 중심으로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
 - * 분위별 소득증가율(%): (전체)4.4 (1)1.4 (2)5.5 (3)5.7 (4)4.6 (5)3.9
- **(지출)** '13년 가계지출은 3,151만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
 - **(소비지출)** 전년 대비 0.2% 증가한 2,307만원이며, 식료품비, 교육비, 주거비 순으로 지출
 - * 소비지출(만원, 비중 %): (식료품) 633(27.4) (교육비) 334(14.5) (주거비) 303(13.1)
 - **(비소비지출)** 전년 대비 1.9% 증가한 844만원이며, 공적연금·사회보험료, 세금, 이자비용 順
 - * 비소비지출(만원, 비중 %): (공적연금 등)274(35.5) (세금)206(24.5) (이자비용)183(21.6)

(2) 소득분배 지표

- '1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6.4%('12년 16.5%), 빈곤갭은 36.4%('12년 35.7%)
-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9%, 처분가능소득 기준 16.4%로 나타나 정부 정책효과에 의해 2.5%p 하락하는 모습
- 가구특성별로는 1인 가구(51.8%), 무직가구(71.5%), 은퇴연령층(66세 이상) 가구(53.1%) 등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

-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은 각각 0.348, 6.72배로 전년 대비 0.004p, 0.07배p 감소
 - * '1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2, 소득 5분위배율은 6.79배
 - * 분위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전체)3.9 (1)4.3 (2)5.7 (3)4.4 (4)4.0 (5)3.1

〈평가 및 시사점〉

【금융부문】

- 작년 조사에 비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다소 개선
 - 전반적으로 부채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됨
 - 조사시점을 고려 시('13년 3월 말~'14년 3월 말) 국민행복기금('13년 3월 29일 출범) 등 현 정부가 추진한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자산 측면에서도 전반적인 자산 증가율이 높아진 가운데, 순자산 지니계수*도 개선됨
 - *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자산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13년) 0.605 → ('14년) 0.596
- 다만, 소득 1분위 가구, 자영업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취약계층 채무부담은 여전히
 - *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 소득분위별: (1분위)120.7 (2분위)112.8 (3분위)104.0 (4분위)103.9 (5분위)106.9
 - 종사자지위별: (상용)90.7 (임시·일용)75.6 (자영업자)146.8 (기타)102.1
 - 이번엔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등(기초자료 내년 1월 공개 예정)을 토대로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

【복지부문】

- 소득분배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13년은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이 증대되는 모습
 - * 경제성장률(%): ('11년)3.7 ('12년)2.3 ('13년)3.0 (+0.7%p)
 - * 상용직 취업자증감(만명): ('11년)57.5 ('12년)43.6 ('13년)61.6 (+18.0만명)
 - 공식지표인 가계동향조사의 추세와 같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니계수도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 * 지니계수(가계동향): ('11)0.311 → ('12)0.307 → ('13)0.302 (Δ0.005p)
 - 지니계수(가금복): ('11)0.357 → ('12)0.352 → ('13)0.348 (Δ0.004p)
 -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 초기단계로서 정확성 검증 등이 진행중이므로 현재로서는 보조참고지표로만 활용할 필요
- 향후 경기 회복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 체질 개선 →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도 고루 퍼지도록 노력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추진 등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 추진
 - *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관련 국세예규 변경

* 본 자료는 2014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발표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관련 국세예규 변경」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2014. 11. 7.(금)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

* 위원장(세제실장)을 포함하여 관련부처 국장(법제처 법제심의관,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및 외부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하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하였음

【주요내용 및 취지】

■ (제도취지)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

* 주식, 특허권, 선박 등(토지, 건물은 부동산실명법 적용대상으로 제외)

-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

※ 예시

- ① 2001년, 甲은 A법인의 주식 20만 주를 乙에게 명의신탁

- ② 2003년, A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신주) 10만 주를 乙에게 추가로 배정

- ③ 乙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구주)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추가로 무상주(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임

■ (예규변경 배경)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하여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받은 무상주(신주)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예규가 상충되어 왔음

- (기획재정부) 그동안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
 - 구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무상주(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될 수 있다고 봄
- (대법원)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
 - 기존 주식(구주)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외에 무상주(신주) 발행을 통한 추가적인 조세회피가 없다고 봄

- 이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감안하여 기존 기획재정부 예규를 변경하였음
- **(기대효과)** 이를 통해 대법원과 과세당국 간의 상충된 세법 해석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14년도 1~9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 본 자료는 2014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에서 발표한 「'14년도 1~9월 해외직접투자 동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4년도 1~9월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263.1억달러) 대비 13% 감소한 229억달러

(단위: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0년	'11년	'12년	'13년	'13년 1~9월	'14년 1~9월
신고액	344.4 (11.2)	457.2 (32.8)	394.8 (Δ13.6)	357.3 (Δ9.5)	263.1 (Δ14.3)	229.0 (Δ13.0)

- (업종별) 제조업(Δ10.6%), 금융보험업(Δ5.1%), 광업(Δ50.7%)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

* 제조업: ('13년 1~9월) 73.6억달러 → ('14년 1~9월) 65.8억달러 (Δ10.6%)

* 금융보험업: ('13년 1~9월) 68.8억달러 → ('14년 1~9월) 65.3억달러 (Δ5.1%)

* 광업: ('13년 1~9월) 51.9억달러 → ('14년 1~9월) 25.5억달러 (Δ50.7%)

- (지역별) 북미(48.5%) 지역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아시아(Δ11.7%), 중남미(Δ37.0%)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

* 북미: ('13년 1~9월) 51.3억달러 → ('14년 1~9월) 76.1억달러 (48.5%)

* 아시아: ('13년 1~9월) 82.0억달러 → ('14년 1~9월) 72.4억달러 (Δ11.7%)

* 중남미: ('13년 1~9월) 56.5억달러 → ('14년 1~9월) 35.6억달러 (Δ37.0%)

리 (Δ37.0%)

- 주요 투자 대상국 중 미국(40.4%), 캐나다(102.0%), 베트남(28.5%) 등의 국가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반면, 중국(Δ26.4%) 등 BRICs 국가(Δ24.5%)에 대한 투자는 감소

- 신흥국 성장세 회복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및 광업 투자의 감소세 등을 감안 시 '14년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IMF성장률 전망(% '14년 10월 기준):

(전 세계) 3.3 ('13년) → 3.3 ('14년^e) → 3.8 ('15년^e)

(신흥국) 4.7 ('13년) → 4.4 ('14년^e) → 5.0 ('15년^e)

1. 개요

- '14년도 1~9월 해외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는 전년 동기(263.1억달러) 대비 13.0% 감소한 229.0억달러를 기록하였고, 송금기준으로는 전년 동기(217.5억달러) 대비 19.7% 감소한 174.6억달러

※ 신고기준: 투자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해외투자 규모를 사전 신고한 금액

※ 송금기준: 투자자가 국외로 실제 송금한 금액 (송금기준 동향)

- (연도별) 제조업(Δ10.6%), 금융보험업(Δ5.1%), 광업(Δ50.7%)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하면서

하락세 지속

연도별 1~9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0년 1~9월	'11년 1~9월	'12년 1~9월	'13년 1~9월	'14년 1~9월
신고액	261.3 (90.9)	366.6 (40.3)	307.1 (△16.2)	263.1 (△14.3)	229.0 (△13.0)
송금액	141.0 (27.1)	206.4 (46.4)	204.7 (△0.8)	217.5 (6.2)	174.6 (△19.7)

- (분기별) 전기 대비 9.0% 하락 ('14년 1분기 22.1% 감소, 2분기 11.0% 증가)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억달러, 전 분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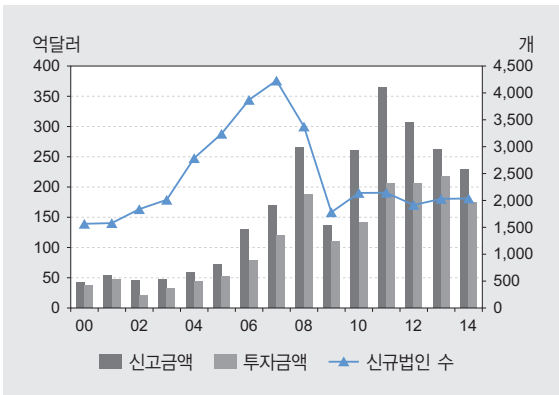
	2012				2013			
	1/4	2/4	3/4	4/4	1/4	2/4	3/4	4/4
신고액 (증감률)	114.1 (26.0)	97.8 (△14.3)	95.1 (△2.7)	87.8 (△7.8)	70.6 (△19.5)	94.3 (33.6)	98.2 (4.2)	94.1 (△4.2)

	2014		
	1/4	2/4	3/4
신고액 (증감률)	73.4 (△22.1)	81.5 (11.0)	4.2 (△9.0)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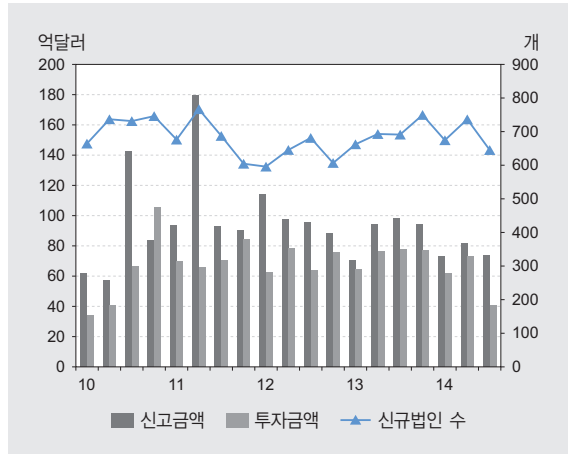
매년 1월~9월 누계별

(단위: 억달러, 개)



분기별

(단위: 억달러, 개)



2. 분야별 특징

1 업종별 특징

- '14년도 1~9월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순위는 제조업(65.8억달러), 금융보험업(65.3억달러), 광업(25.5억달러) 순
 -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기초화학물질·비철금속 제조)은 증가하였으나, 전자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투자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10.6%)
 - * 1차 금속 제조업: ('13년 1~9월) 6.3억달러 → ('14년 1~9월) 9.9억달러 (56.3%)
 - * 전자부품 제조업: ('13년 1~9월) 12.0억달러 → ('14년 1~9월) 6.3억달러 (△47.3%)
 - * 자동차부품 제조업: ('13년 1~9월) 10.0억달러 → ('14년 1~9월) 4.9억달러 (△50.9%)
 - (금융보험업) 북미, 싱가포르, 홍콩 등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네덜란드, 케이만군도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5.1%)
 - * '14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액: 미국 +7.5억달러, 캐나다 +2.2억달러, 싱가포르 +2.1억달러, 홍콩 +1.7억달러, 네덜란드 △6.8억달러, 케이만군도 △5.8억달러 등

• (광업) 전년도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분기별 투자액(억달러): 27.3('13.2q) → 21.1('13.4q) → 14.2('14.1q) → 9.2('14.2q) → 2.1('14.3q)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

(단위: 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2년 금액	'13년 금액	'13년 1~9월		'14년 1~9월		
			금액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합계	394.8	357.3	263.1	△14.3	229.0	100.0	△13.0
제조업	107.7	102.4	73.6	△18.6	65.8	28.7	△10.6
금융 및 보험업	63.7	87.4	68.8	30.1	65.3	28.5	△5.1
광업	105.8	73.0	51.9	△43.6	25.5	11.2	△5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2	17.7	12.7	△35.9	18.0	7.9	4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8	31.3	22.8	52.7	16.4	7.1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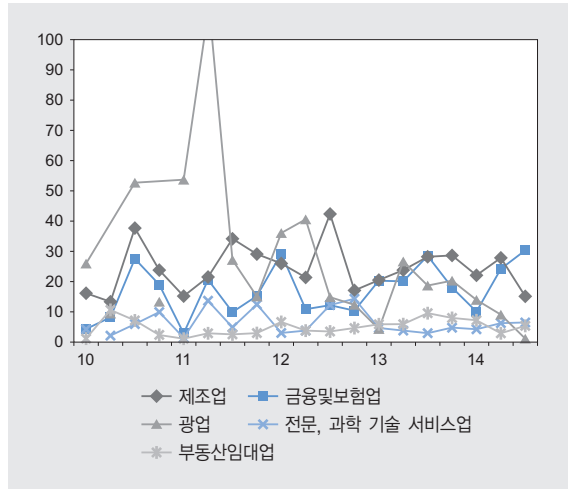
※ 업종별 주요 투자대상 국가 및 신고액(단위: 억달러)

- 제조업: 중국(19.7), 베트남(9.9), 미국(6.3)
- 금융보험업: 미국(26.3), 케이만군도(12.8), 영국(5.1)
- 광업: 캐나다(6.3), 호주(4.7), 멕시코(4.3)
-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미국(10.3), 홍콩(1.7), 싱가포르(1.6)
- 부동산임대업: 미국(10.5), 파나마(1.7), 일본(1.6)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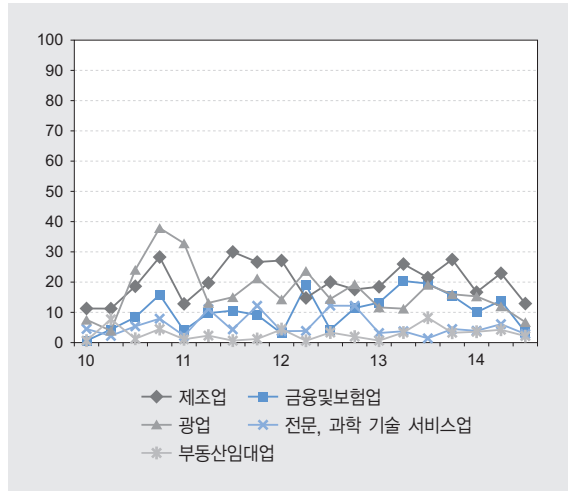
신고기준

(단위: 억달러)



송금기준

(단위: 억달러)



2 지역별 특징

- '14년도 1~9월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순위는 북미(76.1억달러), 아시아(72.4억달러), 중남미(35.6억달러) 순

- **(북미)** 금융보험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주요 업종의 투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48.5%)

* 금융보험업: ('13년 1~9월) 18.8억달러 → ('14년 1~9월) 28.5억달러(51.9%)

* 제조업: ('13년 1~9월) 5.3억달러 → ('14년 1~9월) 11.0억달러(108.4%)

* 부동산임대업: ('13년 1~9월) 5.5억달러 → ('14년 1~9월) 10.5억달러(92.2%)

- **(아시아)** 금융보험업, 운수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대한 투자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11.7%)

* 제조업: ('13년 1~9월) 50.3억달러 → ('14년 1~9월) 42.2억달러(△16.2%)

* 금융보험업: ('13년 1~9월) 4.2억달러 → ('14년 1~9월) 7.7억달러(82.4%)

* 운수업: ('13년 1~9월) 1.1억달러 → ('14년 1~9월) 4.3억달러(274.8%)

- **(중남미)** 광업을 중심으로 금융보험업, 제조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37.0%)

* 금융보험업: ('13년 1~9월) 20.0억달러 → ('14년 1~9월) 14.3억달러(△28.4%)

* 제조업: ('13년 1~9월) 7.3억달러 → ('14년 1~9월) 6.4억달러(△11.3%)

* 광업: ('13년 1~9월) 26.2억달러 → ('14년 1~9월) 4.9억달러(△81.3%)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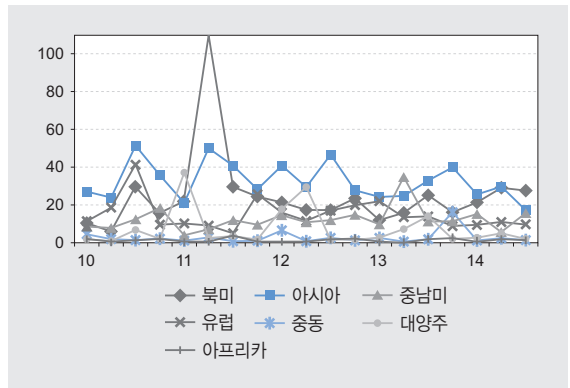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2년 금액	'13년 금액	'13년 1~9월		'14년 1~9월		
			금액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합계	394.8	357.3	263.1	△14.3	229.0	100.0	△13.0
북미	78.0	67.5	51.3	△7.3	76.1	33.2	48.5
아시아	145.8	121.4	82.0	△30.7	72.4	31.6	△11.7
중남미	50.1	67.2	56.5	60.0	35.6	15.5	△37.0
유럽	61.0	56.1	47.9	14.9	28.9	12.6	△39.6
대양주	47.5	23.6	21.7	△53.8	8.6	3.7	△60.5
중동	8.7	17.7	2.3	△72.3	5.1	2.2	121.0
아프리카	3.7	3.8	1.6	9.6	2.3	1.0	47.8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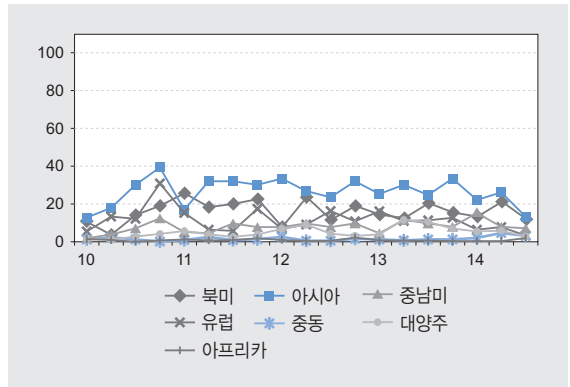
신고기준

(단위: 억달러)



송금기준

(단위: 억달러)



3 국가별 특징

- 주요 투자 대상국 중 미국(40.4%), 베트남(28.5%), 캐나다(102.0%) 등의 국가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반면, 중국(△26.4%), 호주(△56.8%)에 대한 투자는 감소

* 투자 상위 5개국('14년 1~9월 신고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미국 62.6억달러(40.4%), 중국 24.3억달러(△26.4%), 케이만군도 20.1억달러(4.5%), 베트남

13.9억달러(28.5%), 캐나다 13.5억달러(102.0%)

- (미국)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제조업 등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0.4% 증가

* 주요 업종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금융보험업 40.0%, 부동산임대업 92.5%, 제조업 44.7%, 도소매업 27.3%

- (중국) 제조업을 비롯 대부분의 주요 업종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

* 주요 업종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제조업 △26.1%, 금융보험업 △22.4%, 도소매업 △29.9%, 부동산임대업 △30.3%

- BRICs 국가에 대한 총투자규모는 31.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5% 감소

- 금융보험업(13.2%),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50.5%)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제조업(△24.8%), 도소매업(△35.9%), 부동산임대업(△29.7%), 건설업(△64.1%)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

※ '14년도 1~9월 대(對) BRICs 투자

- 중국: ('13년 1~9월) 33.0억달러 → ('14년 1~9월) 24.3억달러(△26.4%)
- 브라질: ('13년 1~9월) 4.7억달러 → ('14년 1~9월) 4.6억달러(△3.3%)
- 인도: ('13년 1~9월) 3.0억달러 → ('14년 1~9월) 2.1억달러(△30.9%)
- 러시아: ('13년 1~9월) 1.3억달러 → ('14년 1~9월) 0.8억달러(△38.4%)

3. 향후 전망

- 신흥국 성장세 회복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및 광업 투자의 감소세 등을 감안 시 '14년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IMF성장률 전망(%), IMF WEO '14년 10월

(단위: %)

	2012	2013	2014 ^p	2015 ^p
전 세계	3.4	3.3	3.3	3.8
- 선진국	1.2	1.4	1.8	2.3
- 신흥국	5.1	4.7	4.4	5.0

참고 '14년 1~9월 해외직접투자 동향(송금기준)

- '14년도 1~9월 해외직접투자(송금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19.7% 감소한 174.6억달러

(단위: 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0년	'11년	'12년	'13년	'13년 1~9월	'14년 1~9월
송금액 (증감률)	246.3 (19.0)	290.1 (17.8)	280.5 (△3.3)	294.8 (51)	21.5 (6.2)	174.6 (△19.7)

- 업종별로는 제조업(△18.9%)을 비롯 광업(△18.2%), 금융보험업(△46.1%) 등 대부분의 주요 업종에서 투자 감소

* 제조업: ('13년 1~9월) 66.7억달러 → ('14년 1~9월) 54.2억달러 (△18.9%)

* 광업: ('13년 1~9월) 43.8억달러 → ('14년 1~9월) 35.8억달러 (△18.2%)

* 금융보험업: ('13년 1~9월) 53.4억달러 → ('14년 1~9월) 28.8억달러 (△46.1%)

- 지역별로는 중남미(17.6%), 중동(76.8%) 지역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반면, 아시아(△22.2%), 북미(△6.5%), 유럽(△53.7%), 대양주(△43.6)에 대한 투자는 감소

* 아시아: ('13년 1~9월) 79.6억달러 → ('14년 1~9월) 61.9억달러 (△22.2%)

* 북미: ('13년 1~9월) 46.4억달러 → ('14년 1~9월) 43.3억달러 (△6.5%)

* 중남미: ('13년 1~9월) 24.2억달러 → ('14년 1~9월) 28.5억달러 (17.6%)

- 최대 투자대상국인 미국(35.0억달러)을 비롯 중국,

호주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베트남, 캐나다 등에 대한 투자는 증가

* 투자 상위 5개국('14년 1~9월 송금액 기준, 전년 대비 증감률)

미국(35.0억달러, △19.8%), 중국(20.3억달러, △42.8%), 호주(12.8억달러, △36.0%), 케이만군도(11.6억달러, 21.5%), 베트남(11.5억달러, 40.6%)

- BRICs 국가의 경우, 중국,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브라질, 인도에 대한 투자는 증가

* '14년도 1~9월 대(對) BRICs 투자

- 중 국: ('13년 1~9월) 35.4억달러 → ('14년 1~9월) 20.3억달러(△42.8%)
- 브라질: ('13년 1~9월) 4.9억달러 → ('14년 1~9월) 4.3억달러(△13.0%)
- 인 도: ('13년 1~9월) 2.5억달러 → ('14년 1~9월) 2.7억달러(8.6%)
- 러시아: ('13년 1~9월) 0.6억달러 → ('14년 1~9월) 0.7억달러(16.9%)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결과

* 본 자료는 2014년 11월 5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와 통계청 통계정책과에서 발표한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11. 5(수) 최경환 부총리 주재하에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정부 3.0 발전계획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 기관 간 자료공유를 확대하고 정확성, 시의성 있는 국가통계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기본계획」, 「고용보조지표 개발」에 대해 심의·의결함
 -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기본계획」은,
 - 1925년 이후 약 90년간 실시해온 '현장조사 중심'의 인구총조사 방식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상당부분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등록센서스를 통해 약 1,400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성공적으로 정착 시 그간 5년 단위로 제공되었던 인구·주택통계를 매년 갱신·제공할 수 있게 됨
 - ⇒ 자료의 개방·공유 확대, 기관 간 협업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 「고용보조지표 개발」은 고용·실업 통계분야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고용보조지표 공표계획을 제시
 - 10월 고용동향 발표(11월 12일)시부터 기존 실업률 지표와 함께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를 제공하기로 함
 - ⇒ '사실상 실업률' 같은 비공식지표로 인한 혼선도 줄어들게 되어 고용통계의 대국민 신뢰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이날 보고된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2015년 시행계획에 따라, 85건의 통계 개발·개선,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생산 확대, 통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계획」을 통해 기존 품질진단 확대 및 내실화, 통계이용자에 대한 품질진단 결과제공 등을 실시
-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확성·시의성 있는 국가통계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 향후에도 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

해 줄 것을 당부

참고 1 고용보조지표 개발(무급가족종사자 기준 변경 포함)

I. 추진 배경 및 경과

① 추진 배경

- 실업상황 파악을 위한 공식지표는 ILO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실업률이며, 국제간 비교에 활용
- 하지만 지표의 현실 반영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
 - 낮은 실업률은 농림어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적 특징과 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에 기인
- 이런 상황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보조지표* 제공 중

* ('98년 5월)추가취업희망자, ('99년 11월)구직단념자, ('03년 1월)쉬었음인구, 취업준비자

- ILO(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 '13년 10월)에서 고용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보조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등에 대한 국제기준 마련
 - ⇒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보조참고지표를 발표하고자 함

* 현재 ILO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

고용보조지표 개발 연혁

- UN 등 여러 국제기구는 ILO의 실업자 개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보조지표에 대한 국제기준 작성을 요구
- ILO는 그동안 국제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회원국 상황에 따라 실업률에 대한 보완지표 작성을 권고하였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작성
- ILO는 제18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08년 11월)

에서 고용보조지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워킹 그룹 회의를 통해 기준을 논의하여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13년 10월)에서 최초로 고용보조지표에 대한 국제기준을 제시

②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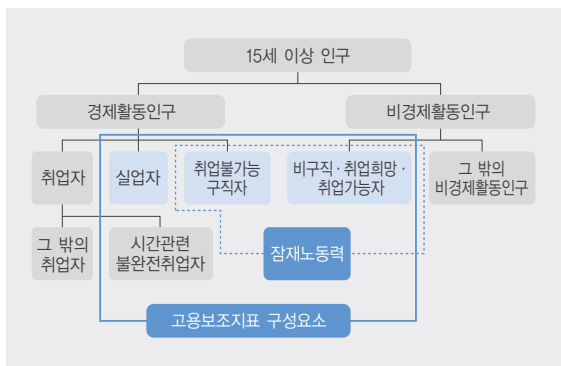
- 국제기준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사전 준비
 - ILO 기준안 모니터링을 위해 회의 참석('12년 5월, 9월)
 - 내부전문가 TF 구성 및 개편 방안 논의('13년 3~5월)
 - 새로운 기준 검토를 위해 대구지역 시험조사 실시('13년 6월)
- 국민체감 차이 해소방안에 대해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상정('13년 10월 8일)
- ILO의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 참석('13년 10월)
- 고용보조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 개최('13년 11월 14일)
-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에 대해 국가통계위원회 사회분과 상정('13년 11월 29일)
 - 국제기준에 따른 고용보조지표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 방안 논의 및 확정
- 고용보조지표 개발 추진('14년 1월~)
 - (병행조사) '14년 1월부터 경제활동인구 병행조사표를 이용하여 신규지표 시산 및 분석
 - (타당성 검토) 내부TF회의('14년 4~8월), 관련 부처 및 외부전문가('14년 5월, 9월) 등과 지표에 대한 타당성 및 정합성 검토
 - (용어선정) 영문명을 직역한 노동 저활용 지표 용어가 길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고용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14년 9월)
- 고용보조지표 개발에 대해 국가통계위원회 사회분과 상정('14년 9월 26일)

II. 고용보조지표 체계

① (개념) 노동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

* (영어)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② (구성) 실업자,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잠재노동력으로 구성



③ (지표)

• 실업률

	분자	분모
LU1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

• 고용보조지표

	분자	분모
LU2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¹⁾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
LU3	실업자+잠재노동력 ²⁾	확장된 노동력 (=경제활동인구+잠재 노동력)
LU4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¹⁾ + 실업자+잠재노동력 ²⁾	확장된 노동력 (=경제활동인구+잠재 노동력)

주: 1)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실제 취업시간 0~35시간이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자

2) 잠재노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① 취업불가능구직자(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와 ② 비구직·취업희망·취업가능자(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비구직자) 합계

③ 우리나라에의 적용

• (방법) 신규지표의 정의는 국제기준에 따르면서 현행 실업률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표 체계 및 용어로 보완 적용

• (용어) 신규지표가 ①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② 고용률·실업률과 함께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고용상황 파악 가능, ③ 고용통계이용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조지표’로 선정
- (취지) 영문명을 번역한 ‘노동저활용 지표’ 용어가 길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고용통계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적합한 용어를 선정
- (의견수렴) 3개(안)*에 대한 회의(토의)**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용어(안)을 선정

* ① 노동저활용 지표 ② 고용보조지표 ③ 노동활용지표

** 관련부처('14.9.4), 전문가('14.9.15), 국가통계위원회 사회분과('14.9.26)

*** 언론('14.9.12), 통계청 직원 및 국민신문고('14.9.1~9.15)

고용보조지표 용어(안)

ILO 제시 영문명	용어(안)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고용보조지표
LU2	고용보조지표1
LU3	고용보조지표2
LU4	고용보조지표3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Time Related Underemployed)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확장된 노동력 (Extended Labor Force)	확장경제활동인구
잠재노동력(Potential Labor Force)	잠재경제활동인구
취업불가능구직자 (Unavailable Job Seeker)	잠재취업가능자
비구직·취업희망 취업가능자 (Available Potential Job Seeker)	잠재구직자

Ⅲ. 고용보조지표 공표 방안

① 공표

- **(제공지표 수)** 일부 지표만 공표할 수 있지만, 관련부처 및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모두 공표
* ILO에서는 2개 이상 공표를 권고
- **(세부자료 제공)** 성별·연령별 등 세부자료는 작성하지 않고 전체 규모와 비율을 공표

② 기대효과

-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통계 제공으로 고용통계 활용도 제고
- 다양한 수준의 고용보조지표 제공으로 국민체감 차이 해소에 기여
- 실업자 외에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하여 다각적인 고용시장의 상황 파악으로 대상별 대책 마련 가능

③ 향후 추진 일정

- **(신규지표 공표)** '2014년 10월 고용동향'에 포함하여 공표('14년 11월 12일)
※ 보도자료 공표시, 실업률 통계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규지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과거 시산 자료, 미국·캐나다·유럽연합 사례, 중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함께 제공

【참고】 국가통계위원회 사회분과위('14.9.26.) 논의사항

- 선정(안)의 추가 검토*, 이용자 이해 제고 방안**, 신규지표의 세부자료 제공 필요***
* 실업(률)보조지표가 제시되었으나, 취업자 포함, 고용률·실업률 등 고용 주지표를 보조하는 역할, 선호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조지표'가 타당
** 보도자료 용어설명, 고용통계용어집,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이해도 제고에 노력

【참고】 국제기준 개정을 반영한 무급가족종사자 기준 변경

① 국제기준 개정 반영

- **(배경)** '13년 10월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조사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무급가족종사자 기준 변경도 필요

국제기준 개정 시기 및 우리나라 적용 기준

	우리나라		국제기준	개정시기
	자영	임금	자영	
시간	1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1982년
용어	무급가족종사자		기여가족종사자	1993년
범위	동일 가구	다른 가구	동일 가구	2013년
	①	×	①	
	×	×	②	
	×	×	③	
			④	

* '13년 전체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우리나라) 4.9% (미국) 0.1% (일본) 2.8%

- **(범위확대)** 현행 ①번을 무급가족종사자로 파악하고 있지만, 동거여부 및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4개(①~④) 모두 파악
- **(지표영향)** 무급가족종사자 기준(18시간 → 1시간) 변경으로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인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가 취업자로 전환되어 고용

를 상승 및 실업률 하락

② 향후 추진 일정

- '15년 1월 조사결과부터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에 포함한 고용현황을 참고지표로 제공 예정('15년 2월)
- 실업자 구직기간 변경 사례*를 고려할 때, 취업자로 전환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시계열 확보 필요

* '99년 6월부터 구직기간 4주 실업자를 작성하였고, '05년 7월에 공식 실업자 기준을 변경(구직기간 1주 → 구직기간 4주)

【참고】 해외사례

① 미국(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지표	분자	분모
U1	15주 이상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U2	비자발적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U3	실업자(공식실업률)	경제활동인구
U4	실업자+구직단념자 ¹⁾	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 ¹⁾
U5	실업자+한계근로자 ²⁾	경제활동인구+한계근로자 ²⁾
U6	실업자+한계근로자 ²⁾ +경제적이유로 35시간미만 취업자	경제활동인구+한계근로자 ²⁾

주: 1)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가능성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일거리가 없어서 등)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자로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2)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② 캐나다(Supplementary measures of unemployment)

지표	분자	분모
R1	12개월 이상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R2	3개월 이상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R3	미국 기준에 따른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R4	실업자(공식실업률)	경제활동인구
R5	실업자+구직단념자 ¹⁾	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 ¹⁾
R6	실업자+취업대기자 ²⁾	경제활동인구+취업대기자 ²⁾
R7	실업자+불완전취업자 ³⁾	경제활동인구
R8	실업자+구직단념자 ¹⁾ +취업대기자 ²⁾ +불완전취업자 ³⁾	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 ¹⁾ +취업대기자 ²⁾

주: 1)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을 원하고 가능하지만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자
 2) 취업이 가능하여 잠재고용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3) 비자발적 파트타임(30시간 미만) 취업자

③ 유럽연합(Supplementary Indicator)

분자	분모
실업자(공식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추가적인 일을 원하고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구직하였으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경제활동인구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경제활동인구

참고 2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2015년 시행계획

I. 수립배경

- (기본계획 추진) '13년 10월 수립한 『제1차('13~'17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15년도 시행계획 수립
- '13~'14년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동 점검결과에 따라 '15년 시행계획을 수립
- 아울러 정부 3.0, 경제정책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여건 변화를 시행계획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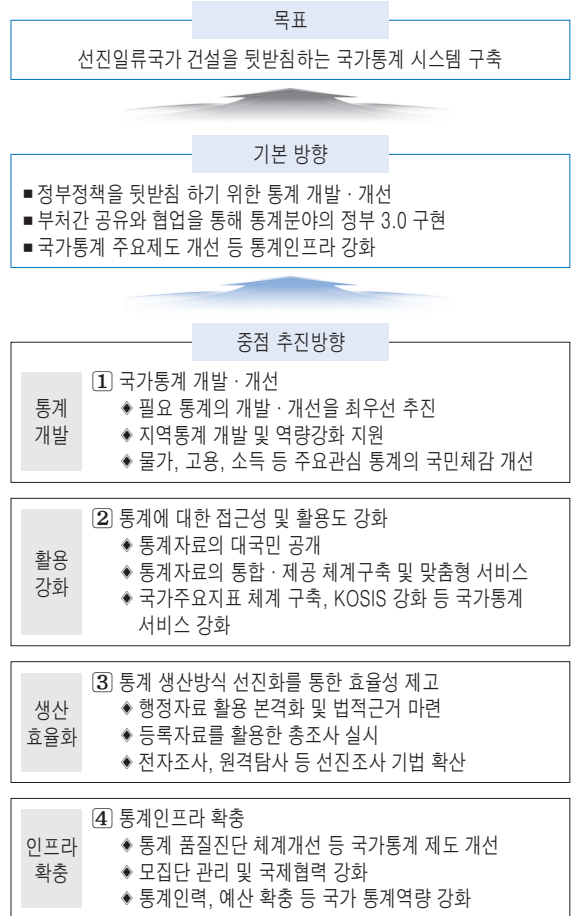
- (법적근거) 정부는 5년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통계법 제5조의4)
-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작성(통계법 제5조의5)
- 통계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의무(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4)

추진 경과

- 제1차(13~17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13년 10월)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15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통보('14년 5월)
-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분과위원회 심의('14년 9월)
-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제출('14년 11월)

II.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13~'14년 추진성과 및 시사점

1.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개요



2. 분야별 성과 및 시사점

1 국가통계 개발·개선

- (개발·개선) 국가통계 개발·개선과제 총 103건 중 26건은 완료하고, 74건은 정상 추진 중
-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등 17건 개발 완료
- 고용노동부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중소기업

청의 중소기업실태조사 등 9건 개선 완료

- 다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실태 종합조사 1건은 예산 미확보로 통계개발계획이 지연('15년 예산확보 추진)

* 경상북도 한옥통계 등 2건은 여건변화로 중단

- **(지역통계 강화)** 지역통계 컨설팅을 통한 지자체 통계 역량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통계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중장기 지역통계발전 전략 수립 지원
 - '13년 서울시, 가평군, 인제군, 상주시 등 8개 완료, '14년 전북 곡성군, 경남 거창군, 경북 경주시 등 8개 진행 중
- **(체감통계 개선)** 소비자물가지수의 체감을 높이기 위한 가중치 개편을 완료하고('13년 12월), 고용보조 지표 개선도 추진 중

☞ 국가통계 개발·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통계 작성 및 고용 등 체감통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2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통계서비스 강화)**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개시 및 KOSIS 자료 확대
 -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개시('14년 4월)
 - KOSIS 수록 자료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국민 통계서비스 강화
 - * KOSIS 수록률 목표: ('13년) 59.2% → ('14년) 70% → ('15년) 85% → ('17년) 90% 이상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14년 중 마이크로데

이터(Micro Data)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시행(17개 기관 31종 통계 구축, 5종 시범서비스)

* 3개년('14년~'16년)에 걸쳐 108개 기관 224종 통계 Micro Data 통합DB 구축 추진

- **(통계이용 저해 관행 개선)** 공표 지연 등 이용을 저해하는 관행 개선
 - 국가통계 작성·공표 일정을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최초 공개('14년 3월)
 - '14년 중 유사증복, 부실우려 통계 11종에 대해 작성중지 또는 통합 완료
 - 공표지연 및 미공표 통계 등 통계이용 저해요인 분석, 조치방안 마련 및 사무개선 요구(4/4분기)

☞ 통계 및 Micro Data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Micro Data 이용자 범위 확대를 위한 통계법 개정 추진 필요

3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행정자료 활용)** 141종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다각적으로 활용
 - 신규통계작성*(5종), 조사항목 대체(20종), 통계검증(11종) 등 활용
 - * 기업생멸, 개인별 주택소유, 영리법인기업체, 귀농인, 임금근로일자리
 - 기존 인구총조사를 대체하기 위한 '15년 등록센서스 기본계획 수립
-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물가지수 작성시스템 구축·운영
 - '14년 시범 운영 후 온라인 물가지수 공개 방안 마련 추진

☞ 행정자료 활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자료 활용을 강화하고, 조사 효율화를 위한 선진조사방식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

4 통계 인프라 확충

- **(통계제도 개선)** 통계기반 정책평가 및 품질진단 제도 개선 추진
 - '14년부터 통계기반 정책평가 대상을 시행규칙(총리령·부령)까지 확대
 - 통계 품질진단방식 개선을 위한 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 **(인력 및 예산 조사)** 통계작성기관들을 대상으로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를 실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필요성에 관한 의견 수렴

'14년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시 설문결과 방향

- **(전담조직)** 전체 75.3%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
 - 통계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통계청 제외) 41개 중 4.9%(복지부, 고용부), 17개 광역시도 중 15.8%, 261개 시군구 중 6.3%
- **(전문인력)** 전문 통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통계청 제외) 중 15%이며, 보유기관의 3분의 2도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역량강화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행정자료 활용의 토대가 되는 모집단 관리 강화 필요

Ⅲ. '15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기본방향

- ◇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현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역량을 집중
- ◇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통계 개발·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

1. 국가통계 개발·개선

- ◆ 기존 통계 개발·개선 계획과 함께 정책에 필요한 신규통계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국가통계를 확충
- ◆ 지역통계 강화 및 체감통계 개선을 병행 추진

가.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 **(개발·개선)** 기존 개발·개선 계획 75건 및 신규 계획 10건, 총 85건 개발·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 통일부의 남북인적왕래현황조사 개선 등 10건 신규과제에 대한 개발·개선 추진
 - 저출산·고령화, 삶의 질 등 통계개발·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통계를 확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과제에 대해 통계

예산 우선순위 부여 등 지원으로 개발·개선 계획 추진을 독려

- 고용, 물가, 소득 등 국민체감형 통계의 개발·개선 계획의 추진사항 중점 관리

나. 주민의 삶을 반영하는 지역통계 강화

- **(컨설팅 강화)** 지방통계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통계발전을 위한 중장기 통계발전 전략 수립 지원 지속 추진
 - 지자체 정책과 연계한 통계수요 발굴 및 개발방안, 정부 3.0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자료 관리 및 활용방안 등
 - 울산시 컨설팅을 완료('15년 3월)하고,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7년까지 완료 추진
- **(지역 맞춤형 통계)** 지자체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통계생산
 - 지방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상세통계 작성

다. 체감통계 개선

- **(주요통계 국민체감 개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체감에 맞게 통계지표 개선을 지속 추진
 - **(고용)**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른 고용보조지표 작성, 공표('14년 11월)
 - **(소득)** 고소득층 소득 상황에 대한 국세자료를 입수, 활용하여 소득 통계 보안을 지속 추진
 - * 국세자료 추가 입수 및 활용 매뉴얼 작성 추진, 국세자료를 통한 조사자료 보완 추진
 - **(경기진단지표)** 경기에 민감하고, 선행성이 있는 민간 자료를 선별, 경기변동 시스템 구축 추진하여 경기진단을 지원
 - * (기초 자료) 서비스업 매출동향, 연세 현황, 전력소비량 등

2.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 이용 확대 및 통계서비스 강화
- ◆ 통계 이용 지연관행 개선 지속 추진

가.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통계법 개정)** 비밀이 아닌 마이크로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및 응답자 본인 자료 제공 등을 위한 통계법 개정 추진
 - '14년 중 국회 제출 예정(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중)

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DB통합)** '15년 중 41개 기관 123종 통합DB 구축
- **(One Stop 시범서비스)** 주거실태조사(국토부) 등 31종의 마이크로데이터 확대제공 및 신규 시범서비스

다. 국가통계 서비스 강화

- **(KOSIS 고도화)** 국가승인통계의 KOSIS 수록률을 '15년 중 85% 수준까지 확대하고 통계청 대외서비스 이용자 통합관리체계 구축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제공)** 공간통계정보 기반으로 행정·민간정보를 융·복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라. 통계 이용 지연관행 개선

- **(공표 등 지연 개선)** 통계 공표시기, 공표 항목 등을

분석하여, 공표 지연 및 미공표 통계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

- '14년 중 분석을 완료하고, 사무개선 요구 예정

3.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 법적근거 마련 등 행정자료 활용 강화
- ◆ '15년 등록센서스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조사 효율화를 위한 선진조사방식 도입

가. 행정자료 활용 법적근거 마련

- **(법령개선)** 행정자료의 원활한 공유 및 행정통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15년)
 - 기존 통계법에서는 행정자료의 제공 및 보호만을 규정

나.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

-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계 작성 추진
 - 우선적으로 새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 작성을 검토

필요 통계(예시)

내수활성화 관련	지역별 주택소유통계
민생안정 관련	민생경제지표, 인터넷 물가지수, 시니어통계(베이비 부머)
경제혁신 관련	창조경제 지표체계, 6차 산업관련 통계
사회정책 관련	양육 미혼모, 다문화 가구

다. 등록자료를 활용한 총조사 실시

- **(등록센서스)** '15년 등록센서스를 차질 없이 시행('15년 11월)

- 전수조사는 등록자료로 대체하고, 20% 표본에 대하여만 조사

■ **(경제총조사)** '16년 경제총조사를 위한 준비

- 총 50개 항목 중 사업종류, 사업실적 등 13개 항목의 대체 추진

라.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추진
 - 통계분야 빅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15년 9월)
 -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단위 온라인 물가지수 작성 지속 추진
 - 수집된 가격데이터 개방('15년 5월) 및 온라인 물가지수 공개 추진('15년 12월)

마. 선진조사방식 적용 확대

- **(전자조사 개선)** 전자조사 관리체계 개선 및 전자조사센터 시험운영을 위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 전자조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4대 전략분야*에 대해 13개 실행과제 추진 (~'16년)
 - * 현장조사 패러다임 전환, 전자조사 포괄범위 확대, 조사대상처 관리 전문화, 전자조사센터 도입
 - 조사방식 선진화를 위한 전자조사센터 도입 검토
 -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예산확보('15년)를 통해, 전자조사센터 시험운영 추진
-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나라통계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통계의 나라통계시스템 신규 적용 확대
 - 통계작성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 계절지수, 불변지수 등 지수관리 및 산출 기능, 다차원 분석 기능, 층화 표본추출 기능 등
 -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의('15년 1~4월)를 통해 40종

국가통계에 대해 나라통계시스템을 신규 적용('15년 중)

4. 통계 인프라 확충

- ◆ 행정자료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집단 관리 강화
- ◆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역량평가를 토대로 전문 인력 및 조직 확보 검토

가. 통계모집단 관리강화

- **(통합 DB 구축)** 공공데이터의 연계와 공유를 위한 기반으로 통합 DB(가칭 '통계뱅크 플랫폼') 구축, 운영
 - 부처 간 협업하에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공유하여 DB로 구축

나. 통계역량 강화

- **(조직 및 인력)**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통계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검토
 - '15년 중 안전행정부와 통계작성기관 간 협의 검토

다. 국가통계 품질진단 체계개선 시행

- **(기본계획 수립)**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5개년('15~'19년간) 통계품질진단 기본계획 수립
 - '15년 진단대상 통계 100여종 심층진단 실시

라. 국제협력강화

- **(인구통계 협력강화)** 동서문화센터(EWC)에서 이관된 아·태 지역 인구문제 연구 기능 및 관련 국제협

력 기능 수행

- '아시아의 경제 생애주기에 걸친 부양제도' 2년차 공동연구('14년 7월~'16년 6월)
- ILO 등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추진('15~'19년)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 본 자료는 2014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에서 발표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 한명진 조세기획관)은 10월 29일(수)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하여 협정문에 서명하였음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30여 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 2017년부터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하는 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 국가 등 총 51개 국가·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주로 재무부) 대표단이 참석하였음

* 우리나라는 지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2014. 9. 19.~21., 호주 케언즈)에서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 참여를 공표한 바 있음.

-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2012년 국회 비준)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하여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으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가 2014년 2월 마련한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협정 서명국이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

로 교환하게 됨

*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계좌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소득 등

- 이번 협정 서명에 따른 국가 간 실제 조세정보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루어지게 됨
- 기획재정부는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 이외의 국가·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14. 3. 17.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가서명, 2015년부터 정보교환 예정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조세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 범위 확대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참고 1 서명식에 참석한 51개 국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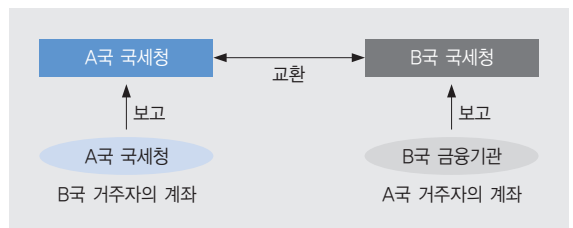
알 바 니 아	맨 섬
앵 귤 라	이 탈 리 아
아 르 헨 티 나	저 지
아 루 바	대 한 민 국
오 스트 리 아	라 트 비 아
벨 기 에	리 히 텐 슈 타 인
버 뮤 다	리 투 아 니 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케이만섬	몰타
몰롬비아	모리셔스
크로아티아	멕시코
퀴라소	몬세라트
사이프러스	네덜란드
체코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페로제도	루마니아
핀란드	산마리노
프랑스	슬로바키아
독일	슬로베니아
지브롤터	남아공
그리스	스페인
건지	스웨덴
헝가리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아이슬란드	영국
아일랜드	

참고 2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주요 내용

조 문	주요 내용
보고대상 계좌 관련 정보교환 (제2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은 다자간 세행정공조협약과 OECD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의 보고·실사규칙에 따라 매년마다 다음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대상 계좌의 계좌번호·계좌잔액 - 계좌 보유자의 이름·주소·납세자번호·출생지 등 -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등 소득 -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이름·식별번호 등
정보교환의 시기 및 방법 (제3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절의 절차에 따라 합의된 국가간 정보교환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정보교환 및 보고·실사절차에 필요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준수 및 집행에 관한 공조 (제4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류로 인하여 부정확·불완전한 정보보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상대국에 통보 • 통보받은 국가는 국내법상 이용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비밀유지 및 데이터 안전장치 (제5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된 모든 정보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규정된 비밀유지 규정 및 기타 안전장치를 따름
협정 기간 (제7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협정은 서로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두 국가가 상대방 국가를 자국의 정보교환 대상국가 목록에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 어떤 국가가 상대방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협정의 효력이 즉시 중단됨 • 어떤 국가가 이 협정에의 참여나 정보교환을 종료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통보일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째 날에 협정의 효력이 종료됨
조정기구 사무국 (제8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기구 사무국은 이 협정에 따라 서명국으로 부터 수취한 모든 통보를 다른 서명국들에 통보함

참고 3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른 정보교환 개요

-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OECD 표준모델(CRS) 세부내용

보고대상 계좌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계좌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계좌)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계좌) 모든 계좌
보고대상 금융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보고대상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정보교환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 	
금융계좌 소유자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감안하여 식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발표

* 본 자료는 2014년 10월 15일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에서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발표. <편집자 주>

- 정부는 10. 15일(수)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 금번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지난해 11월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등 기존 대책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핵심 과제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연과제의 이행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둠

'13년 11월 대책	금번 후속·보완대책
①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부문 (교사, 공공기관) 창출 부진 + 민간부문 일자리 확산 미흡	⇒ 기존 대책의 집행 강화+ 범부처적 노력을 통한 적합직무 발굴 및 민간부문 창출 확산
② 신규창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	
③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 점증	

- 지난 7월부터 기재부·고용부 등 16개 부처가 참여하여 추가 정책과제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였으며,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현장점검 결과 등 고용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25개 세부보완과

제를 확정하였음

- 앞으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세부 보완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 적합직무 발굴, 시간선택제 모델 확산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임

【대책 주요내용】

1 범부처적 시간선택제 창출노력 강화

- ① (공무원 채용목표 상향) 구직자 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방직에 대해 목표비율을 1%p 상향
- ② (부처별 집중관리대상 설정) 각 부처별로 대표적인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가시적인 선도사례를 창출
 - 총 20개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14년 말까지 3천개의 일자리 창출 추진
- ③ (민간부문 창출 지원) 재정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도모

- **(인건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노무비* 지원요건 완화 (최저임금 130% → 120%, 상용직) 및 간접노무비** 지원 신설
 - * 임금의 50%를 月 80만원(대기업 60만원) 한도내에서 1년간 지원('15년 5,700명, 201억원)
 - ** 근로자 1인당 月 10만원씩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15년 3,640명, 23억원)
-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채용 인센티브 제공)**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 인정기준 개선
 - * 상급종합병원 · 서울소재 종합병원은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일반병원 · 지방소재 종합병원은 인정기준 완화
- **(금융업권 인센티브 부여)** 은행 혁신성 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同 평가지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실적을 반영

2 전일제 →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 1 **(공공부문 전환 선도)** 공무원 · 교사 ·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분위기를 적극 선도
 - **(공무원)**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범위를 민간수준으로 확대(주 15~35시간 근무)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 신설
 - * 감소한 月 봉급액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 지원
 - **(교사)** '15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 시행, 同 운영성과 평가 및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 · 발전방향 모색
 - **(공공기관)** 신규채용과 함께 전환이 활성화되도록 경영평가 개편, 출연연 전문연구인력의 전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2 **(민간부문 전환형 확산)** 근로자의 다양한 사정에 맞추어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고용현장에 확산될 수 있

도록 재정지원 신설

- **(전일제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 추가지급 임금 등 인센티브의 50%를 月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15년 3,000명, 14억원)
 - ** 중소 ·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月 20만원씩 1년간 지원('15년 2,100명, 25억원)
 - *** 대체인력 인건비 50%를 月 60만원(대기업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15년 160명, 4억원)
- **(특정사유 전환형 지원제도 활용)** 육아 또는 퇴직준비 등 특정사유에 의한 전환형 활성화도 같이 유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정년 이후 근로시간 단축지원

3 시간제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 1 **(사회보험 적용 개선)**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 · 소득을 합산하여 사회보험 적용
 -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시 개인별 합산 적용 추진 ⇒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 가능
 - **(고용보험)**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 허용, 개인별 합산 적용 ⇒ 소득 및 근로시간 추가 인정으로 실업급여액 상승
 - **(산재보험)** 재해 발생시 복수 사업장 임금을 합산하여 적용 ⇒ 산재보험 수령액 상승
- 2 **(퇴직급여 산정 개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시 불리함이 없도록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상호간 전환시 근로형태(전일제/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

③ **(시간선택제 공무원연금 적용)**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에게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 적용

④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 기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 지원

* 임금상승분의 50%를 月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15년 1,500명, 24억원)

4 시간선택제 확산 기반 강화

① **(시간선택제 모델 확산)** 기업의 시간선택제 도입 부담 및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사례 모델을 제시

- 기업내 시간선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입·운영 노하우를 담은 「시간선택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파

② **(시간제 통계 세분화)** '15년 3월 경찰 부가조사부터 임금수준·사회보험·계약기간 등을 고려한 시간제 세부통계 산출·발표

③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우대)** 시간선택제 활용(채용·전환)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우대방안 강구·시행

- **(정책자금)**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전환실적에 따라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차입조건 완화 등 혜택 부여
- **(신용보증)** 시간선택제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일반보증 우대
- **(공공조달)** 조달청 물품·용역 적격심사시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 **(인증·포상)** 여가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

한 혜택 부여, 고용부의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대상 선정시 우대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기고] 누리 예산 논란과 지방교육재정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했고, 정부는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5세의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하나를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은 지방교육청 관할로, 교육부와 교육청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은 시·군·구 관할로 복지부를 통해 재정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교육이 아닌 보육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된 교육·보육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 2012년부터 교육 과정을 유치원 과정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이것이 누리과정이다.

당시 정부와 교육계는 누리과정에 대해 보육이 아닌 교육, 특히 지방교육에 포함된다고 합의했다. 그래서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도 지방교육재정에 포함됐다.

다만 복지부를 통해 지원되던 재원을 일시에 지방교육재정에서 흡수하는 데 무리가 있는 만큼 5세 아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추진됐다. 2015년에 마지막으로 3세 아동에 대한 부분 4510억원을 흡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교육감들이 새로 포함되는 부분뿐 아니라 이전 교육감들이 받아들였던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전체를 거부하

고 나선 것이다.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방교육재정에서 흡수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2010년 학생수가 10% 정도 감소했지만 정부의 지방교육 투자는 1.83배 증가했다. 앞으로도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에 연동돼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국가 재정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방교육재정은 그동안 소홀했던 유아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 교부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감들은 먼저 누리과정이 지방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 지방교육이 아니라면 정부는 다른 경로를 통해 국민에게 누리과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유아 교육에 대한 재정수요만큼 교부금을 차감해 누리과정 운영비에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도 학생수 변화를 고려해 교부율을 지속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누리과정이 지방교육에 포함되지만 재원이 부족해 수행하지 못한다면 지방교육 사업 중 누리과정이 가장 우선순위가 떨어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지출은 2조 6000억원 규모다.

교육감들이 포기하겠다는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과 유사한 규모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중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의 의사도 물어봐야 한다. 그 외에도 다른 사업의 축소나 연기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 2014-11-26〉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193억원 감축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에 대한 규제 해소로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해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 또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해 종이계산서 발급 및 보관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국세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이들 3개 항목의 규제개혁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결과 전국 278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1년 기준 세금 1,000원당 55원인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까지 47원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2014-11-20〉

“법인세 올려 복지 확대? 과세기반 넓히는 게 적절”

증세보다 규제완화가 우선

대기업 稅부담 6년새 11조 ↑

법인세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는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율 인상 대신 잠재성장률을 높여 과세 기반을 넓히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 확대 과연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떠오른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증세보다는 기존 세제 속에서 과세 기반을 자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만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자유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2008~2013년 대기업의 세부담이 줄기는커녕 10조 9,000억원 늘었다”며 “기업 증세론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야당 등의 법인세 인상 논리가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사내 유보율이 높다고 하지만 일본보다 낮다”며 “법인세율을 높이면 국내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입력 2014-11-18〉

“알뜰주유소 사업 시장질서 교란 우려 크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경쟁중립성 확보도 고려해야”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사업으로 지목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 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거나 경제를 발 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사업의 경쟁중립성을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들 사업이 공익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사업 을 대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다양 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 는 부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분석 취지 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가 분석한 공공기관 8개 사업 가운데 교통안 전공단의 자동차검사,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한국관 광공사의 면세점, 한국표준협회의 교육사업 등 4가지는 경 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공사는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목적으로 알뜰 주유소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주유소 시 설전환 자금의 정부 지원,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제지원, 기존 석유공사 시설의 무상, 또는 저가 활용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알뜰주유소 사업은 또 유일하게 적정 이익률을 가격산 정 기준으로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는 이 사업을 통해 제로(0), 또는 0에 가까운 작은 수익만 을 발생시키고 있다.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적정 이윤을 가 격에 산정하지 않는다면 시장결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장 교란이 발생할 여지가 높 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알뜰주유소 도입 취지가 석유가격 인하이기 때문에 높은 이윤을 취하는 것이 부적합하기는 하지만 시 장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윤을 취하는 것 역시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4-11-17〉

“나라살림 잘 챙기려면, 결산부터 잘 해야”

박노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예산추추에 '국회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의 연계 강화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결 산과 예산의 연계 강화 방안을 살폈다.

통상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미 집행이 완 료된 예산집행의 경우 사후적인 심의가 되기 때문에 관심 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결산 심사를 통해 의원들 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이 문제 대해 시민단체나 언론이 결산심사에 서 의원의 실적을 평가해 충실한 결산 심사를 한 의원과 정당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 개했다. 열심히 일한 의원이 일한 티를 낼 수 있도록 해주 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법으로 국회의 결산 심사 범위를 감사원과 예정처가 제시한 결산 검사 결 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한 부분만 국회가 살 피도록 하자는 것이다. 짧은 결산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해 이미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과 예정처와 국회 간의 역할 분 담을 제안한 것이다.

이외에도 박 소장은 결산 심의 결과가 예산에 직접적으 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결산 심사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이 결산 심사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결산 심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강한 유인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결산 심사 정보를 실제 예산안에 연계시키 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결산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감시하고 판단하 는 역량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결산 및 예 산안과 관련된 정보의 체계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아시아투데이, 2014-11-15〉

지점많은 은행 주민세 폭탄

‘복지 디폴트’ 빠지자 지방세 개편

2018년까지 10배 인상 추진... 은행별 최대 1,000곳
일률적용

안전행정부가 은행 지점당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오는 2018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높은 23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은행이 지방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일부 지방정부가 복지예산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할 정도로 재정이 나빠지자 지방세를 개편해서라도 지방정부 살림을 확충하려 하면서 불뚱이 은행으로 튀고 있다. 특히 사업소가 1~2개에 불과한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은행은 많게는 1,000개가 넘는 지점을 두고 있는데 이들 지점 모두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도록 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인균등분 주민세다. 안행부는 과세기준이 되는 자본금 규모와 종업원 수가 경제성장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과표구간은 5개에서 9개로 늘었다. 그 결과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현행 5만~50만원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돼 2018년이면 많게는 528만원까지 오른다. 주민세가 평균 10배가량 인상된 셈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알려지자 은행들은 반발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객의 편익을 위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은행 지점을 제조업체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1990년대 초반 이후 물가상승률(2배)에 견줘도 세금 인상폭이 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다음달 세법개정안과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도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섰지만 국회로 법안이 이미 넘어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안종석 박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원을 전면 개편

하지 않는 이상 구조적으로 세수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그런 맥락에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업체 인 은행에 세금을 더 매긴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 2014-11-14〉

재정포럼

2014년 11월호 통권 제221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최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윤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장은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홍유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4년 11월 17일 발행 / 제18권 제11호(통권 제22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 414-2131~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179

• E-mail: pub@kipf.re.kr

• 주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